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책임연구원: 조연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I 사업기획 _ 01

1. 사업개요	3
1) 추진배경과 목적	3
2) 사업법위와 방법	7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9
2. '13년도 컨설팅 방향 설정	10
1) 그간의 컨설팅 평가와 과제	10
2) '13년도 컨설팅 추진 방향	15
3. 사업추진체계	18

II '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 현황 분석 _ 19

1. '13년 컨설팅 개요 및 과제현황	21
1) 컨설팅 개요	21
2) 컨설팅 과제 현황	24
2. 컨설팅 영역별 컨설팅 내용분석결과	42
1) 사업 컨설팅 컨설팅 내용분석	42
2) 법령 컨설팅 현황 및 내용분석	54
3) 계획 컨설팅 현황	58
4)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현황 및 내용분석	64

III 핵심관리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사례 _ 83

1. 핵심관리과제 개요	85
1) 과제선정 절차 및 기준	85
2) 운영절차	87
2. 사업별 성별 이슈 및 개선목표의 설정	89
1) 120 다산콜 센터 운영	89
2) 청년 창업 1,000프로젝트	102
3) 부모커뮤니티	114
4)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120
5) 청소년 진로정보제공	133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48
7) 외국인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161
8) 생활협동조합 활성화	175
9)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180

IV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 성과와 과제 _ 189

1. '13년도 성주류화 추진의 특성과 성과	191
1) 성주류화 추진과정의 시민참여 확대와 상시적 운영	191
2)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의 성과	194
3) 대상영역별 컨설팅 추진성과와 개선과제	195
2.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의 한계와 개선과제	201
3. 기타 성주류화지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202

Table Contents

표 목차

표 I-1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4
표 I-2	본 과제목표 및 과제별 추진전략	7
표 I-3	사업의 내용적 범위	8
표 I-4	컨설팅이 도움이 된 경우, 가장 도움이 된 것(중복응답)	12
표 I-5	성주류화가 성평등 정책개선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	13
표 II-1	컨설팅 시기	22
표 II-2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지표	23
표 II-3	서울시 컨설턴트 현황	24
표 II-4	'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대상과제 현황	24
표 II-5	'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절차	25
표 II-6	'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현황	25
표 II-7	주관부서별 특성	28
표 II-8	BRM 분류에 따른 대상과제의 업무분야	29
표 II-9	지속과제 여부 및 과제선정 출처 현황	29
표 II-10	컨설팅 대상 법령 현황(2013년 10월말 기준)	30
표 II-11	대상법령 목록	30
표 II-12	대상법령 목록	33
표 II-13	서울시 사업분야별 예산액 대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34
표 II-14	201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35
표 II-15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41
표 II-16	분석평가서 작성현황	43
표 II-17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현황	44
표 II-18	컨설팅 의견 반영결과	51
표 II-19	사업별 개선의견 반영 현황	52
표 II-20	분석평가서 검토 및 컨설팅 결과	55
표 II-21	법령의 분석평가지표별 컨설팅 현황과 주요 내용	57
표 II-22	분석평가서 작성현황 및 컨설팅 내용	60
표 II-23	계획별 주요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61
표 II-24	여성수혜율에 따른 성인지예산사업 분류	64
표 II-25	여성수혜율이 높거나 100%인 사업: 예산서 작성 및 컨설팅 내용	65
표 II-26	여성수혜율이 높거나, 100%인 사업 예산서 작성 내용 및 컨설팅 내용	66

표 II-27	남성수혜율이 높은 사업	73
표 II-28	해당사업 성인지예산서 및 컨설팅 작성 내용	75
표 II-29	인프라성 사업	77
표 II-30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 및 컨설팅 내용	77
표 III-1	대상과제 현황	86
표 III-2	사업별 담당컨설턴트, 현장조사 기관 및 위원 참가자 현황	87
표 III-3	2007~2012년 동안 상담원 및 상담건수추이	92
표 III-4	2012년 사업별 추진내용	103
표 III-5	성별 야간보행 두려움 이유 2010년	124
표 III-6	보행약자의 통행특성과 이동장애 요소	127
표 III-7	장애인 취업자 인적구성	150
표 III-8	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과 근로일수	152
표 III-9	직업훈련 경험 여부	153
표 III-10	훈련기관별 여성 장애인 훈련 비중	153
표 III-11	전라북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현황	155
표 III-12	주요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165
표 III-13	주요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166
표 III-14	생협전국연합회 회원 생협 이사장의 성비(2010)	177
표 III-15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요약	181
표 III-16	2013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183
표 III-17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내용	184
표 III-18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프로그램 구성	186
표 III-19	분과별 참여예산사업 현황	187

Picture Contents

그림 목차

■ 그림 I-1 ■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04~'12)	4
■ 그림 I-2 ■ 사업 담당자 효과적인 컨설팅 방법과 컨설팅 횟수	11
■ 그림 I-3 ■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지표별 작성 어려움 정도	12
■ 그림 I-4 ■ 서울시 성주류화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17
■ 그림 III-1 ■ 핵심과제운영 절차	88
■ 그림 III-2 ■ 전국사업체조사 (2011 통계청 기준으로 재편·가공)	108
■ 그림 III-3 ■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에 대한 성별간 인식의 차이	121
■ 그림 III-4 ■ 대낮시간대 생활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비교	123
■ 그림 III-5 ■ 심야시간대 생활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비교	123
■ 그림 III-6 ■ 시간간격별(30분 단위) '이동' 요일 평균 행위자 비율	125
■ 그림 III-7 ■ 시간간격별(30분 단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관련 이동' 행위자 비율 ..	126
■ 그림 III-8 ■ 장애인구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	150
■ 그림 III-9 ■ 장애인구 경제활동상태 - 성별 (%)	151
■ 그림 III-10 ■ 전체인구 경제활동상태 - 성별 (%)	152

I

사업기획

1. 사업개요
2. '13년 컨설팅 방향 설정
3. 사업추진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사업기획

1. 사업개요

1) 추진배경과 목적

(1) 추진배경

□ 성주류화 제도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과 대상범위 확대

-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분석평가법’) 및 시행령의 제정·시행('12. 3. 16)되면서 그동안 정부사업에 부분적으로만 적용되어 오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범주가 뿐 아니라, 대상과제 수도 급격히 증가되는 등 제도의 본격적 추진이 이뤄지고 있음
- 즉, 기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외에 자치법규, 3년 이상 법적 근거가 있는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이 요구됨에 따라 컨설팅 수요는 급증
- 2004년 이후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보면, 법령은 2012년 「분석평가법」에 따라 처음 도입·적용된 시행 첫 해 실적이며, 사업은 '04년 1개, '07년 3개, '10년 10개에 불과했으나 '12년 62개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I -1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총계	1	1	1	3	5	7	10	10	204
사업	1	1	1	3	5	7	10	10	62
법령	-	-	-	-	-	-	-	-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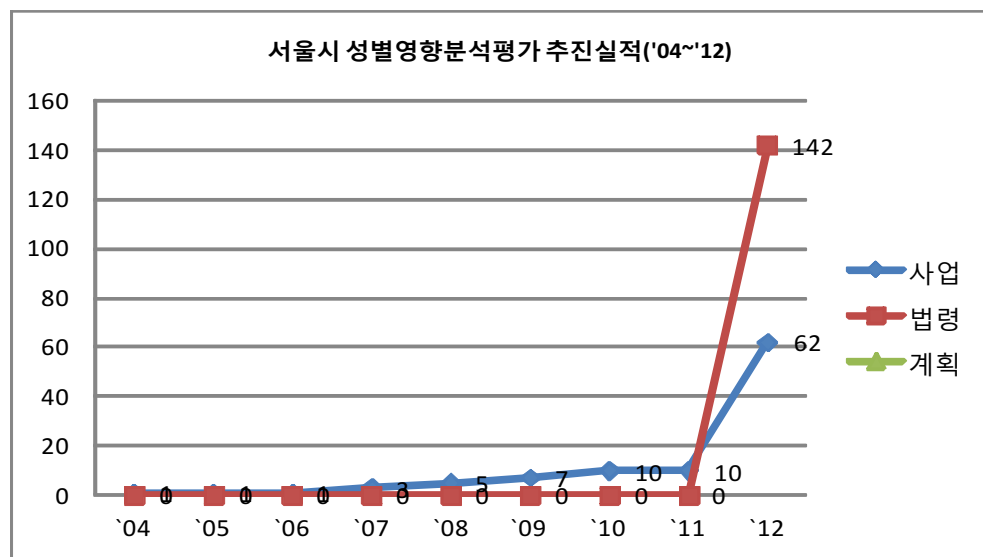


그림 I -1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04~'12)

□ 성주류화 제도 추진실적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제기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양적 확대에 따라 그동안 제안된 개선의견 제안실적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차이 분석의 기초자료로써 ‘통계자료’ 제시, 성별 수혜자의 차이에 따른 ‘예산배분의 변경’, 성별 특성에 맞춘 ‘사업방식 변경’과 의사결정 구조의 일환으로 성별 대표성 확보와 연계된 ‘위원회 구성’ 등임.¹⁾

1)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안된 사업 개선안은 62개 과제에 대해 99건이 제안되었으며, 이 가운데 법령 개선 40.3%(31건), 예산 18.2%(14건), 사업수행방식 70.1%(54건)임(김창연외, 2012).

- 사업별·추진부서별 다양한 사업에 대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성별 이슈와 관련하여 제안된 개선과제의 범주는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며 반복된 형태의 개선과제는 형식적인 제안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제안된 개선의 견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고 실제 사업개선에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과제임
- 성주류화 제도추진 내실화에 대한 요구는 적용 대상범위의 확대와 과제수의 양적 확산을 제도의 성과로 나타내기에 불충분하며 따라서 양적 확산과 함께 성평등에 실제 기여하는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필요로 함
-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은 서울시 성평등 정책 목표에 집중되어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성별분리통계 활용·확산과 같은 성주류화의 전략적 도구가 보다 목표지향성을 갖고 서울시민의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과적 논리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등 실적의 양적 확대와 함께 서울시정의 정책분야 중 중점 시책분야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며, 사업별로 대상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및 개선과제 도출과정이 제도적 절차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성별이슈를 찾아내고 그와 같은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및 개선과제 도출과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 요청되고 있음

(2) 사업의 목적

□ 생활체감 정책개선 도출

-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 목적은 시민체감형 정책개선 도출을 통한 성주류화 제도의 정착 및 확산에 있음. 이를 위한 전략으로 성평등 정책분야 선정과 핵심과제 운영, 참여주체의 다양화, 그리고 컨설팅 지원 방법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운영의 성과 집증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임. 앞서 과제의 추진배경에서 제시하였듯이 현행 대상과제 수의 양적 확대를 관리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책 목표와 추진내용의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영역을 포괄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13년도 시정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정책영역과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정책개선 과제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둘째,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주요 참여주체는 행정(공무원, 구체적으로 기관담당자와 업무담당자)과 행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컨설턴트, 관련 위원회 위원) 크게 두 개 집단의 참여자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컨설팅, 정책개선 의견 제안 등 일련의 보고서와 문서작성 절차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는 1개 사업 시행은 양적 실적으로 계산되지만, 사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개선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환류 점검은 확인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기존의 주요 참여주체(공무원, 전문가 집단) 외에 실제 정책고객으로써 시민 및 NGO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관점에서 성별 관점을 반영하는 정책개선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개선과제로 제안하는 것임. 이를 통해서 성주류화 제도추진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성평등 목표달성에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음
- 셋째, 실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 시정의 정책목표와 방향과 일치하는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가 갖는 성별이슈 찾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이론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임. 또한 이들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정책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사업개선을 추동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컨설팅 지원 방법에 있어서 성주류화 정책의 당위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단순 제시보다는 사업의 성별 특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방법을 기존의 대면과 전화 방식에서 서면 컨설팅으로 집중함으로써 사업별 성별 이슈를 도출하고 정리하여 정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와 같은 본 과제의 목표 및 전략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표 I -2】 본 과제목표 및 과제별 추진전략

과제목표	시민체감형 정책개선을 통한 성주류화의 제도 정착 및 확산		
전략과제	핵심과제 운영	참여주체의 다양화	컨설팅 운영방식의 개선
추진전략	○ 서울시정의 목표와 연계 ○ 컨설팅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과제선별	○ 제도추진과정에 민간 및 NGO단체 참여 ○ 거버넌스를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컨설팅 목표 설정 ○ 사업분야별 컨설팅 내용 및 컨설팅 지침 도출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의 연계

2) 사업법위와 방법

□ 사업의 범위

- 본 사업의 범위는 시간적으로 '13년도 추진된 성주류화 제도 운영 사업이며, 내용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등 성주류화 제도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범위는 계획, 법령,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 개의 컨설팅 지원을 내용으로 함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지원을 내용으로 함

표 I-3 사업의 내용적 범위

구 분		기준과 근거
성별영향분석 평가	계획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법령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사업	- 「지방재정법」 제41조 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의 단위사업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기준】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사업 추진방법

○ 사업추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단계별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음

- 방향설정 단계는 크게 전문가 자문회의와 컨설턴트 워크숍을 통해 컨설팅 지원방법을 구체화 하였음

①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2013년 4월 25일(목) 10:00

-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 성주류화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선택과 집중 분야 등

② 컨설턴트 워크숍 실시: 2013년 6월 20(목)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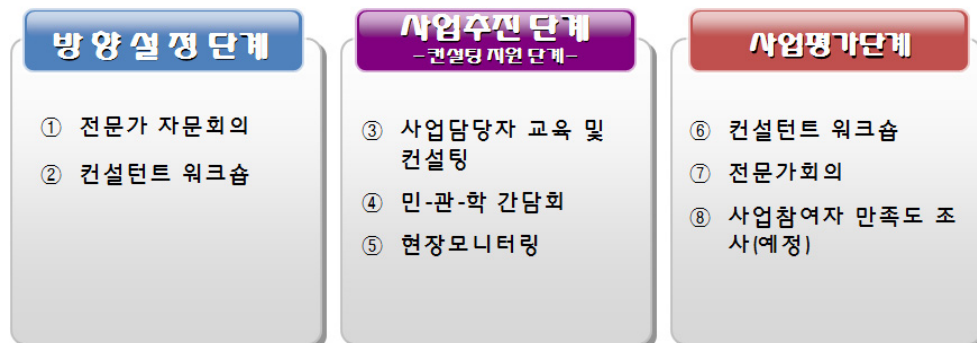
- 사업별 컨설턴트 배치 및 효율적 컨설팅 방법
- 핵심관리과제 운영 및 성과도출 방안 논의

③ 사업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2013년 4월 18일(월) 14:00

- 서울시 및 자치구 기관담당자 교육
-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2013년 6월 19일 (수), 28(금) 2회 실시

④ 핵심과제 운영을 위한 민-관-학 간담회: 2013년 8월 8일(목) 10:00

- 핵심과제로 선정한 7개 사업의 성별이슈와 개선필요성에 대한 사업담당 부서(팀장 및 담당공무원), 전문가 회의
 - 현장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협조사항에 대한 논의 등
- ⑤ 현장모니터링 실시: 2013년 8월 19일(월) ~ 9월 13일(금)
- 모니터링 주체: 서울시민 및 단체활동가로 구성된 24명의 ‘시민’ 젠더거버넌스 위원
 - 모니터링 대상: 총 7개과제 15개 기관 방문하여 사업현장 및 담당자 심층 면접 실시
- ⑥ 컨설턴트 워크숍 및 평가회의 실시: 2013년 11월 26일(화) 16:00
- 금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평가
 - 향후 컨설팅 지원 및 개선방안 논의
- ⑦ 전문가회의 및 컨설팅 실효성 평가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 2013년 1월~2013년 12월

□ 사업비

- 금 삼천육만사천원(₩30,064,000)

2. '13년도 컨설팅 방향 설정

1) 그간의 컨설팅 평가와 과제

□ '12년도 사업담당자 컨설팅 만족도 조사결과²⁾

【조사개요】

- 조사목적: '12년도 성주류화 정책추진의 필요성, 컨설팅의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및 향후 추진지원과정의 개선에 반영
- 조사대상: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공무원³⁾
- 조사기간: '12. 11월 22일 ~ 12월 10일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통한 설문조사
- 자료수집: 온라인(이메일 및 전자공문)
- 조사내용
 - 성주류화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과정 및 제도 운영: 분석평가서 작성 컨설팅 지원
 -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연계, 성인지력 향상 교육수요 및 효과 등

- '12년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사업추진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컨설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컨설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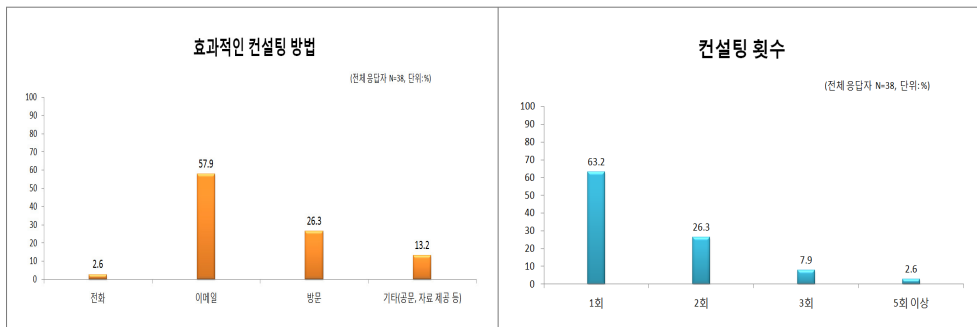
○ 컨설팅 경험 여부 및 컨설팅 방법

- '전문가 컨설팅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83%가 컨설팅 경험이 '있다'고 응답

2) 김창연·조연숙외(2012),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추진지원 및 성과제고 방안」, 41-6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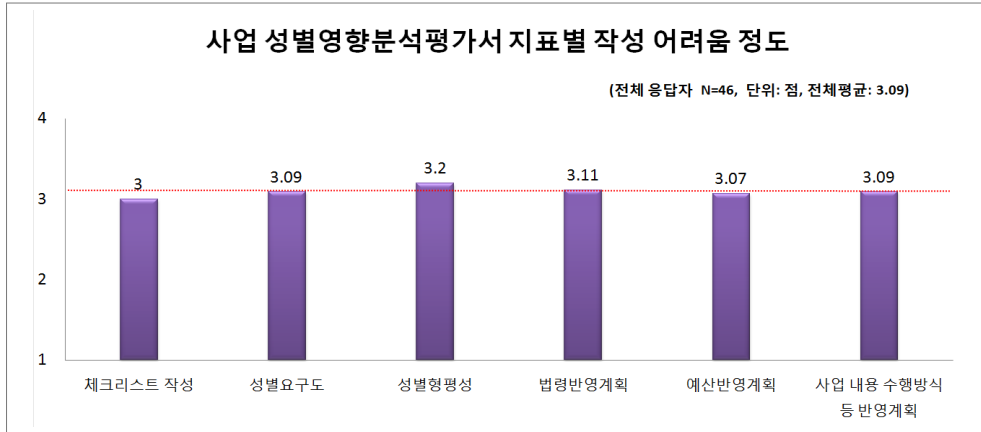
3) '12년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총 52명 중 46명이 응답하여 88.2%의 응답률을 나타냄

- 효과적인 컨설팅 방법에 대해서 이메일 57.9%, 방문 26.3%, 기타공문 및 자료 제공 13.2%, 전화 2.6%의 순으로 나타남



Ⅱ 그림 I-2 Ⅱ 사업 담당자 효과적인 컨설팅 방법과 컨설팅 횟수

- 컨설팅 도움정도 및 도움분야
 - ‘컨설팅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도움됨’ 74%, ‘도움 되지 않음’ 26%
- 지표별 작성 어려움 정도
 - 분석평가서의 작성요소를 중심으로 질문한 결과, 4점 척도 중 모두 3점 이상으로 분석평가서 작성 자체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성평등조치사항 작성과 관련한 개선안 제안에 있어서 ‘법령반영계획’ 3.11점으로 가장 어렵다고 인식, 다음이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3.09점, ‘성별요구도’ 3.09점 순



■ 그림 I -3 ■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지표별 작성 어려움 정도

- 컨설팅이 도움이 된 경우, 다음 항목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작성 때 46.4%,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차이 작성할 때 39.3%로 가장 많이 도움 받음.
- 성별로 여성은 성별요구 차이 작성(50%)에서 남성은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작성(57.1%)에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여 성별 응답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I -4 ■ 컨설팅이 도움이 된 경우, 가장 도움이 된 것(중복응답)

(단위: 명, %)

항 목	전 체	성 별	
		남	여
전 체	28(100.0)	14(100.0)	14(100.0)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작성할 때	11(39.3)	4(28.6)	7(50.0)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작성할 때	2(7.1)	1(7.1)	1(7.1)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1(3.6)	0(0.0)	1(7.1)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작성 할 때	13(46.4)	8(57.1)	5(35.7)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작성 할 때	1(3.6)	1(7.1)	0(0.0)

- ‘성주류화 업무가 시정의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개선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2가지 선택)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개선 사례 발굴 방법에 대한 공유 부재’(43.5%), ‘정책개선 결과에 대한 예산 등 구체적인 물적 지원의 부족’(34.8%), ‘정책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식 부재’(30.4%)의 순으로 응답됨

【표 I -5】 성주류화가 성평등 정책개선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항 목	전 체	성 별	
		남	여
전 체	46(100.0)	27(100.0)	19(100.0)
1)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등 문서작업으로 끝나기 때문	13(28.3)	9(33.3)	4(21.1)
2) 정책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식의 부재	14(30.4)	7(25.9)	7(36.8)
3) 부서장 및 관리자의 개선의지 부족	6(13.0)	4(14.8)	2(10.5)
4) 정책개선 결과에 대한 예산 등 구체적인 물적 지원의 부족	16(34.8)	9(33.3)	7(36.8)
5) 성평등 정책개선에 대한 시민 호응도 부족	12(26.1)	7(25.9)	5(26.3)
6) 실질적인 정책개선 사례 발굴 방법에 대한 공유 부재	20(43.5)	12(44.4)	8(42.1)
7) 기타	9(19.6)	5(18.5)	4(21.1)

- 기타의견으로 성평등을 넘어 여성우대 정책으로 변질되는 사업담당부서의 무의식적인 사업진행, 필요성 공감 되지 않음,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해당 사업의 성주류화업무 불필요, 성평등 개선에 활용할 부분이 별로 없는 사업에 적용되는 경우 많음,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등이 개방형으로 응답되었음
-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 관리자를 비롯하여 사업 담당자 성인지 정책 교육실시 및 제도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의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음

- ‘과제담당공무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수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과제

선정'의 적정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으며, '평가지표의 어려움', '정책수혜자의
성별비율 판단 어려움' 34.8%순으로 나타남

■ 표 I -6 ■ 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수행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2순위)
(단위: 명, %)

항 목	전 체	성 별	
		남	여
전 체	46	27	19
1) 정책 수혜자 성별 비율의 적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34.8	33.3	36.8
2) 분석 평가에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17.4	18.5	15.8
3) 평가 지표가 어렵고 평가서 구성이 복잡해서	41.3	37.0	47.4
4) 추가 업무 부담 및 시간이 부족해서	28.3	33.3	21.1
5) 과제 선정 당시 내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6.5	7.4	5.3
6) 정책개선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17.4	14.8	21.1
7) 성별영향분석평가 하기에 적절한 대상과제가 아니라서	45.7	44.4	47.4
8) 기타	8.7	11.1	5.3

□ '12년도 자체사업 평가

- 컨설팅 대상범위의 확대에 따른 컨설팅 실적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효과의 한계를 나타냄
 - 컨설팅 방법은 교육, 면대면 면접,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컨설팅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분기별로 제출되고 있는 컨설팅 일지를 통해서 임. 컨설팅을 체계화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 마련 필요
 - '12년도 컨설팅 일지를 분석한 결과(총1,089건), 컨설팅 의견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컨설팅 내실화와 전문성이 보다 요청되고 있음
 - 컨설턴트의 역할과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한 지침이 없어 수시 대응으로 인한

- 전문성 축적기회의 한계가 있으며, 이는 결국 컨설팅의 효과에 관한 문제제기
 - 효과적 컨설팅을 위한 방법의 다양화와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분석평가서 작성의 실질적 정보 및 지식제공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의 내실화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단절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제기
 - 지방재정법 개정(2011. 3)으로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수립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도입되었으나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형식적 운영의 한계가 있음
 -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과제 반영 방안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현실적 연계방안 마련과 실제 반영을 위한 협의 절차 도입·적용

2) '13년도 컨설팅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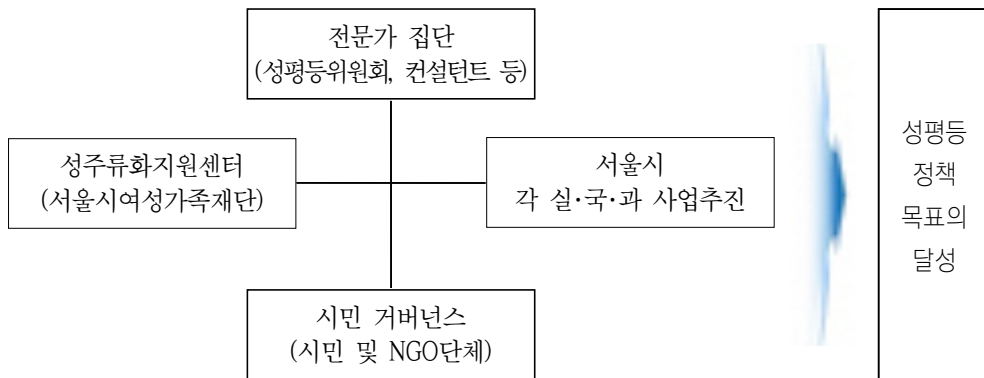
□ 전략적·체계적 운영을 통한 컨설팅 효과 제고

- 시정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일치하는 핵심과제분야 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 환류과정에서 정책개선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컨설팅의 실효성 제고
- 젠더 전문가 뿐 아니라 정책영역별 전문가의 성인지 관점을 결합한 컨설팅트폴 확대
- 성주류화 정책의 당위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단순 제시보다는 사업의 성별 특성분석을 구체화하도록 컨설팅 방법 개선을 통한 컨설팅 내용의 전문화 실현

□ 생활체감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 정책의 성과는 시민이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모든 정책영역에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은 실제 시민이 정책의 최종 고객이므로 그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성평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주류화 제도 추진도 여성 및 시민 NGO 단체 참여를 통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2013년도 성주류화 제도추진을 위한 서울시 성주류화 거버넌스의 구성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됨. 전문가 집단과 시민 및 NGO 단체, 행정(서울시), 그리고 지원집단으로 성주류화지원센터(서울시여성가족재단)임
- 먼저, 전문가 집단으로서 성평등위원회(성주류화 분과)와 컨설턴트, 학계 등 연구자가 있음. 성평등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과 전략적 도구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도록 돕는 성평등위원회 성주류화 분과가 있음. 다음, 실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에서 공무원(기관 및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돕는 컨설턴트 그룹이 있음. 이들은 모두 전문가 그룹에 속함
- 둘째,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젠더관계의 불평등을 찾아내어 정책(사업)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과 점검활동을 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이 있음. 금년도 성주류화 추진을 위해 공개모집 및 단체 추천을 통해 총24명을 구성함. 이들은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과제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제출하여 시민의 수요, 특히 성별수요를 구체화한 개선의견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셋째, 성주류화 제도추진의 실행주체는 행정(서울시)임. 공무원은 정책의 추진방향, 전문가의 성인지적 관점 컨설팅, 현장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의견을 제안한 경우, 실제 사업기획서에 그와 같은 일련의 노력과 과정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주체’로서 매우 중요함. 이들의 의지와 적극성이 모든 주체의 활동을 의미있게 구성하고 현실화 하는 주체인 것임
- 마지막으로 ‘성주류화지원센터’가 있음. 각 주체들이 제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임. 실제 컨설팅단 및 시민거버넌스단 구성·운영,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 및 지원실적 관리와 성과분석, 공무원 및 시민사회에 대한 성인지정책교육 등 종합적인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연구·지원기능을 함



■ 그림 I -4 ■ 서울시 성주류화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 컨설턴트 운영방안

- 성주류화 추진 지원 그룹으로써 컨설턴트의 전문가로써 정체성 강화
 -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반영을 위한 컨설턴트 역할을 분명히 하고, 따라서 성주류화 추진단계에서 전문가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 명시
- 서면 컨설팅을 통한 사업별 성별 이슈 및 정책개선 지식축적 가능
 - 컨설팅 의견의 객관성 확보와 내용의 축적을 위해 서면 컨설팅 실시

구분	현행	⇒	변화 방향	⇒	기대효과
컨설턴트의 역할	- 교육, 상담, 보고서 작성, 개선의견 제시 등 역할이 광범위	⇒	-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반영을 위한 컨설팅에 집중	⇒	- 성주류화 전문가로서 정체성 강화
컨설팅 방법	- 면대면, 이메일, 유선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 분석평가서 및 검토 보고서는 서면컨설팅으로 한정 - 1과제 2인 이상 복수 컨설팅 실시	⇒	-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의견 작성에 집중 - 사업별 컨설팅보고서를 통한 정보 축적 가능
컨설턴트의 활동 단계	- 대상과제 선정, 업무 담당자 교육, 분석평가서 작성 등 기관 요구에 따라 수시 활동	⇒	- 분석평가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검토 의견서 작성 및 정책개선 계획 등 컨설팅에 주력	⇒	- 컨설팅내용의 내실화 기대

3. 사업추진체계

구분	성 주류화 목표 설정 및 기획	대상과제 선정	업무담당자 교육	'13년 과제 우수사례 선정	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 작성
시기	'13. 3	'13. 4~5	'13. 4~6	'13. 4~6	'13. 7~8
컨설턴트, 젠더 전문가	-	사업계획서 검토	-	분석평가서 서면평가	분석평가서 작성 컨설팅

성주류화 지원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추진
--------------	------------------------

젠더 거버넌스	시정환경 분석	위원구성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사업별 대상과제 컨설팅
------------	------------	------	----------------	---	--------------------

구분	검토 의견서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의회의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정책개선 및 성과보고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	업무 담당자 교육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기	'13. 9~11	'13. 9	'13. 10	'13. 11	'13. 12	'14. 1
젠더 전문가	검토 의견서 컨설팅	대상 과제선정 컨설팅		예산서 작성 컨설팅	-	-

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추진
----	------------------------

젠더 거버넌스	-	-	-	-	-	젠더 거버넌스 추진운영 성과발표회
------------	---	---	---	---	---	-----------------------------

익년
사업
연계

II

'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현황 분석

1. '13년 컨설팅 개요 및 과제현황
2. 컨설팅 영역별 컨설팅 내용분석결과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 현황 분석

1. '13년 컨설팅 개요 및 과제현황

1) 컨설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정책의 기획·집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해 대상영역이 되는 계획·법령·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통해 각 대상사업별 성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공무원)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 무엇보다 사업담당공무원이 정부사업 추진이 몰성적이 아닌 성인지적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성인지 관점에 대한 훈련과 교육에 목적이 있음
 - 더 나아가 실제 사업개선을 위한 성평등 조치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서울시 사업의 성평등 달성에 기여토록 하는 것임
- 궁극적으로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의 기획·집행·평가함에 있어서 '젠더'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컨설팅 개요

- 컨설팅 대상: 법령, 계획, 사업, 성인지예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는 ‘분석평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인지예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 컨설팅 시기

- 법령은 해당 조례의 제·개정 시기로 수시로 컨설팅
- 계획은 법령에 근거한 3년 이상의 기본계획 수립 시 컨설팅. 계획확정 2개월 이전에 컨설팅 완료
- 사업은 익년도 사업구상, 사업에 대한 기획 및 계획서 작성 시점
- 성인지예산서는 익년도 예산서 작성시기 9~11월 중 집중 컨설팅

표 II-1 컨설팅 시기

구분		시기	비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법령	○ 조례·규칙이 제·개정되는 시점: 연중	최종실적 보고서 반영 여부 명시
	계획	○ 계획수립이 이뤄지는 시점: 연중 - 대상선정: 계획수립안 마련시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계획확정 2개월전	*지침: 계획 확정 2개월 전까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사업	○ 다음 시기중에 컨설팅 이루어짐 - 과제선정: 4~5월 - 분석평가서 작성: 6~8월 - 검토의견서 작성: 9~10월	*지침: 예산작성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10월말까지)
성인지예산		- 익년도 예산서 작성: 9~11월	

○ 컨설팅 내용: 컨설팅은 각 대상영역별 지표에 따라 컨설팅 이루어짐

- 법령은 성별 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의 세 영역의 6개 항목에 대해 평가
- 계획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두 개 영역, 4개 항목에 대해 분석·평가
- 사업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성평등 조치사항의 두 개영역, 6개 항목에 대해 분석·평가

표 II-2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 지표

법령		계획		사업
① 성별 구분	1. 성별 구분 조항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 성 및 개선안	I. 비전 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성별로 다른 영향 발 생가능성	I. 정책 환경 의 성별 특성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4.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2. 성별요구도 ②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② 성별 고정 관념		II. 전략 및 중점 과제	3. 성별 형평성 ③수혜에서의 성별 특 성 반영	II. 성평 등을 위한 조치 사항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 성 관련 조항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 성 및 개선안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④법령 반영 계획 ⑤사업(또는 과제)반영 계획	
③ 성별 특성				①. 사업의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신체적 차이
				② 사업의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 성별 특성 3. 예산배분에서 성별 특 성 반영
				③개선조치 사항 4. 법령 반영계획
				5. 예산 반영 계획
				6.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컨설팅단의 구성

○ 서울시 컨설턴트는 총 13명으로 구성됨

-외부 9명, 내부 3명

표 II-3 서울시 컨설턴트 현황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위	컨설팅 대상	비고
1	강선미	하랑성평등 교육연구소 소장	소장	성별·성인지예산	외부
2	김애령	돌봄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성별·성인지예산	〃
3	이동옥	홍익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성별·성인지예산	〃
4	이선민	한국사회복지원격평생교육원	운영교수	성별·성인지예산	〃
5	조영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성별·성인지예산	〃
6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성별·성인지예산	〃
7	이남희	사)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성별·성인지예산	〃
8	박홍주	동덕여대 여성학과	강사	성별·성인지예산	〃
9	장미현	명지대학 건축학과	강사	성별·성인지예산	〃
10	손문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성별·성인지예산	내부
11	장현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차장	성별, 법령	〃
12	조연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성별·성인지예산	〃

2) 컨설팅 과제 현황

□ 총괄현황

- '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대상과제는 총 225개임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 71개, 법령 56개, 계획 6개로 총 133개 사업에 대해 추진됨
 - 성인지예산서는 총 92개로 전년도 62개보다 30개 사업이 증가함

표 II-4 '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대상과제 현황

구분	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사업	법령	계획	
2013년	223개	71	54	6	92
2012년	249개	62	126	-	61

(1)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 사업선정 절차

-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절차는 크게 네 단계에 걸쳐 이뤄졌음
 - 서울시의 각 사업부서가 검토하여 추천·제출한 사업 62개
 - 분석평가책임관은 서울시 전 실·국 사업 중 주요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대상과제 후보로 162개 사업 제출 및 센터 검토 요청
 - 총 225개 사업 중 최종 80개 사업 선정, 성평등위원회 제출
 - 성평등위원회 심의 및 승인: 71개 사업 최종 선정

Ⅱ 표 II-5 Ⅱ '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절차

사업부서 검토·제출	분석평가책임관 검토 (기관담당자)	전문가 검토 (성주류화지원센터)	성평등위원회 (최종확정)
63개 사업 제출	사업계획서 검토 162개	225개 사업 중 최종 80개 선정	80개 사업 검토 및 승인

□ 대상사업 현황

- 총 71개 사업이 대상과제로 선정되어 분석평가서 작성함

Ⅱ 표 II-6 Ⅱ '13년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현황

번호	사업명	부서명	비고(신규/지속)
1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마을공동체담당관	계속사업
2	마을청년활동가 양성	마을공동체담당관	신규사업
3	120다산콜센터운영	시민봉사담당관	계속사업
4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담당관	계속사업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계속사업
6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신규사업

번호	사업명	부서명	비고(신규/지속)
7	서울부모커뮤니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신규사업
8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출산육아담당관	신규사업
9	서울 유스데이 운영	아동청소년담당관	신규사업
10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신규사업
11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계속사업
12	시민생활안전체험	민방위담당관	계속사업
13	U-서울 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	공간정보담당관	계속사업
14	도시형 제조업 인식제고	경제정책과	계속사업
15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경제정책과	계속사업
16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노동정책과	신규사업
17	노동존중문화 확산	노동정책과	신규사업
18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경제과	신규사업
19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과	신규사업
20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사회적경제과	신규사업
21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정책과	계속사업
22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자리정책과	신규사업
23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창업취업지원과	계속사업
24	장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취업지원과	계속사업
25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창업취업지원과	계속사업
26	창조적 청년기업 10,000개 육성	창업취업지원과	계속사업
27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복지정책과	신규사업
2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정책과	신규사업
29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희망복지지원과	신규사업
30	고령자 능력활용 강화	어르신복지과	신규사업
31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어르신복지과	신규사업
3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어르신복지과	신규사업
33	어르신 일자리사업	어르신복지과	계속사업
34	어르신 자활후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어르신복지과	신규사업

번호	사업명	부서명	비고(신규/지속)
35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신규사업
3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신규사업
37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신규사업
38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계속사업
39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계속사업
4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신규사업
41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계속사업
42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계속사업
43	노숙인 의료지원	자활지원과	신규사업
44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자활지원과	신규사업
45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자활지원과	신규사업
46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자활지원과	신규사업
47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보건의료정책과	신규사업
48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보건의료정책과	신규사업
4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계속사업
50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보건의료정책과	신규사업
51	건강도시 추진	건강증진과	신규사업
52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건강증진과	신규사업
53	토요 어린이 건강 클럽	건강증진과	신규사업
54	버스서비스 품질 평가	버스정책과	신규사업
55	버스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예의 시민참여 활성화	버스정책과	신규사업
56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버스정책과	신규사업
57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아미존' 조성	보행자전거과	신규사업
58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보행자전거과	신규사업
59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개선	택시물류과	신규사업
60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택시물류과	신규사업
61	택시안심귀가서비스	택시물류과	계속사업
62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	도로시설과	신규사업

번호	사업명	부서명	비고(신규/지속)
63	안전리더 육성 및 재난안전 교육	도시안전과	계속사업
64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도시안전과	신규사업
65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도시안전과	신규사업
66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하천관리과	신규사업
67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관리과	신규사업
68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건축기획과	신규사업
69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공동주택과	신규사업
70	희망의 집수리 사업	주택정책과	신규사업
71	여성위기대처능력향상을 위한 시민안전교육 운영	안전지원과	계속사업

○ 주관부서 현황

총 71개 사업 중 복지건강실 사업이 27개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주로 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제진흥실 사업이 13개(18.3%), 도시교통본부 8개(11.3%), 도시안전실 6개(8.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Ⅱ-7 주관부서별 특성

구 분	빈도(개)	비율(%)
전 체	71	100.0
복지건강실	27	38.0
경제진흥실	13	18.3
도시교통본부	8	11.3
여성가족정책실	7	9.9
도시안전실	6	8.5
주택정책실	3	4.2
서울혁신기획관	2	2.8
비상기획관	1	1.4
소방재난본부	1	1.4
시민소통기획관	1	1.4
기획조정실	1	1.4
정보화기획단	1	1.4

○ BRM(안행부 업무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 구분

안전행정부의 정부업무 분류기준에 따라 대상과제 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역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약 39%(28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공공질서 및 안전 12.7%(9개), 일반공공행정과 지역개발이 각 10%(7개)의 순임. 과학기술 분야나 문화체육 관광분야 사업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8】 BRM 분류에 따른 대상과제의 업무분야

연번	구분	빈도(개)	비율(%)
1	전체	71	100.0
2	공공질서 및 안전	9	12.7
3	교육	5	7.0
4	보건	4	5.6
5	사회복지	28	39.4
6	산업중소기업	5	7.0
7	수송 및 교통	6	8.5
8	일반공공행정	7	9.9
9	지역개발	7	9.9

○ 기타 지속과제 여부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신규사업 비율은 약 68%로 신규사업이 비중이 계속사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신규사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에 성별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정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임

【표 II-9】 지속과제 여부 및 과제선정 출처 현황

구분	빈도(개)	비율(%)
전체	71	100.0
신규사업	48	67.6
계속사업	23	32.4

(2) 대상 법령 현황

-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개정시 수시로 컨설팅
- 2013년 10월말 현재 법령 컨설팅 의뢰 건수는 총 56개이며, 제정 16(28.6%), 개정 40(71.4%)으로 개정 컨설팅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전체 56개 중 조례 36(64.3%), 규칙 20(35.7%)로 조례 컨설팅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표 II -10 1 컨설팅 대상 법령 현황(2013년 10월말 기준)

구분	총 계	조례		규칙	
		제정	개정	제정	개정
건수(개)	56(100.0)	13	23	3	17

- 대상법령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표 II -11 1 대상법령 목록

연번	법령명	담당부서	조례		규칙	
			제정	개정	제정	개정
1	서울특별시 공공기여 기반시설 설치기금조례	공공개발센터	○			
2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장애인복지정책과	○			
3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과	○			
4	서울특별시 물순환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물관리정책과	○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도시계획과				○
6	창의상운영조례	사회혁신담당관		○		
7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과		○		
8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과		○		
9	서울특별시장 공약관리규칙	기획담당관			○	
10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정보공개정책과		○		

연번	법령명	담당부서	조례		규칙	
			제정	개정	제정	개정
11	제대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과	○			
12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재난대응과				○
13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학교지원과	○			
14	서울특별시 전시예술 감독운영에 관한 규칙	디자인정책과			○	
15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교통정책과		○		
1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복지정책과				○
1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환경정책과		○		
18	서울시 공업용 수도조례	생산관리과		○		
19	서울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세제과		○		
20	서울시 마곡사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마곡사업담당관		○		
21	서울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인사과		○		
22	서울시 서울관광마케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광정책과		○		
2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감사담당관				○
24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인사과				○
25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상공인지원과				○
26	서울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세제과				○
27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학교지원과				○
28	서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인사과				○
29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	세무과		○		
30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주택정책과				○
3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한강사업본부				○
3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물재생시설과		○		
33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기획담당관		○		

연번	법령명	담당부서	조례		규칙	
			제정	개정	제정	개정
34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조례	생활보건과	○			
35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친환경교통과		○		
36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기후대기과		○		
3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급수설비과				○
38	서울특별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소통담당관	○			
3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급수계획과	○			
40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민소통담당관				○
41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직담당관				○
42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		
43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 빗 형성 관리 조례	공공디자인과		○		
44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시민소통담당관	○			
45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정보공개정책과	○			
46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47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교통정책과		○		
48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시민소통담당관	○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과		○		
50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정보공개정책과				○
51	서울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노동정책과	○			
52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총무과				○
53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사과		○		
54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	
5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시행규칙	주거재생과				○

연번	법령명	담당부서	조례		규칙	
			제정	개정	제정	개정
56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인권담당관		○		

(3) 대상계획 현황

□ 대상계획: 총6건임

- 서울시는 '13년에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처음으로 도입·시행됨
 - 컨설팅 의뢰된 계획은 주로 도로정비, 도시기본계획, 도로교통 등 사회기반 시설과 도로교통 등과 관련된 것임
 - 대상 계획은 '2030 도시기본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교통정비 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등 6건이었음

【 표 II -12 】 대상법령 목록

연번	계획명	담당부서	수립근거	비고
1	2030 도시기본계획	기획조정실 도시계획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2	도로정비 기본계획	도로계획과	도로법	'13.5
3	하천기본계획(탄천 등 12개)	하천관리과	하천법	'13.9
4	하천기본계획(충제천 등 14개)	하천관리과	하천법	'13.9
5	서울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교통정책과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13.10
6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교통정책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3.11

(4) 성인지예산서 대상 사업 현황

□ 대상과제의 현황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범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유형화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403,692백만원으로 서울시 2014년도 전체예산안 24,504,169.750천만원의 1.65%임.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작성 사업수가 많고 그에 따라 예산총액이 큰 것으로 보이나, 전체 사회복지사업 분야의 4.56%에 해당하는 예산에 해당됨. 상대적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사업수는 7개이지만, 해당사업 분야의 20%예산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사업의 수와 예산 규모가 비례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II -13 서울시 사업분야별 예산액 대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분야·부문	개수 (개)	성인지대상사업 예산(백만원)_A	전체사업예산 (백만원)_B	(B/A) 비중
총 계	92	403,692	24,504,169.75	1.65
사회복지	57	324,830	7,127,904.496	4.56
산업·중소기업	7	39,088	200,670.123	19.48
일반공공행정	6	19,608	4,093,554.492	0.48
보건	6	10,843	295,582.072	3.67
공공질서및안전	6	4,487	147,884.991	3.03
교육	2	2,715	2,616,032.391	0.10
환경보호	2	906	1,929,114.333	0.05
국토및지역개발	1	723	1,988,780.034	0.04
문화및관광	3	365	524,775.713	0.07
수송및교통	2	128	3,902,637.592	0.00
농림해양수산	0	0	98,629.255	0.00
예비비 및 기타			1,578,604.258	

○ 서울시는 내년도 사업 중 총 92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음

- 사업유형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사업 29개,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 32개, 자체 특화사업 31개로 구성됨

표 II -14 201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연 번	사업 유형	부서명	사업명	신규 /계속	예산 (백만원)
1	성별영향 평가사업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계속 사업	184
2	성별영향 평가사업	시민봉사담당관	120다산콜센터운영	계속 사업	17,623
3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늘푸른여성지원센터		126
4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3,051
5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371
6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308
7	자치단체 특화사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주간 기념행사		20
8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		7,643
9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936
10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5,749
11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2,200
12	자치단체 특화사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		2,435
13	성별영향 평가사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계속 사업	587
14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660
15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272

연 번	사업 유형	부서명	사업명	신규 /계속	예산 (백만원)
16	자치단체 특화사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8,827
17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266
18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716
19	자치단체 특화사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1,360
20	자치단체 특화사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106
21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 창출		1,599
22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지원		450
23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340
24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15
25	성별영향 평가사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운영 지원	신규 사업	130
26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100
27	자치단체 특화사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93
28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652
29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107
30	자치단체 특화사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386
31	성별영향 평가사업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부모커뮤니티	신규 사업	456

연 번	사업 유형	부서명	사업명	신규 /계속	예산 (백만원)
32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75
33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356
34	자치단체 특화사업	출산육아담당관	영유아플라자 운영		1,998
35	여성정책 기본계획	출산육아담당관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870
36	자치단체 특화사업	출산육아담당관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
37	여성정책 기본계획	출산육아담당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2,611
38	여성정책 기본계획	출산육아담당관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300
39	여성정책 기본계획	출산육아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8,930
40	자치단체 특화사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10,444
41	자치단체 특화사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964
42	자치단체 특화사업	아동청소년담당관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900
43	자치단체 특화사업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교육장 운영		298
44	성별영향 평가사업	공간정보담당관	U-서울 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	계속 사업	130
45	자치단체 특화사업	공간정보담당관	서울애플리케이션센터 운영		445
46	성별영향 평가사업	경제정책과	도시형 제조업 인식제고	계속 사업	194
47	성별영향 평가사업	경제정책과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계속 사업	7,583

연 번	사업 유형	부서명	사업명	신규 /계속	예산 (백만원)
48	자치단체 특화사업	투자유치과	DMC 입주기업 지원		203
49	자치단체 특화사업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1,791
50	자치단체 특화사업	일자리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32,865
51	여성정책 기본계획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50
52	성별영향 평가사업	노동정책과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204
53	성별영향 평가사업	노동정책과	노동존중문화 확산		70
54	성별영향 평가사업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1,774
55	성별영향 평가사업	창업취업지원과	창조적 청년기업 1,000개 육성	계속 사업	19,087
56	성별영향 평가사업	창업취업지원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계속 사업	614
57	자치단체 특화사업	창업취업지원과	시니어 비즈니스센터 운영		1,729
58	성별영향 평가사업	창업취업지원과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계속 사업	9,678
59	여성정책 기본계획	창업취업지원과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
60	자치단체 특화사업	희망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 통장		3,304
61	자치단체 특화사업	희망복지지원과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지원 꿈나래통장		7,328
62	성별영향 평가사업	어르신복지과	고령자 능력활용 강화		2,601
63	성별영향 평가사업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자활후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810

연 번	사업 유형	부서명	사업명	신규 /계속	예산 (백만원)
64	여성정책 기본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1,027
65	성별영향 평가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61,481
66	성별영향 평가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229
67	성별영향 평가사업	자활지원과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7,631
68	성별영향 평가사업	보건의료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1,894
69	성별영향 평가사업	보건의료정책과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700
70	성별영향 평가사업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2,500
71	여성정책 기본계획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603
72	자치단체 특화사업	건강증진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1,221
73	성별영향 평가사업	건강증진과	토요 어린이 건강 클럽		-
74	자치단체 특화사업	건강증진과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강화		-
75	자치단체 특화사업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143
76	성별영향 평가사업	버스정책과	버스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28
77	성별영향 평가사업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100
78	자치단체 특화사업	자원순환과	환경(재활용) 컨설팅		295
79	자치단체 특화사업	생활환경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611

연 번	사업 유형	부서명	사업명	신규 /계속	예산 (백만원)
80	여성정책 기본계획	문화예술과	서울여성합창페스티벌		70
81	자치단체 특화사업	체육진흥과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195
82	여성정책 기본계획	체육진흥과	스포츠재능 나눔 활성화		100
83	여성정책 기본계획	인사과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431
84	자치단체 특화사업	인력개발과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795
85	자치단체 특화사업	교육격차해소과	서울동행프로젝트		2,107
86	자치단체 특화사업	평생교육과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608
87	자치단체 특화사업	조경과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723
88	성별영향 평가사업	도시안전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655
89	성별영향 평가사업	도시안전과	안전리더 육성 및 재난안전 교육	계속 사업	221
90	성별영향 평가사업	도시안전과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150
91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피복비		2,890
92	성별영향 평가사업	안전지원과	여성위기대처능력향상을위한시민 안전교육운영	계속 사업	283

*주) 자체선정 사업은 '13년도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사업 임

- 부서별로는 총 34개과의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음. 여성정책 대상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가장 많은 40건이 작성되었고, 복지건강실이 16건으로 많았음. 서울시의 올해 중점사업 인 일자리정책 분야로 경제진흥실에서 14건, 안전분야 관련 사업으로 도시안

전실의 3건, 소방재난본부 2건 작성됨.

표 II -15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구 분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제 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
총 계		92	29
서울혁신기획관 (1)	마을공동체담당관	1	1
시민소통기획관 (1)	시민봉사담당관	1	1
여성가족정책실 (40)	여성가족정책담당관	31	3
	출산육아담당관	6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
	아동청소년담당관	1	-
비상기획관 (1)	민방위담당관	1	-
정보기획단 (2)	공간정보담당관	2	1
경제진흥실 (14)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정책과	2
		투자유치과	-
	일자리기획단	노동정책과	2
		일자리정책과	-
		창업취업지원과	3
		사회적경제과	1
복지건강실 (16)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2
		자활지원과	1
		희망복지지원과	-
		장애인자립지원과	2
	보건정책관	건강증진과	1
		보건의료정책과	3
도시교통본부 (2)	교통정책관	버스정책과	1
		택시물류과	1
기후환경본부 (2)	기후변화정책관	생활환경과	-

구 분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제 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
		자원순환과	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3)		문화예술과	1	-
		체육진흥과	2	-
		인력개발과	1	-
행정국 (2)		인사과	1	-
		교육격차해소과	1	-
교육협력국 (2)		평생교육과	1	-
		도시안전과	3	3
도시안전실 (3)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	3	3
푸른도시국 (1)		조경과	1	-
소방재난본부 (2)		소방행정과	1	-
		안전지원과	1	1

2. 컨설팅 영역별 내용분석결과

1) 사업 컨설팅 컨설팅 내용분석

□ 분석평가서 작성 실태 및 컨설팅 영역

- '13년도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1차 업무 (사업) 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분석평가서는 62개 사업(87.3%)임(나머지 9개 분석평가서는 미제출됨). 신규과제와 지속과제로 구분하여 분석평가서의 완성도 정도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신규과제의 경우, 전혀 작성 안 된 사업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23개 사업으로 52.3%를 차지하였으며, 부분적으로나마 작성된 과제는 약 41%, 완성도가 비교적 높게 작성·제출된 과제는 7%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계속과제는 신규과제와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작성완료한 과제의

비율이 55.6%인 반면, 전혀 작성 안된 사업이 2개 사업(11.1%)으로 나타남.

Ⅱ 표 Ⅱ-16 Ⅱ 분석평가서 작성현황

구분	계(비율)	신규	계속
계	62(100.0)	44(100.0)	18(100.0)
전혀 작성안됨(×)	25(40.3)	23(52.3)	2(11.1)
부분 작성(△)	24(38.7)	18(40.9)	6(33.3)
작성 완료(○)	13(21.0)	3(6.8)	10(55.6)

주) 9개 사업은 초기 분석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 사업으로 구분하였음

○ 주요 컨설팅 영역

- 분석평가 지표별 컨설팅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Ⅰ 정책환경의 특성에서 1.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51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71.8%), Ⅱ 성별 요구도 - 2. 수혜자 비율 43(60.6%), 3. 성별 요구도 - 예산배분의 성별 비율을 나타내는 컨설팅 내용이 28개(39.4%)로 분석됨. Ⅲ 성평등 조치사항에 대한 컨설팅으로는 4.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의견이 7개(9.8%)에 불과, 5. 예산반영에 대한 의견이 8개 사업, 11.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 사업내용 개선에 대한 의견이 50개 사업으로 분석되었으며 70.4%로 비교적 사업내용 개선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Ⅰ 정책환경의 성별특성과 관련하여, 1. 사업이 갖는 성별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떠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음. 여기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론적 근거나 정책이 놓인 환경을 성별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음.
- Ⅱ 성별요구도와 관련하여, 사업의 모집단과 대상집단에 대한 구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표와 관련한 컨설팅의견은 해당사업의 모집단 및 사업 대상집단을 정의하는 것을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 하고 있음.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은 수혜자의 성별비율에 따라 대부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Ⅲ 성평등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법·지침, 예산배분에 대한 개선의견은 각각

10% 내외로 개선의견이 적게 제안되고 있는 반면, 사업개선과 관련한 개선의견은 전체 사업의 70%를 넘고 있어 대부분의 개선의견은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임을 알 수 있음

표 II-17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현황

연번	사업명	1차 평가서	①	②		③			컨설팅 내용	최종평가서 (반영결과)
			1	2	3	4	5	6		
	전체	71	51	43	28	7	8	50		
1	마을공동체 주민 교육(계속)	×		✓	✓	✓		✓	- 통계활용 - 여성주민예산 -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반영	개선의견 반영
2	마을청년활동가 양성(신규)	×	✓	✓					- 여성의봉사활동에 대해 가산점부여 - 대상자집단의 정의 설명	반영안됨
3	120다산콜센터운 영(계속)	○		✓					- 가입기 비정규직여성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필요	반영안됨
4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지원(계속)	○	✓	✓	✓		✓	✓	- 남성이용을 낮은이유설명 - 남성피해자지원예산 및 중사자교육 지원필요	개선의견 반영
5	가족품앗이및공 동육아나눔터운 영지원(신규)	×	✓	✓	✓		✓	✓	- 사회경제적특성 - 대상자및수혜자 개념 명시 - 성별형평성에서 예산배 분 현황 근거 제시	개선의견 반영
6	서울부모커뮤니 티(신규)	×	✓	✓				✓	- 부모커뮤니티사업이대 부분여성인 특성 설명 - 사업수혜자 통계 - 돌봄주체의 다양화방안 마련	개선의견 반영
7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신규)	×	✓					✓	- 육아공동체에 남성참여 필요성강조 - 아버지참여방안제안	개선의견 반영
8	서울 유스데이 운 영(신규)	×	✓	✓	✓			✓	- 이용자의 성별특징파악 노력 - 사업대상 및 수혜자 파악 방안제시 - 수혜자조사 실시 및 반영 노력 필요	개선의견 반영
9	다문화 마을공동 체 활성화 지원 (신규)	×	✓					✓	- 다문화공동체의여성의 견 반영위원회 구성 - 사업 내용, 수행 방식의 성별사항 고려 필요 있음	반영안됨

연도	사업명	1차 평가서	①			②			③			컨설팅 내용	최종평가서 (반영결과)
			1	2	3	4	5	6	4	5	6		
10	시민생활안전체 험(계속)	○		√	√			√	√			-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방 안 제시 - 민방위교육장활용 내용 을구체적으로 설명. 여 성대상운영비 책정 - 여성대상 교육에 적합한 체험시설 확충	반영안됨
11	U-서울 안전서비 스 운영 및 확대 (계속)	△	√					√				- 점차돌봄제공자가 감소 하고 있음 - 신체적,경제적 성별특성 에서 안전서비스 대상계 층 여성 - 저소득층에 대한 이용료 지원은 성별특성이 반영 안된것	반영안됨
12	도시형 제조업 인 식제고(계속)	△	√					√				- 여성은 피고용인으로 비 정규직 - 구체적인 방안필요	반영안됨
13	창조전문인력양 성사업(계속)	○	√					√				- 여성일자리수는 많이창 출과동시에 많이소멸되 는 구조, 전문적일자리 축 진필요 - 여성창조전문인력, 여대 생 산학협력 등 프로그램 개발 방안	반영안됨
14	노동복지센터 설 치 운영 및 활성 화 지원(신규)	×	√	√	√							- 여성과남성의근로여건 및환경의 차이설명 - 대상자 및 참여자정의 설명	사업대상성 별특성반영
15	노동존중문화 확 산(신규)	×	√	√	√			√				- 여성과남성의 노동시장 환경 및 신체적차이 설명 - 사업대상자및수혜자 집 단 설명 -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성별통계	-사업의 성별특성 -개선 의견 반영
1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	×		√				√				- 여성기업주특성 - 사회적기업 여성예비창 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프 로그램 도입, 민간협력 및 특별융자프로그램 도입	반영안됨
17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신규)	×	√	√				√				- 주민욕구의생물학적,사 회문화적,성별특성 설명 바람 - 각 단계별 성별균형이론	반영안됨

연번	사업명	1차 평가서	①			②			③			컨설팅 내용	최종평가서 (반영결과)
			1	2	3	4	5	6					
												수 있도록 고려	
18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신규)	×	√	√	√				√			-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문화적,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차이 있음 - 협동조합에 관한 성별통 계구비,이와 관련한 교재 개발,교과과정개발필요	개선의견 반영
19	공공근로 사업 (계속)	△	√	√	√	√			√			- 여성공공근로 참여자들 의 수요;노동시간유연근 로 제시 - 취약계층산출방식 설명	반영안됨
2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신규)	△	√	√	√	√			√			- 지역공동체일자리 대상 의 특징 설명 - 사업대상자 정의를 바탕 으로 통계산출요구, 성별 예산배분	반영안됨
21	서울일자리플러 스센터 운영 (계속)	○	√	√	√							- 여성의 근로환경 및 일자 리취창업수요의성별 특 성 설명 - 여성일자리의 취업전략 과 저임금적 특성은 독립 적으로 이해	반영안됨
22	장년창업지원센 터 운영(계속)	△	√	√	√				√			- 창업대상의 특징 및 여성 의 낮은 참여율 설명	반영
23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계속)	○	√	√	√							- 기본통계현황요구 - 상시근로자5인이상상용 근로자성별비율	그대로
24	창조적 청년기업 10,000개 육성 (계속)	○		√	√				√			- 여성창업센터진입 - 의사결정참여기회의 균 형성여부	그대로
25	사회복지통합서 비스 전문요원 지원(계속)	○	√	√	√	√			√			- 정책환경의특성,대상자 및 수혜자정의 -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특징 이 여성이 많음에도불구하 고 불리, 처우개선 요청	그대로
2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신규)	△	√		√			√	√			- 다양한 대상계층의특성 과 수요고려 - 여성관련 사업에 대한 예 산책정 반영요구	개선의견 반영
27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	√	√	√				√			- 대상계층(독거어르신,한 부모가정)성별 특징 반영	반영안됨

연 번	사업명	1차 평가서	①		②		③			컨설팅 내용	최종평가서 (반영결과)
			1	2	3	4	5	6			
	(신규)										
28	고령자 능력활용 강화(신규)	△	✓	✓					✓	- 노인여성의 경제적,사회 적 특징 설명 - 사업대상 및 수혜자 정의 와 통계요청	개선의견 반영
29	노인보호 전문기 관 운영(신규)	△	✓						✓	- 학대피해노인의 성별비 율은 3:1,여성이 더 많음 - 학대유형의 성별차이도 출 및 방지방안제안	반영안됨
30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신규)	△	✓						✓	- 여성장애인의인권침해 가능성 높음 - 여성장애인인권침해방 지를위한예방프로그램 개발	개선의견 반영
31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신규)	×	✓			✓			✓	- 여성장애인은장애와 여 성이라는 이중차별에 따 라 더욱 열악한 여건 - 관련 법 및 사업개선방안 제시	개선의견 반영
32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신규)	○						✓	✓		반영안됨
33	저소득 장애인 주 거편의지원(집수 리)사업(계속)	×	✓						✓	- 여성장애인의 가사 및 양 육에 있어 특성반영 필요 - 수요에 맞춘 가구구조 설계	성별특성 개선의견 반영
34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 영(계속)	△	✓	✓					✓	-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 적 특징 및수요반영 - 여성장애인적합직종 및 구인기업적극발굴	반영안됨
35	장애인복지관 운 영(계속)	△	✓						✓	- 여성장애인 및 그 배우자 고려필요 - 장애산모들을위한 지속 적인 지원방안필요	반영안됨
36	노숙인 의료지원 (신규)	△	✓	✓	✓					- 노숙인의성별및특성별 분석	반영안됨
37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신규)	△	✓	✓						- 자활프로그램 및 취업알 선에서 성역할이나 고정 관념이 없는지 검토 - 노숙인복지시설에 여성 종사자 고려	반영안됨

연번	사업명	1차 평가서	①			②			③			컨설팅 내용	최종평가서 (반영결과)
			1	2	3	4	5	6					
38	노숙인 자활프로 그램 운영(신규)	×	✓		✓			✓				- 남녀의사회문화적, 경제 적, 신체적요구차이 - 성별에 따른개선방안 모색	반영안됨
39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사업(신규)	×	✓									- 남녀청소년의 성별특징 및 요구고려	반영안됨
40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신규)	○	✓	✓	✓			✓				- 전년도보고서, 운영 및 통 계자료분석하여 남녀특 징 도출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예 산의 성별배분	반영안됨
41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 비스 지원(계속)	△	✓	✓								-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요 질환에대한 성별통계 - 서비스별 만족도와 요구 도 조사반영	반영안됨
42	지역사회기반 자 살예방 사업 (신규)	△	✓	✓	✓			✓				- 모집단과 수혜자집단에 서 성별특성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에 대한 세부평가 내용을 중 심으로방안모색	반영안됨
43	건강도시 추진 (신규)	△	✓	✓	✓			✓				- 모집단과 수혜자집단에 서 성별특성 - 정책환경의 성별특성에 대한 세부평가 내용을 중 심으로방안모색	반영안됨
44	서울시 방문건강 관리사업 운영 (신규)	△	✓	✓	✓			✓				- 남아와여아의보행권장 량 다름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예 산액성별배분방식 설명	반영안됨
45	토요 어린이 건 강 클럽(신규)	△	✓	✓	✓			✓				- 남아와여아의보행권장 량 다름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예 산액성별배분방식 설명	반영안됨
46	버스서비스 품질 평가 (신규)	×	✓	✓				✓				- 기존의 서비스 품질평가 를 내용분석을 통해 구성 필요 - 정기적인 조사시 성별통 계생산 관련조항 명시,젠 더전문가 조사지구성	개선의견 반영
47	버스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의 시민 참여 활성화(신규)	○	✓	✓	✓			✓				- 시민위원회 및 위원구성 에 있어 여성의사회참여 확대 관련 내용을 중심으 로 성차 논의필요	반영안됨

연번	사업명	1차 평가서	①			②			③			컨설팅 내용	최종평가서 (반영결과)
			1	2	3	4	5	6					
48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아마존' 조 성(신규)	×	✓	✓					✓			- 아동대상 이용경험 및 만족도조사 성별실시, 성 별통계구축 - 성별특성반영한 콘텐츠 구성 및 배치	개선 의견 반영
49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신규)	×	✓						✓			- 아동교통사고사상자의 성별차이, 여아사고가 더 많은 편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 지역 및 성별특성을 반영 한의견수렴	개선 의견 반영
50	운수종사자 연수 기관 운영 및 교 육 개선(신규)	×		✓	✓				✓			- 운수종사자교육시 성평 등관련내용담보 - 성별분리통계양식개발 등	반영안됨
51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신규)	△	✓	✓	✓				✓			- 대상자집단을 조사대상 자로 파악 - 예산제시방법제안 - 만족도조사시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반영안됨
52	택시안심귀가서 비스 (계속)	×	✓	✓	✓			✓	✓			- 여성은 범죄취약계층으 로 안전예방 필요성 높은 - 여성의 교육 기회 제한에 대한 교육예산확보	개선 의견 반영
53	도로시설물 안전 자문단 운영 (신규)	△	✓	✓					✓			- 실재여성전문가 확보가 어 려움으로 전문인력발굴 및 인력풀 구비가 급선무 - 여성인력양성 및 진출장려	반영안됨
54	안전리더 육성 및 재난안전 교육 (계속)	○	✓	✓					✓			- 주요 사업대상은 재난취 약계층으로 주부, 여성, 노 인 등임 - 성별통계구축, 주부대상 특화교육콘텐츠구성	반영안됨
55	재난취약가구 안 전점검 및 정비 (신규)	△	✓						✓			- 주요대상이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으며, 성별 요구 - 정책과정 참여자의 성별 통계 작성필요	반영안됨
56	주민참여형 안전 마을 만들기 (신규)	△	✓	✓					✓			- 안전에 대한 위험인식도 차이, 여성, 낮은 연령, 높 은 소득일수록 위험인식 높음 - 심사평가위원 등 구성에 있어서 성별	반영안됨

표 번호	사업명	1차 평가서	①			②			③			컨설팅 내용	최종평가서 (반영결과)
			1	2	3	4	5	6					
57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신규)	×	✓	✓					✓			- 성별영향판단어려움 - 시설물이용자의 특성을 고려, 이용자의 시설사용 측면에서 점검	반영안됨
58	서울형 공공건축 가 운영 (신규)	△		✓		✓			✓			- 관련분야 여성참여 장려, 성별통계구축 - 공공건축가의 성인지의 식향상을 위한 방안 필요	반영안됨
59	민간건축물 안전 관리(신규)	×	✓	✓					✓			- 성별특성이 나타날 것으 로 예상 - 여성인력양성과 진출장 려를 위한 사업개발	반영안됨
60	희망의 집수리 사 업(신규)	×	✓	✓					✓			- 성별요구차이가 있음. 홍보방식의 문제없는지 검토 - 선정가구 및 수리업체제출 보고서의 성별양식 마련	개선의견 반영
61	여성위 기대치능 력향상을위한시 민안전교육운영 (계속)	○				✓	✓	✓				- 여성수해율높일 필요성 있음 - 여성친화적 소방안전교 육내용 개발 홍보확대	반영안됨

주: (-): 제출안됨, (×): 미작성

□ 컨설팅의견의 반영결과

○ 컨설팅의견의 반영결과는 다음 <표 II-18>과 같음. 컨설팅 반영결과는 1차 분석평가서에 대한 컨설팅 의견서가 최종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반영되었는가로 판단한 것임.

- 총 71개 사업 중 컨설턴트가 제시한 컨설팅의견을 반영하여, 분석평가서를 수정·보완하고 있는 사례를 계산하였음
- 그 결과 반영비율은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컨설팅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제출된 사업 비율이 53.5%, 38개 사업으로 분류되었음. 기타로 분류된 사업은 컨설팅 의견서 없이 최종분석평가서를 작성했거나, 1차 작성한 분석평가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로 분류한 결과, 약 18%가 컨설팅과 관계없이 최종분석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18 컨설팅 의견 반영결과

구분	계	반영	반영안됨	기타
반영여부(빈도)	71	20	38	13
비율	100.0	28.2	53.5	18.3

○ 컨설팅 내용이 반영된 경우, 주요 내용

- 컨설팅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있는 사업은 신규사업의 비중이 3/4인 반면, 계속사업 비중은 1/4에 불과하여, 신규사업의 컨설팅의견 반영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컨설팅의견의 주요 반영 영역은 사업개선의견으로 대부분 사업내용에 대한 개선내용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정책환경의 특성에서 성별 통계의 활용,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에 대한 개념정립 요구를 수용하여 성별 요구도에 대한 명시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양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공동체 사업참여자의 성별현황, 프로그램 내용분석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음
- 일자리 관련 사업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고용환경, 대상 특성(장애인, 장년, 고령자 등)별 일자리의 성별 특성,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노동 및 근로환경의 성별 특성을 파악·반영 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안전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 취약계층으로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의 성별 편중현상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절차 및 내용구성 구체화 의견이 반영되었음

표 II-19 사업별 개선의견 반영 현황

연 번	사업명	신/ 구	컨설팅 내용	최종평가서 (반영결과)
	전체			
1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계속	- 통계활용 - 여성주민예산 -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반영	개선의견 반영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계속	- 남성이용율 낮은이유설명 - 남성피해자지원예산 및 종사자교육 지원필요	개선의견 반영
3	가족품앗이및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	신규	- 사회경제적특성 - 대상자및수혜자 개념 명시 - 성별형평성에서 예산배분 현황 근거 제시	개선의견 반영
4	서울부모커뮤니티	신규	- 부모커뮤니티사업이 대부분여성인 특성 설명 - 사업수혜자 통계 - 돌봄주체의 다양화방안 마련	개선의견 반영
5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신규	- 육아공동체에 남성참여 필요성강조 - 아버지참여방안제안	개선의견 반영
6	서울 유스데이 운영	신규	- 이용자의 성별특징파악 노력 - 사업대상 및 수혜자 파악방안제시 - 수혜자조사실시 및 반영노력 필요	개선의견 반영
7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신규	- 여성과남성의근로여건및환경의 차이설명 - 대상자 및 참여자정의 설명	사업대상성 별특성반영
8	노동존중문화 확산	신규	- 여성과남성의 노동시장환경 및 신체적차이 설명 - 사업대상자및수혜자 집단 설명 -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성별통계	-사업의 성 별특성 -개선의견 반영
9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 원	신규	-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문화적,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차이 있음 - 협동조합에 관한 성별통계구비,이와 관련한 교재개발,교과과정개발필요	개선의견 반영
10	장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계속	- 창업대상의 특징 및 여성의 낮은 참여율 설명	반영
1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 다양한 대상계층의특성과 수요고려 - 여성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책정 반영요구	개선의견 반영
12	고령자 능력활용 강화	신규	- 노인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특징 설명 - 사업대상 및 수혜자 정의와 통계요청	개선의견 반영
13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신규	- 여성장애인의인권침해가능성 높음 - 여성장애인인권침해방지를위한예방프로그램 개발	개선의견 반영

연 번	사업명	신/ 구	컨설팅 내용	최종평가서 (반영결과)
1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신규	- 여성장애인은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에 따라 더욱 열악한 여건 - 관련 법 및 사업개선방안제시	개선의견 반영
15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집수리)사업	계속	- 여성장애인의 가사 및 양육에 있어 특성반영 필요 - 수요에 맞춘 가구구조 설계	-성별특성 -개선의견 반영
16	버스서비스 품질 평가	신규	- 기존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내용분석을 통해 구성필요 - 정기적인 조사시 성별통계생산 관련조항 명시, 쟁점전문가 조사지구성	개선의견 반영
17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아마존’ 조성	신규	- 아동대상 이용경험 및 만족도조사 성별실시, 성별통계구축 - 성별특성반영한 콘텐츠 구성 및 배치	개선의견 반영
18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신규	- 아동교통사고사상자의 성별차이. 여아사고가 더많은편 - 어린이보호구역지정시 지역 및 성별특성을 반영한의견수렴	개선의견 반영
19	택시안심귀가서비스	계속	- 여성은 범죄취약계층으로 안전예방 필요성 높은 - 여성의교육기회제한에 대한 교육예산확보	개선의견 반영
20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규	- 성별요구차이가 있음.홍보방식의 문제없는지 검토 - 선정가구 및 수리업체제출보고서의 성별양식 마련	개선의견 반영

○ 컨설팅 내용이 반영 안 된 경우, 그 사유

- 컨설팅 내용을 최종분석평가서에 반영이 안된 사업이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연 컨설팅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있음
- 기본적으로 사업담당자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상호간 수차례의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임. 컨설팅의견을 토대로 컨설팅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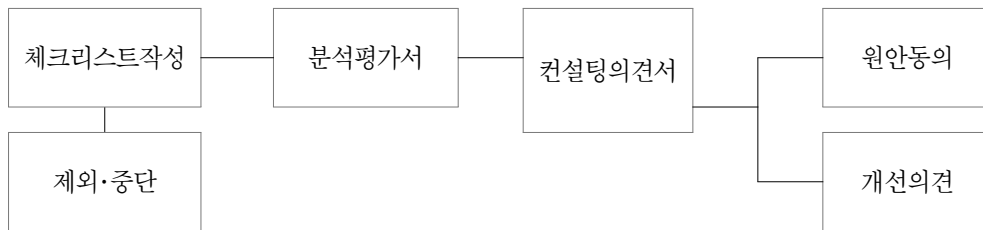
- 첫째, 컨설팅의견이 ‘해당 사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다 거시적인 환경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 최종 분석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음. 사업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사업내용에만 몰입되는 경향이 있으며, 컨설팅의견이 그 주변을 다루고 있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컨설팅이라 판단하여 자신이 작성한 분석평가서의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음
- 둘째, 또한 사업담당자는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 분석을 통해 나타난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과제의 반영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개선안이거나, 당장 시행할 수 없는 개선의견인 경우에 이를 수용하여 반영하지 않음. 이는 분석평가서가 해당사업의 기획에 대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너무 먼 장기과제이거나 혹은 대규모의 예산소요가 필요한 경우, 소극적인 성향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셋째, 컨설팅의견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개선내용을 담지 못하고, 추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에 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컨설팅의견이 대체적으로 반영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찾을 수 있음. 반영되지 않는 사례와 반대로, 사업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틀린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적하거나, 혹은 수정방향이나 내용을 ‘꼭’ 꼬집어서 제시한 경우에 사업담당자는 컨설턴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컨설턴트의 역할과 기능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것인가는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법령 컨설팅 현황 및 내용분석

□ 법령 컨설팅 절차와 방법

- 법령 컨설팅은 사업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제외 법령이 아닌 모든 경우에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법령 컨설팅트는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분석평가서를 검토하면서 평가지표에 따라 컨설팅의견서를 작성·의견서를 총괄부서에 송부함
- 컨설팅의견서에는 평가지표에 따라 검토결과 개선의견이 없는 경우, 원안동의와 개선의견 있음으로 판단됨



□ 법령담당자 분석평가서 작성 실태

- 총 56개의 법령 컨설팅 중 업무담당자가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사례는 단 2개에 불과하고 96%가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접수된 법령에 대한 컨설팅 결과, 개선의견 없이 '원안동의' 법령이 3/4, 75%를 차지하였으며, 개선의견이 있는 법령은 1/4, 25%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20 분석평가서 검토 및 컨설팅 결과

구분	전체	분석평가서 작성 여부		컨설팅 의견 여부	
		작성안함	작성함	없음	있음
과제수	56	54	2*	42	14
비율	100.0	96.4	3.6	75.0	25.0

주: 분석평가서 작성 조례-‘창의상운영조례’와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임

□ 법령 컨설팅 현황 및 내용분석

- 모두 12개 법령에 대해 개선의견이 제안되었는데 법령 컨설팅의견을 분류한 결과, 분석지표에 따라 ① 성별특성이 8(53.3%), ③ 성별 특성 반영 6(40.0%), ② 성별고정관념 1(6.7%)에 해당되는 지표를 컨설팅하고 있음. 주요 컨설팅의견은 다음과 같음

① 성별 구분조항 분석지표의 컨설팅 내용

- 주요 컨설팅 내용은 분석평가서상 법령담당공무원의 표기 수정을 요청하고 있거나 성별 구분 필요성을 제안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 먼저 제·개정 조례에 성별 구분이 있으나, 분석평가서 상 ‘없음’으로 표시한 경우 ‘있음’으로 수정하고 할 것을 요청한 경우임.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마곡사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임
 - 둘째, 제·개정 조례에서 성별 구분이 없으나 성별구분 필요성 근거를 제시하고 성별표시 항목, 양식 등을 제시한 사례가 있음.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각종 건강정보나 통계, 건강지표 분석시 성별 통계를 작성할 것을 컨설팅 하였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시행규칙」,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이 관련 서식에 성별구분 기재란을 신설할 것을 컨설팅함
- 특히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 비율 중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을 할당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컨설팅함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불리한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② 성별 고정관념 분석지표의 컨설팅 내용

- 제·개정 법령 중 성별고정관념이 있는 법령은 1개로 나타나고 있음
 - 해당조례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며, 조례안 제24조(특별휴가)④항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한정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육아책임은 여성과 남성에게 있으므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음

③ 성별특성 반영 분석지표의 컨설팅 내용

- 제·개정 법령 중 성별특성 반영에 대한 컨설팅의견은 대부분 관련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임
- 먼저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와 현재 각종 위원구성의 성별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써 여성 일정비율이상 확보를 명시하거나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컨설팅의견으로 제시함
 - 자격기준을 낮춤으로써 여성의 진입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해당 법령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임

표 II -21 법령의 분석평가지표별 컨설팅 현황과 주요 내용

연번	자치법규명	성별평가 결과			개선의견
		①	②	③	
총계	15(100.0)	8 (53.3)	1 (6.7)	6 (40.0)	
1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			- 성별구분조항 ‘있음’으로 수정 및 성별 구분조항 둔 근거제시 -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중 일정부분을 여성장애인 채용 명시 제안
2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성별구분조항 ‘있음’으로 수정 및 성별 구분조항 둔 근거제시 - 정보, 통계, 건강지표분석 시 성별구분 제안
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지나치게 높은 자격기준 완화
4	서울시 마곡사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			- 성별구분조항 ‘있음’으로 수정 및 성별 구분조항 둔 근거제시
5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조례			✓	- 위원회 구성시 여성비율 40% 이상 고려 단서 삽입
6	서울특별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		✓	- 성별구분조항 ‘있음’으로 수정 및 성별 구분조항 둔 근거제시 - 명예부시장 성별비율 편중되지 않도록 또는 여성비율 40%이상 단서조항 삽입

7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심의회 위원 여성비율 40%이상 단서조항 삽입
8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	- 지나치게 높은 자격기준 완화 - 위원회 구성시 여성비율 40% 이상 고려 단서 삽입
9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		✓	- 성별구분조항 '있음'으로 수정 및 성별 구분조항 둔 근거제시 - 명예부시장 성별비율 편중되지 않도록 또는 여성비율 40%이상 되도록 단서조항 삽입
10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 '여성공무원' 대상 1일1시간 육아시간 허용을 '공무원'으로 수정
11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시행규칙	✓			- 관련서식들에 성별구분 기재란 신설
12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			- 관련서식들에 성별구분 기재란 신설

3) 계획 컨설팅 현황

□ 분석평가서 작성실태

- '2030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내다보며 세우는 장기적 도시 비전수립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지향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증가로 인한 가정 및 직장내 성평등과 보편적 돌봄에 대한 관점을 갖고 출발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에서 여전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각지대가 있으나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평가서는 성별 요구도 차이에만 '체크'되었고, 나머지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서는 성별 특성 반영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지 않음
-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역간 이동성확보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것이므로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 분석평가서

- 에 성별요구도, 성별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적고 있음
- 그러나 여성과 남성은 이동수단, 시간 및 시간대, 이동거리 등 다른 이동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보완되어야 함
- ‘하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성별관련성이 없으므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음으로 적고 있음
- 그러나 세부내용 중에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예를 들면, 하천유역의 현황과악시 성별통계 작성, 찬수공간계획에 있어 여성친화도시 지침활용, 자문위원 및 과업참여자 여성비율 확보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함
- ‘서울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역시 성별 영향에 대한 고려, 요구도, 성별 형평성에 대한 고려 필요없음으로 적고 있음
- 그러나 이동과 관련한 성별특성 반영이 필요함. 영유아 동반자의 승용차 이용요구, 영유아 동반자에 대한 고려, 이동의 안전성확보 등에 대한 내용분석과 개선안 제안
- ‘서울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역시 성별 영향에 대한 고려, 요구도, 성별 형평성에 대한 고려 필요 없음으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음
- 그러나 이동성, 기술접근성 및 이용성의 측면에서 성별영향이 있음. 따라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 연령별 등 집단에 따른 이동특성 및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개선과제를 포함시켜야 할 것을 제안함
- 컨설팅의견서와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컨설팅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II-22 분석평가서 작성현황 및 컨설팅 내용

연번	계획명	분석평가서				컨설팅의견서
		I-1	II-2	II-3	II-4	
1	2030 도시기본계획	○	×	×	×	-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여성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 발생. 성별관점을 반영하여 계획내용을 보완필요
2	도로정비 기본계획	×	×	×	×	- 본 계획은 여성과 남성의 이동특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성과 남성은 이동수단, 시간 및 시간대, 이동거리등 다른 이동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3	하천기본계획(탄천 등 12개)	×	×	×	×	- 세부내용중에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면, 하천유역의 현황과악시 성별통계 작성, 찬수공간 계획에 있어 여성친화도시 지침활용, 자문위원 및 과업참여자 여성비율 확보 등 제안함
4	하천기본계획(홍제천 등 4개)	×	×	×	×	- 본 계획은 성별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내용중에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5	서울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	×	×	×	- 본 계획의 분석평가서는 성별영향 및 요구도의 성별차이가 없다고 판단. 그러나 이동과 관련한 성별특성 반영이 필요함. 영유아 동반자의 승용차 이용요구, 영유아 동반자에 대한 고려, 이동의 안전성확보 등에 대한 내용분석과 개선안 제안
6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	×	×	×	- 본 계획에는 성별영향발생가능성, 성별요구도 및 형평성에 대한 고려필요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동성, 기술접근성 및 이용성의 측면에서 성별영향이 있음. 따라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 연령별 등 집단에 따른 이동특성 및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개선과제를 포함시켜야 할 것을 제안함

표 II -23 | 계획별 주요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연번	계획명	컨설팅의견(성평등조치를 위한 제안사항)
1	2030 도시기본계획	- 계획수립일정에 포함된 위원회 의견청취 및 심의, 시민의견 수립 과정에 성별 의견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성별통계 작성. - 검진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 포함. - 생애주기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 및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차이와 질병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방안 포함. - 각종 계획 수립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기에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성별통계 구축. - 야간조명의 관리계획이 야간의 안전을 위한 조도관리를 고려하여, 안전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논의 필요. - 재난에 대한 안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함께 고려. ex) 보행환경 등
2	도로정비 기본계획	- 도로를 활용하는 이동 행동의 성별, 연령별 차이가 존재함을 감안 하여, 가로 재분류를 위한 고려요소에 주통행인구의 성별, 연령대 고려 필요하며,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 등으로 인한 근거리 이동이 많고 주거지에서의 활동이 더 많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동 및 여성노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성을 위해 주거지 중심가로의 보차구분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현재 보차구분 없음으로 되어 있음.) - 보행약자의 통행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이동의 장애 요소 규제 검토 고려.(아래 자료 참조) - 여성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 주거지 중심가로에서 대중교통 중심 가로와의 밀접한 연계 방안 및 대중교통 시설의 적절한 배치 필요. - 대중교통 서비스 시설 접근경로의 편의성 고려 필요(유모차 이용, 여성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 특성 고려) -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거지 중심가로 및 보행 중심가로의 경우 야간에 적절한 가이드라인 필요. (도로의 조도, 시야확보, 폐쇄적 이지 않은 형태 등) 대중교통 시설물에서 주거지 중심가로까지 주요 이동 경로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3	하천기본계획(탄천 등 12개)	- 하천의 일반사항 작성 시, 인구와 관련된 통계와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등에 성별구분을 포함하도록 함. - 과업의 세부지침 중 본 과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기술지침(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등을 고려할 때,

연번	계획명	컨설팅의견(성평등조치를 위한 제안사항)
		공원 관련 여성친화도시 지침을 함께 참조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 구성시 여성 전문가가 1-2명 포함되도록 함. - 과제 발주시, 환경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전문가의 전체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참여 여성 비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4	하천기본계획(총제천 등 14개)	- 하천의 일반사항 작성 시, 인구와 관련된 통계와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등에 성별구분을 포함하도록 함. - 과업의 세부지침 중 본 과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기술지침(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등을 고려할 때, 공원 관련 여성친화도시 지침을 함께 참조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 구성시 여성 전문가가 1-2명 포함되도록 함. - 과제 발주시, 환경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전문가의 전체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참여 여성 비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5	서울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 본 의견서는 「서울교통 2030」 11대 약속을 중심으로 부문별 추진계획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①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교통환경 조성 -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뿐 아니라 언제나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함. 주야간의 안전성 모두를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 물리적 편의성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고려 필요. 범죄예방 설계(CPTED)의 적용 및 야간 조도 확보, 시야의 사각지대 방지, 공공감시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보행공간의 안전성 확보 필요. -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주거에 이르는 지역 내 주 보행로에 대한 야간보행안전지구 설치 등을 제안. - 지하철 운행시간과 연계하여 마을버스 운행시간의 연장 고려. ④ 교통약자와 일반인의 경계가 없는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약자로서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뿐 아니라 아이동반자를 포함한 맞춤형 교통수단에 대한 고려 필요. - 영유아동반자가 유모차로 이동하기에 불편한 정류장의 공간구조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시 승차 거부, 시민 인식에 대한 전환 캠페인 등. ⑤ 철도중심의 효율적 대중교통체계 구축 - 환승센터 및 시스템의 구축시 승용차와의 연계 고려.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집단에 대한 고려 필요. ⑥ 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실현 - 버스 정류소의 이용환경 개선에 생활권 이동 기반인 마을버스 정류소 포함

연번	계획명	컨설팅의견(성평등조치를 위한 제안사항)
		⑧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 이동저감사회 구현 - 승용차를 이용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적정수준의 요금 부과시, 영유아 동반 등 승용차 이용 필요 집단에 대한 요금 인하 방안 고려. (출산 장려책과도 연계 가능함) ⑪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선진도시 조성 - 다양한 캠페인, 교육, 시민참여그룹, 모니터링 등 정책과정에 시민들이 성별, 연령별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참여 과정에서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함.
6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 본 의견서는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의 과업 중 성별 특성 및 영향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① 서울시 ITS 여건변화 조사 및 분석 서울시 도시환경 및 교통정책 조사: 현재의 이동 환경이 여성과 남성의 다른 이동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성별 통계의 활용 및 분석을 통한 정량적 평가 뿐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 분석이 필요한 사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이동자 수요, 이동시간, 이동패턴 및 경로, 이동거리, 이동수단, 대중교통 이용시 환승횟수 및 소요시간 등 -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서비스의 인식, 정보의 유용성 및 편의성, 정보의 질과 신뢰성 등 ② 서울시 ITS 추진전략 설정 및 서비스 도출 서울시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ITS 역할과 기능 제시: 기존의 도시 인프라가 지닌 문제점 및 한계의 극복, 여성과 남성의 다른 이동 특성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성 향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수요 대응형 서울시 ITS 세부서비스 도출: 서울시 도시환경 및 교통정책 조사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성별, 연령별,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 유무별, 취업여부별 특성에 따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세부서비스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③ 서울시 ITS 관련 법제도 개선안 및 평가체계 제시 ITS 사업평가방안 제시 등: 사업평가 방안의 수립에 있어서 성별 이동 특성 반영 여부가 점검되도록 해야 함. 특히, 성별, 연령별, 미취학아동 및 영유아 유무별, 취업여부별 이동특성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시뮬레이션 점검을 평가 방안에 포함하도록 것을 제안함.

4)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 현황 및 내용분석

□ 사업유형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실태와 컨설팅 내용

- 92개 작성된 성인지예산서의 성별수혜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수혜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5개로 분류시, 전체 92개 사업 중에서 40.2%는 여성수혜율이 100%이거나 높은 사업이었으며, 15개의 사업(16.3%)은 성별수혜율이 나타나지 않거나 (성인지예산서에 50:50으로 작성하거나 실제 수혜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아예 작성하지 않아서 성별차이를 볼 수가 없는 경우임. 그 외에도 가구대상 사업(8개)이나 인프라성 사업 (18개)의 경우에도 대부분 여성수혜율이 높거나 성별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임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인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의 특성상 여성수혜율이 높은 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특화사업의 경우에도 31개중 14개 사업이 여성 100%이거나 높은 사업임

【 표 II -24 】 여성수혜율에 따른 성인지예산사업 분류

여성 수혜율 현황	사업 수	대상 사업 유형 (개)		
		성별평가	여성정책	자치특화
여성수혜율 100%	13개 (14.1%)	0	11	2
여성수혜율 높음 (2개는 가구대상 사업임)	24개 (26.1%)	5	7	12
여성수혜율 낮음	14개 (15.2%)	8	0	6
가구대상 사업	8개 (8.7%)	2	2	4
인프라성 사업	18개 (19.6%)	6	7	5
성별 수혜율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	15개 (16.3%)	8	5	2
합계	92개 (100%)	29	32	31

□ 여성 수혜율이 높거나 100%인 사업

- 사업담당자 작성내용

- 성별 수혜분석의 작성내용: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경우, 대부분 '여성' 대상 사업이므로 여성이 대부분이거나 여성수혜율 100%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그런데 센터나 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는 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컨설팅 의견은 사업 대상자 규모를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성과목표의 제시는 무조건 수혜율, 실적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목적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야 함. 그런데 해당 사업담당자는 사업 참여자, 수혜자 등의 인원이나 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컨설팅 내용

- 여성수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 필요. 이는 신체적 차이로부터 나온 현상이라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적 특성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심층분석이 필요함
- 기관이나 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용자 수를 파악하면 보다 구체적인 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며, 대상자 및 수혜자의 정의와 통계의 출처를 명시할 필요성 있음.
- 성과목표 제시와 관련하여, 이미 여성수혜율이 높은 경우 수혜자 등 실적 증가보다는 수혜자의 사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하며, 다른 한편으로 남성 참여율 제고를 제시하고 있음

【 표 II-25 】 여성수혜율이 높거나 100%인 사업: 예산서 작성 및 컨설팅 내용

구분	작성내용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 수혜분석	- 불특정 다수 - 여성수혜율 100%	- 여성의 수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분석 - 사업대상자, 수혜자 정의 및 통계출처 명시 - 사업대상자에 대한 규모파악 필요
성과목표 설정	- 수혜자수, 상담자수, 참여자 수 증가	- 이미 여성수혜비율이 높은 경우 수혜자 등 실적 증가보다는 수혜자의 사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남성참여율 제고

표 II -26 여성수혜율이 높거나, 100%인 사업 예산서 작성 내용 및 컨설팅 내용

연도	사업명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지표)	
1	120다산콜센터 운영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음	*건강하고행복한직장조성 -악성민원감소율 : 50% → 60%	*원인분석:여성비중이높은상담사직종의노동조건현황
1	늘푸른여성지원센터	*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로 표기 *여성수혜율 100%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인터넷시민감시단 모니터링 건수: 2000건에서 2500건으로 확대	*원인분석:근거명시(예시제시) *성과목표: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만족도(수혜자중심의성과목표)
2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로 표기 *여성수혜율 100%	*보호필요성의 복지향상 -상담인원: 500명→525명	*사업대상자규모과악필요 *원인분석:사회적상황설명(예시로제시) *성과목표:상담요구도및만족도조사
3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로 표기 *여성수혜율 100%	*보호필요성의 복지향상 -현장상담실적: 12천건 → 14천건	*사업대상자규모과악필요 *원인분석:사회적상황설명(예시로제시) *성과목표:상담요구도및만족도조사
4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여성수혜율 100%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센터참여자 수: 1300명에서 1500명	*원인분석:관련자료제시필요(예시), 장애인의사회참여주요지표설명 *성과목표:센터이용자의요구도및만족도를통한사업의성과목표재조정필요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여성수혜율 100%	*건강한 가정조성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세대수: 22392가구 → 30000가구	*원인분석:추진근거제시 *성과목표:서울시에거주하는저소득한부모사업참여자비율
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수혜율 100%	*건강한 가정조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2392세대수 → 30000세대수	*원인분석:추진근거제시 *성과목표:서울시에거주하는저소득한부모사업참여자비율
7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여성수혜율 높음	*여성의권익향상및양성평등문화확산 -가정폭력피해상담인원수: 37550명 →	*대상자수혜자출처 *성과목표:여성인권보장 *기대효과:여성피해자를보호

연도	사업명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지표)	
	방지		40000명	하고가해자의재범을방지
8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지원	*여성수혜율 높음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 램 참여인원: 2130명 → 2500명	*대상자 및 수혜자 출처 *예산:상담종사자 추가 *원인분석:부계주심의 가족구성 *성과목표:여성의인권보장,상 담시간횟수 등 *기대효과:예상교육 등을 통한 성평등 기대
9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여성수혜율 100%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구조지원실적: 8090건 → 8332건	*대상자수혜자출처 *원인분석:남성중심적사회구 조및제도적차별 *성과지표: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과치료회복프로그램지 원으로구분제시 *기대효과:지원을 통한 자립
10	여성 새로일하기센 터 지정운영	*여성수혜율 100%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원 수: 11234개 → 11500개	*성과목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 상담횟수
11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여성수혜율 100%	*여성권의 향상 및 양성평 등 문화 확산 -검정고시 합격률: 95% 유지	*대상자수혜자출처 *원인분석:신체적차이가아닌 남성중심적사회문화 *성과목표:자립학교의시설,교 사수,질적수준향상등 *기대효과:학력지원만이아닌 심리적정서적치유추가필요
12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수혜율 100%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 원수: 48000개→ 51000개	*통계출처 *원인분석:취업중단여성현황 *성과목표:전문직에서의여성취 업확대,여성의일자리수확대 *기대효과:노동시장에서의성 차별을시정
13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성수혜율 100%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사회서비스여성일자리지 원수:11234개→11500개	*대상자와수혜자구분작성필요 *원인분석:여성의경제활동을 낮춤 *기대효과:보완

연도	사업명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지표)	
14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수혜율 높음	*여성권의 향상 및 양성평 등 문화 확산 -성폭력피해 상담인원 수: 7050명 → 7500명	*대상자확인 *원인분석:추가
15	성매매위기 심대여성 현장상담	*여성수혜율 100%	*여성권의 향상 및 양성평 등문화 확산 -현장상담 참여자 수: 12688명 → 15000명	*잘 작성
16	여성폭력피해 자 주거지원	*여성수혜율 높음	*여성권의 향상 및 양성평 등 문화 확산 -임대주택 입소자 수: 20 명 → 40명	*원인분석: 재작성
17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여성수혜율 높음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서 울만들기 -안전마을 선정 : 14→18개 -예방캠페인참여인원 : 20 만명 유지	*예산액확인 *대상자,수혜자수정
18	영유아플라자 운영	*여성수혜율 높음	*보육서비스향상 -영유아플라자이용인원 수: 350000명 → 400000명	*예산, 대상자, 수혜자 확인
19	어린이집 상시 평가제제 운영	*여성수혜율 높음	*보육서비스향상 -안심보육모니터링 시설 수: 3505개소 → 1824개소	*예산확인 *기대효과수정:여성사회활동 기획확대,보육질제고
20	아이돌보미사 업 운영	*여성수혜율 100% *가구 대상 사업	*출산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봄서비스연계 건 수: 332000건 → 340000건	*대상자 확인
21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출산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직장교육 참가 자수: 14500명 → 16000명	*예산 확인
22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여성참여확대 -여성참여자수: 6538명 → 8000명	*2013년통계로재작성 *원인분석:참여대상인취약계 층과여성과의연계설명필요
23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	미작성		*대상자수정 *예산구분재작성

연도	사업명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지표)	
				*원인분석:수혜자분석이되지 않아서분석어려움 *성과목표:수혜자만족도,수혜비율향상 *기대효과:내용수정후재설정
24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여성참여율 높음	*취약계층근로자복지수준 제고 -노동복지센터 이용 인원: 1000명 → 1200명	*대상자수혜자통계필요 *성과목표:여성상담인원,만족도 *기대효과:여성취업활동에대 한사회적지지강화,여성경제 활동참여확대
25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 통장	*여성수혜율 높음	*희망플러스통장 가입가구 수: 16100가구 → 16600가구	*2012년도통계를2013으로 *원인분석:저소득층의여성(가 구주)현황 *성과목표:수정-여성(가구주) 수혜율 *기대효과:자녀돌봄과경제활 동의이중고의어려움제시및 극복
26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지원 꿈나래통장	*여성수혜율 높음	*꿈나래통장 가입가구수: 14900가구 → 15600가구	*2012년도통계를2013으로 *원인분석:저소득층의여성(여 성가구주)비율현황제시 *성과목표:수정-여성(가구주) 비율 *기대효과:여성빈곤화경향에 서교육지원필요성
27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여성수혜율 100%	*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지원 -홈헬퍼지원 대상 인원: 108명 → 150명	*2012년도통계를2013으로 *원인분석:여성장애인지원필 요성 *기대효과:수정(사회참여기회 는부적절)
28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여성수혜율 높음	*외국인여성 근로자 의료비 지원 신청진수 60% 유지 -의료비 지원자 수: 425명 →840명	*대상자규모및 성별현황과악 필요 *성과목표:성별만족도를통한 서비스성과측정 *기대효과:서비스만족도제고 를통한효과성달성
29	산모신생아	*여성수혜율	*저소득출산가정 경제적	*2012년도통계를2013으로

연도	사업명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지표)	
	도우미 지원	100%	부담 완화 및 건강증진 -가정방문서비스지원건 수: 10217명→10200명	*성과목표:예산증액이없다면, 만족도향상을설정 *기대효과:수정--사회적돌봄 에대한인식향상
30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	*여성수혜율 100%	*여성암검진율제고: 21%→ 47% *여성건강관리역량향상 -생애주기별프로그램운 영: 4만건→6만건	*대상자수혜자설명필요 *원인분석:생애주기별여성과 남성의신체조건차이 *성과목표:연령대별로성과제시 *기대효과:여성의유명률을낮 추고사회비용감소등
31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여성수혜율 높음	*여학생건강체중비율 증가 -신체활동참여여학생수: 4000명→ 6000명	*대상자수혜자설명필요 *원인분석:신체활동과관련된 남녀아의차이 *성과목표:수정 *기대효과:취약계층아동내용 으로수정
32	재활용 컨설팅	*여성수혜율 높음	*여성의환경분야활동영역 확대 -여성참여율: 89 → 93%	*대상자수혜자:수정 *원인분석:여성활동가비율이 높은이유설명필요 *성과목표:수정 *기대효과:남성의활동효과추가
33	서울여성합창 페스티벌	*여성수혜율 높음	*시민참여도 -관람객: 2500명→2600명	*대상자통계수정 *원인분석:여성합창단의필요 성제시 *성과목표:합창단원대상-만족 도,예술성향상등
34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여성수혜율 높음	*여성 생활체육참여율 제 고: 9850명→ 3500명	*대상자수정:서울시민수 *수혜자수정:단순참가,경기참 가분리 *예산수정:참가현황에따라분리 *원인분석:여성참여율높아진 것에대한이유설명 *성과목표:수정 *기대효과:지역주민간화합도 모,시민의식고취
35	스포츠재능 나눔 활성화	*여성수혜율 높음	*여성참여율: 6480명 →6500명	*예산:종목별배분 *원인분석:남성참여율저조원

연도	사업명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지표)	
				인필요 *성과목표:남성참여율증가 *기대효과:여성들의건강증진, 친목도모,삶의질향상등
36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여성수혜율 높음	*대체인력수: 70명→80명	*원인분석:여성고유영역으로 명시한부분수정,남성참여하 지않는이유를사회문화적원 인으로분석필요 *성과목표:남성공무원의육아 휴직비율 *기대효과:가족친화적직장으 로변화
37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여성수혜율 높음	*남성 참여자 확대: 1600명 →2200명	*대상자수정:30-60대인구 *수혜자도프로그램별성별비 율제시 *원인분석:야간프로그램설명, 남성참여저조설명,은퇴이후 지역사회복귀남성설명등 *성과목표:남성참여자수확대 *기대효과:수정
38	안전리더 육성 및 재난안전 교육	*여성수혜율 높음	*안전리더 육성 인원 수: 100명 유지	*대상자:서울시민 *원인분석:재난및안전에대한 두려움이나위협은여성이높 게나타남 *성과목표:남성수혜율,만족도 *기대효과:안전사고율감소,안 전피해율감소
38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여성수혜율 높음	미작성	*대상자:대상지인4개자치구지 역주민수 *수혜자:사업선정단체니주민수 *원인분석:재난및안전에대한 두려움이나위협은여성이높 게나타남 *성과목표:참여율,만족도 *기대효과:주민참여를통한지 역안전선확보및살기좋은마 을공동체형성

연도	사업명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지표)	
40	여성위기대처 능력향상을위 한시민안전교 육운영		*안전의식확산 및 홍보활동강화 -시민안전체험교육학습: 100만명 이상	*대상자통계추가필요 *원인분석:여성과노약자교육 참여원인제시 *성과목표:여성비율증가

□ 여성 수혜율이 낮은 사업

- 여성수혜율이 낮은 사업은 주로 경제진흥실의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 아닌 일반시민 대상 일자리 사업이나 IT, 전문인력양성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등은 여성수혜율이 낮은 반면, 남성 수혜율이 높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전통적으로 남성 대상사업,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장 운영, 소방공무원 관련 사업 등은 남성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상사업의 특성
 - 일자리 지원사업 : 대상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운영, 도시형 제조업 인식제고,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DMC 입주지원사업, 창조적 청년기업 1,000개 육성 등 일자리 지원사업, 어르신 자활 후견지원 사업,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그 외 사업: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민방위교육장 운영,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소방공무원 피복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주요 성과목표는 여성수혜율이나 여성참여자 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컨설팅 내용
 - 여성수혜율이 낮은 이유를 홍보나 신청, 접수절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볼 것을 제안, 특히 경력단절여성 현황과 재진입을 위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할 것 등이 컨설팅 내용으로 제시됨

-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여성수혜율이 낮은 사업의 경우, 여성수혜율이나 참여자 수 증가, 사업의 만족도, 근로여건 개선 등이 성과목표로 제안되고 있음.

표 II-27 남성수혜율이 높은 사업

구분	작성내용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수혜분석	- 수혜자수만 작성 - 대상자 수는 불특정 다수	- 대상자 및 수혜자 통계자료 보완 - 통계출처 명시
성과목표 설정	- 여성참여자수나 수혜자 수를 점차적으로 높이고 있음 -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한 복지제공	- 성과목표로 여성수혜율을 연도별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시함

표 II-28 해당사업 성인지예산서 및 컨설팅 작성 내용

연도	사업명	성인지예산서 작성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지표)	
1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수혜자만 작성함 *수혜자: 남성 많음 (640:900)	*주민교육인원: 1,600명 유지	*대상자:서울시민 *원인분석:홍보나신청,접수절차에대한분석 *성과목표:여성수혜율확대 *기대효과:여성참여확대를통한 마을공동체사업활성화
2	민방위교육장 운영	*여성수혜율 낮음	*재난위기에 취약한 여성의 위기발생시 대처 능력 함양 -여성 참여율: 7500명 → 7700명	*대상자:서울시민 *기대효과:안전체험을통한생활 안전피함
3	도시형 제조업 인식제고	여성수혜율 낮음	*서울경제성장기반마련 -교육생수, 참여자수 등: 400명 → 500명	*원인분석:4대도시형제조업실적분석 *성과목표:여성취업연계,인력양성 *기대효과:여성의직업역량제고
4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여성수혜율 낮음	*서울경제성장기반마련 -창조전문인력양성수:	*2013년통계로재작성 *원인분석:관련분야졸업/재직자

연번	사업명	성인지예산서 작성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지표)	
			3000명 유지	남성많음 *기대효과:여성의역량강화,취업 의욕고취
5	DMC 입주기업 지원	*여성수혜율 낮음	*입주기업 지원사업시 여성수혜율 40%로 증 대 (2015까지): 20% → 25%	*대상자수혜자출처 *원인분석:인재채용,양성,마케 팅지원부분에대한분석추가(여 성기업인의어려움) *기대효과:여성기업의경제활동 활성화,여성경제활동참여확대
6	창조적 청년기업 1,000개 육성	*여성수혜율 낮음	*여성참여율 50% 유도 (~2015) : 44% → 48%	*성과목표: 교육에서의 여성 참여율
7	서울일자리플 러스센터 운영	*여성수혜율 낮음	*여성양질일자리발굴 -여성취업률: 43% 유지	*분석내용:경력단절여성에대한 분석 *성과목표:경력단절여성고려일 자리발굴 *기대효과:경력단절여성의시장 재진입지원
8	시니어 비즈니스센터 운영	*여성수혜율 낮음	*여성창업활성화 -여성창업인비율: 20% → 22%	*원인분석:경력단절여성현황 *성과목표:여성지원자수
9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여성수혜율 낮음	*인턴십통한 여성채용 률 제고 -채용률: 44% → 45%	*적절함
10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여성수혜율	*취업지원통한 여성채 용률 제고 -채용률: 50% 유지	*적절함
11	어르신 자활후견(시 니어클럽 운영) 지원	*여성수혜율 낮음	*남성 참여자 비율 확 대: 56% → 57%	*2012년도통계를2013으로 *성별격차원인분석:여성고령자 참여확대방안 *성과목표수정:여성참여자확대 *기대효과수정
12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여성수혜율 낮음 미작성		*대상자:노숙인통계자료 *수혜자:실제수혜자수 *원인분석:실제격차발생원인분석

연번	사업명	성인지예산서 작성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지표)	
				*성과목표: 여성노숙인일자리취 업비율확대 *기대효과: 여성노숙인자활능력 제고
13	토요 어린이 건강 클럽	*여성수혜율 낮음	*여학생 건강체증비율 증가 -신체활동참여여학생 수: 4500명→5000명	*대상자수혜자를2개사업으로구 분제시 *원인분석: 사회문화적으로여성 의신체활동선호도가낮음 *성과목표: 불명확함 *기대효과: 협동심 함양, 사회성 향상 등 포함
14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여성수혜율 낮음	*성별격차없는 보편적 후생복지 추진 -성별비율: 600명→ 614명	*사업수혜자기준명시 *예산: 항목별 다른 부분 적용 *원인분석: 채용된환경미화원의 성별에따른수혜비율차이, 여성 의근무환경부분분석 *성과목표: 모범환경 미화원 시 상기준 *기대효과: 환경미화원의정체감 향상또는근무만족도향상
15	직원 건강관리프로 그램운영	*여성수혜율 낮음	*직원복지 및 건강증진 강화: 5350명→5885명	*성과목표: 만족도 증가
16	소방공무원 피복비	*여성수혜율 낮음	*피복지급률: 남녀 모두 100%	*원인분석: 피복비의남녀별요구 사항이다른원인제시-신체구 조, 신체적 변화 등 *성과목표: 적절한근무복지급률, 근무복차별화등

□ 인프라성 및 가구대상 사업

○ 인프라성 사업의 범주에는 각종 시설이나 센터 운영 사업 등이 포함됨

- 여기에는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
영, 미혼모·부자기관 운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과 가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사업, 등은 가구대상 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 작성내용

- 성별 수혜분석의 작성 내용: 인프라성 사업의 경우, 성별 수혜 분석에 있어서 대상자가 주로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대상자 수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음. 다만, 수혜자에 있어서 실제 이용자나 참여자만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음. 한편,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는 사업의 경우 수혜자를 가구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인프라성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의 설립목적에 대한 실적치를 높이는 것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지원세대 수를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목표의 제시는 무조건 수혜율, 실적 등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목적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야 함. 그런데 해당 사업담당자는 사업 참여자, 수혜자 등의 인원이나 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컨설팅 내용

- 인프라성 사업의 경우 대부분 대상자 및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정하고 있으나, 기재한 경우 대상자의 작성근거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컨설팅 내용으로 하고 있음. 특히 대상자 수를 ‘불특정 다수’로 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을 구체화하지 못함으로써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의미가 없음. 따라서 인프라성 사업이라도 지침이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구를 대상자로 계산함. 수혜자는 그 가운데 실제 사업의 수혜를 받았거나 참여한 사람이나 가구를 기입하도록 함
- 성과목표 제시와 관련한 컨설팅의견으로는 주로 수혜자 수의 증가나 사업참여율 혹은 수혜자 수를 상향 조정할 것을 컨설팅하고 있음.

【 표 II -29 】 인프라성 사업

구분	작성내용	컨설팅 내용
성인지예산 수혜분석	- 인프라성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불특정 다수로 기재 - 가구대상사업의 경우 수혜자는 수혜대상가구로 기재	- 대상자 작성근거, 출처명시 - 가구대상사업의 경우 수혜자는 수혜대상가구가 대상자 수이고, 수혜자는 실제 수혜받은 가구를 수혜자수로 기재 - 예산 미기재인 경우 수혜자의 성별 비율에 따라 성별 예산배분 비율을 작성할 것을 컨설팅하고 있음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는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대부분임	- 기관이나 센터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을 상향 작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표 II -30 】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 및 컨설팅 내용

연 번	사업명	성인지예산 작성 내용		컨설팅 내용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지표)	
1	여성주간 기념행사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불특정다수로 함. 단, 예산은 성별 분리 표시함 *인프라성 사업임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행사 참여자 수: 6000명	*성과목표: 가족단위 참석자 수, 남성참석자 수
2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	*인프라성 사업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원수: 11234개 → 11500개	*성과목표: 여성취창업 인원 수
3	여성인력개발센 터 운영	*인프라성 사업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원수: 48000건 → 51000건	*성과목표 : 직업훈련 참여자 만족도 / 훈련 이수후 취(창)업자수
4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인프라성 사업임	*여성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실적: 400건→440건	*대상자수혜자출처 *원인분석:성착취적이고폭력적인현실개선으로사회문화구성변화 *성과목표:연성인권보장으로수정, 자립지원실적

연 번	사업명	성인지예산 작성 내용		컨설팅 내용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지표)	
				*기대효과:성매매착취구조해체
5	시 한부모가족지원 센터 운영	*가구 대상 사업	*건강한가정조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 원세대수: 22392세대 수 → 30000세대수	*성과목표:미혼모대안학교이 용자, 한부모복지시설이용 자,상담치료및지원서비스수 혜자등 *기대효과:여성들의자립을통 해성평등과모자가정의구성 원들의행복기여
6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가구 대상 사업	*여성권의 향상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인원: 150명 유지	*대상자수해자:출처 *원인분석:이주여성의자녀돌 봄에대한현실 *성과목표:자활지원센터이용 자수 *기대효과:피해여성의안전및심 리적안정,자활능력향상기여
7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가구 대상 사업	*건강한 가정조성 -저소득한부모가족지 원: 22392 세대수 → 30000세대수	*대상자수해자출처 *원인분석:성역할기대에따른 남성수혜율저조 *성과목표:응급상황시서비스 이용자수,자조모임운영지 원,상담이용자수등 *기대효과:만족도를높이고여 성가장들의지원으로성평등 에기여
8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인프라성 사업임	*여성권의 향상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교육 참석 인원 수: 4161명 → 4210명	*성과목표: 남성직원 참여율 향상
9	가족품앗이및공 동육아나눔터운 영지원	*가구 대상 사업	*건강한 가정조성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 아나눔터 이용자수: 15941명 → 17536명	*성과목표: 만족지수, 참여가 구수 증가
10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 운영	*인프라성 사업임	*여성권의향상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일시지원시설 이용자 수: 2000명 → 3600명	*대상자 *원인분석:제작성-십대가출 여성현황

연 번	사업명	성인지예산 작성 내용		컨설팅 내용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지표)	
11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인프라성 사업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서울만들기 -아동안전지도제작 학 교수: 178개 → 289개	*대상자,수혜자구분,재작성 *원인분석:여성및여아가주된 피해자임 *기대효과:보완
12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인프라성 사업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직장맘고충상담건수: 500건 → 550건	*원인분석:필요도추가 *기대효과:고충상담의효과보완
13	서울부모커뮤니 티	*가구 대상 사업	*지원모임수: 2013년도 212개, 2014년은 미정	*대상자수혜자표시 *분석내용:가족내의양육책임 역할의남성및지역사회와의 공유필요성
14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인프라성 사업임	*성평등인식제고 -교육인원: 2600명 유지	*수혜자작성필요 *원인분석:담당자성별비율- 교육참여자비율설명제시 *성과목표:참여율로재제시 *기대효과:수정-이해도향상
15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가구 대상 사업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아이돌봄서비스연계 건수: 332000건 → 340000건	*예산, 수혜자 확인
1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프라성 사업임	*보육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수: 80개 → 100개	*예산,수혜자 *원인분석:국공립시설확충필요
17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가구 대상 사업	*건강한가정조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용지수 비율: 75% 유지	*예산확인 *성과목표:여성이용자수비율 로수정,상향조정필요 *기대효과:서비스및지원확대 를통한다문화가족의양성평 등가족문화조성
18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가구 대상 사업	*건강한 가정조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 용지수비율: 75% 유지	*예산확인 *원인분석:다문화가족구성원 은여성이높음 *성과목표:상향조정필요 *기대효과:수정

연 번	사업명	성인지예산 작성 내용		컨설팅 내용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지표)	
19	U-서울 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	*인프라성 사업임	*안전서비스운영및확대 -저소득층 안전서비스 이용료 지원자수: 500 명 → 200명	*원인분석:서비스이용에대한 만족도분석필요 *성과목표:서비스이용만족도 *기대효과:운영의효과성제고
20	서울애플리케이션 운영	*인프라성 사업임	*ICT 산업활성화 지원으 로 일자리 창출 -교육생수와 취업자 수: 840명 유지	*2013년통계로제작성,불특정 다수이유설명 *원인분석:여성관심분야인교 육분야와달리,남성참여지높 은이유 *성과목표:여성취업자수나육 성인원
21	서울특별시기술 교육원 운영 지원	*인프라성 사업임	*여성대상자 및 수혜자 수 발굴 -훈련생수: 72명 → 160명	*2013년통계로제작성,출처기 록 *원인분석:구체적설명필요 *기대효과:수정-여성경제활 동참여확대,직업역량제고및 취업의록고취
22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인프라성 사업임	*취약계층근로자복지수 준제고 -노동복지센터 이용 인 원: 1000명 → 1200명	*대상자수혜자통계필요 *성과목표:여성상담인원,만 족도 *기대효과:여성취업활동에대 한사회적지지강화,여성경제 활동참여확대
23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인프라성 사업임		*대상자:서울시실업자수를성 별로구분 *수혜자:실제수혜자 *성과목표:여성수혜자비율
24	고령자 능력활용 강화	*인프라성 사업임	*교육참여율: 30% → 35%	적절함
25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인프라성 사업임		*대상자:장애인가구수 *원인분석:가족내장애인돌봄 역할은주로여성이하고있음 *성과목표:남성참여확대 *기대효과:장애인가족돌봄의 안정성확대및성평등성달성
26	알코올	*인프라성 사업임		*대상자:알코올사용장애인

연 번	사업명	성인지예산 작성 내용		컨설팅 내용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지표)	
	상담센터 운영	미작성		*수혜자:이용실적 *원인분석:여성의경제활동증가로상대적으로급증하는현황 *성과목표:여성이용률제고,서비스이용자만족도제고 *기대효과:여성건강증진과건강한사회활동기여
27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인프라성 사업임	*자살률 감소: 23/10만명 →22명/10만명	*대상자:서울시민 *원인분석:남성자살률이높은 것에대한분석 *성과목표:예방대책의수혜자수확대,각종프로그램만족도 *기대효과:자살률감소
28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가구 대상 사업	*취약계층임산부영유아영양관리 -수혜대상자수:3720명 유지 *영양불균형개선 -빈혈감소율:69%→63%	*대상자수혜자구분 *예산:임산부와영유아구분 *원인분석:성별격차발생하지 않음 *성과목표:빈혈감소율100%
29	버스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여성수혜율 낮음 미작성		*대상자:서울시민 *원인분석:위원선정조건 *기대효과:대중교통이용률향상으로교통혼잡감소등
30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택시 시민만족도: 76점 → 77점	*연구용역과제로대상자/수혜자의의미없음 *성과목표:남녀별만족도 *기대효과:여성의이동권보장
31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인프라성 사업임	*녹지조성: 11129㎡→5325㎡	*원인분석:성별요구도가다름으로설명 *성과목표:여성안전지수향상,운동기구사용률등

III

핵심관리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사례

1. 핵심관리과제 개요
2. 사업별 성별 이슈 및 개선목표의 설정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핵심관리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사례

1. 핵심관리과제 개요

1) 과제선정 절차 및 기준

□ 대상과제 선정기준

-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정책개선이 곧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13년도 서울시정의 방향이 일자리, 안전,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영역을 고려하였음
 - 또한 전년도 대상사업 가운데 정책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어떻게 환류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음

□ 선정절차

- '13년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 80개 중 성평등위원회가 총 16개 과제를 추천·제안하였으며, 이 가운데 다시 9개 과제를 최종 선정함
 - 핵심과제 선정이후 1개 과제가 다른 사업과 통·폐합됨
 -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가능한 사업 7개, 사업의 성별 이슈 도출 등 정책환경 분석을 구체화 한 사업 2개로 총 9개 사업에 대해 핵심과제로 운영하였음

표 Ⅲ-1 대상과제 현황

구분	사 업 명	선정사유
1	120다산콜센터 운영(계속사업)	대시민 서비스 제공이 주요사업내용이나 시민만족도 높으나, 종사자의 인권이나 감정노동으로 만족도 낮음. 특히 여성 집중직종으로 성별평가를 통한 사업 개선 필요성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속사업)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격적 시행으로 주요한 재원배분에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성별분석 필요성 있음
3	창조적 청년기업 10,000개 육성(계속사업)	지속사업으로 특히 청년창업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성별 수요 및 사업만족도조사를 통해 도출한 개선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현장조사 할 필요성
4	서울부모커뮤니티(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참여자 및 프로그램 특성분석을 통한 사업 개선방안 도출
5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공동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성별 수요를 반영한 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성 있음
6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일자리)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적 특성도출 및 개선과제 제안
7	청소년 진로정보 제공 사업(교육)	초·중·고의 진로지도는 노동시장의 직종 분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따라서 본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함
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복지)	장애인의 직업재활 사업은 복합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복지와 직업교육, 장애와 취업취약 계층으로 여성의 문제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여성장애인 직업재활의 개선과제 도출 필요성
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복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성별 수요분석 및 특성파악을 통해 개선과제 도출 필요성

2) 운영절차

□ 기존문헌 분석

- 사업별 성별 이슈도출, 개선방향 및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정책개선 목표 설정
- 핵심과제 컨설턴트가 해당 사업계획서, 국내외 사례연구 등 관련 문헌분석을 토대로 성별이슈 도출 및 개선방향 설정

□ 분석평가서 작성

- 분석평가서 서면컨설팅: 평가지표에 따라 작성된 분석평가서에 서면컨설팅
- 사전조사 실시: 핵심과제에 대한 사업 및 정책수요 조사, 사업참여자 혹은 담당자 심층 면접조사,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제시

표 III-2 사업별 담당컨설턴트, 현장조사 기관 및 위원 참가자 현황

연 번	사 업 명	컨설턴트 ¹⁾	방문처	시민 거버넌스 위원
1	120다산콜센터 운영	이남희 (사)여성연구소장	3개 위탁업체 (효성 ITX,KTCS,MPC)	이유경, 서문하, 이진주
2	창조적 청년기업 1,000개 육성	김애령 (사)돌봄연구소장	청년창업지원센터 (강남,용산)	박진옥, 서현정
3	서울부모커뮤니티	조연숙(재단) 박신연숙(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사무국장)	동작구: 꿈꾸는 도토리 영등포구: 꿈꾸는 아이	위화정, 유은숙
4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장미현 (명지대 등 건축학과 강사)	신대방2동 자율방범단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김영미, 장승진 한정희, 김성희
5	청소년진로정보 제공사업	장정순 (신홍대학교 교수)	신길동 우신초교 대도초교	김용희, 옥선희 김희정, 변경미
6	장애인직업재활시 설 운영	홍찬숙 박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굿윌스토어, 톨레랑스	김향숙, 이영희
7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오나경(재단) 허오영숙	국립중앙의료원	임공주, 송춘애, 강미연

2. 사업별 성별 이슈 및 개선목표의 설정

1) 120 다산콜 센터 운영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120다산콜센터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구청업무를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 정식오픈 : 2007. 9. 12 ※ 시범오픈 : '07. 1. 8
- 근무체제 : 365일 24시간 상담(주간/저녁/야간 3개조)
- 운영방식 : 3개 전문업체 민간위탁 운영
- 상담인력 : 524명(스텝 24명, 상담원 500명)
- 통합상담기관 : 16개 시·산하기관(17개 ARS), 25개 자치구(52개 대표전화)

□ 주요사업 내용

- 시·구청 업무 전반에 대한 시민 전화 문의에 따른 상담서비스 제공
- 외국어상담서비스, SNS 상담서비스·청각언어장애인 문자 및 수화상담서비스
- 교통불편신고접수, 시민불편살피미신고접수, 수도요금이사정산, 고지서발급

□ 운영체제 및 현황

- 현재 민간위탁 운영사업(효성 ITX, KTCS, MPC 등 3개 업체)으로 2012년 기준 운영 예산 19,647,000,000원 규모.
- 2007년 1월 18명의 상담인력을 두고 시범사업으로 시작. 그 해 총699,907호의 요청을 받고, 일평균 3,455호를 처리한 것에서 출발, 2012년 500여명의 상담인력이 총 9,383,569호의 요청을 받고, 일평균 36,859호를 처리하는 규모로 성장.

□ 상담원 구성현황

구분	계	근속기간별(년)				성별		연령별(세)				학력별			장애인	
		1년 이하	1~2	2~3	3년 이상	남	여	20~ 30	30~ 40	40~ 50	50 이상	고졸	대졸	대학 원졸	인원	장애상태
인원 (명)	524	108	130	123	163	62	462	161	282	75	6	190	330	4	8 (10)	지체2급/지체4급 지체5급 1명 지체6급 2명 지체7급 1명 청각2급/청각6급
비율 (%)	100	20.6	24.8	23.5	31.1	11.8	88.2	30.7	53.9	14.3	1.1	36.2	63.0	0.8	1.9	

* 중증장애인(1~2등급)은 2명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2배수로 인정 (장애인 의무고용율 2.5%임)

(2) 본 사업의 성별 이슈

□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여성근로자 비율 88.2%)으로 저임금과 감정노동을 수반

- ‘다산콜’ 상담원도 절대 인력이 여성으로 구성(88.2%, 2012년)
 - 콜센터는 대표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업종으로 전국 3만5천개의 콜센터 업체에서 종사하는 100만 명 상담원 중 약 89만 명이 여성임
 - 콜센터 직종의 여성비율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이고, 직접고용이 아닌 위탁이며, 대표적인 감정노동인 상담업무가 여성 직종으로 인식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 근속 기간이 짧고 이직률이 높은 것은 이런 요인의 결과이자 원인이 되고 있음
- 콜센터는 ‘프랑크푸르트 감정노동 척도’에 따라 고객감정에 집중하고, 감정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감정노동(한인임, 「감정노동과 건강문제」, 7쪽)
 - 상담 시 욕설, 폭언, 성희롱이 발생(82%, 한 달 평균 18.8회, 2012년 서울시). 우리 사회에 잔존한 남존여비 관념과 여성비하, 고객만족도에 의해 상담원이 평가받는 성과관리 제도로 인해 적절히 항의할 수 없는 조건 등이 결합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음
 - 「공무원 직무스트레스와 작업장 환경조사」(2012.11.14. 서울시) 결과 발표 시 다산콜센터의 사례가 국회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여론의 주목을 받음(*아래 신문기사 참조)

서울시 안내전화인 120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욕설, 폭언, 성희롱 등 때문에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산콜센터 직원 1041명 중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와 정신심리검사에서 응답자의 9.3%가 강박증, 우울, 적대감 등에서 위험군에 속했다.

전체 응답자의 82.3%는 “민원인에게서 욕설, 폭언을 당했다”고 답했고, 71%는 “인격 모욕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직원은 20%, “업무에 관해 신체적 폭력을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응답자도 6명이었다.

작업환경도 열악해, 콜센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260~2250ppm으로 미국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의 실내 환기상태 판단 기준(800ppm)과 국내 관련법 기준(1000ppm)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12/11/21)

<http://m.chosun.com/article.html?contid=2012112100100&sname=news>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산콜센터 직원 1041명 중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와 정신심리검사에서 응답자의 9.3%가 강박증·우울·적대감 등에서 위험군에 속했다. 응답자의 82.3%가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답했으며 “인격 모욕을 당했다”는 응답도 71%나 됐다. 이밖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직원은 20%가 있었으며 “업무에 관해 신체적 폭력을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고 응답한 직원도 6명 있었다 (경향신문 2012/11/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11133331&code=940702

- 민원으로부터의 감정노동도 문제지만, 상담원의 자율통제권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중의 업무부담
 - 다산콜 상담원이 겪는 성희롱과 폭언, 폭설과 그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압박은 감정노동으로서의 콜센터 업무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고, 상담원의 자율통제권을 극히 제한하는 방식의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우리 사회에 잔존한 여성 및 여성노동에 대한 낮은 평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콜센터 안팎에서 제기
 - 전국에서 우수콜센터로 손꼽히는 다산콜의 향후 개선 방향과 사례는 전국 콜센터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 다산콜은 2013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를 측정하는 콜센터 분야 조사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하여 우수콜센터로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3.4.18.일 보도자료)

□ 근무환경 및 업무특성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

- 전화를 받는 것은 근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으로 인식되지만, 계속 앉아서 상담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특정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난청 등 발생 우려
 - 작업 중 적절한 휴식이나 연차, 병가, 생리 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사용이 어렵고, “성대결절, 요통, 턱관절 질환, 유산 등 사례가 있었다”는 면접 증언.
 - 임신 및 수유 중인 상담원의 모성보호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필요.
 - 상담과정에서 감정노동을 통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통증으로 전이
 - 작업장의 구역, 환기, 휴게시설 등 여건도 기준 미달

□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과급제도

-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에 따른 성과급 제도로 인한 실제 노동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 근무 중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여건

【표 Ⅲ-3】 2007~2012년 동안 상담원 및 상담건수추이

연도	2007.7	2008.7	2009.7	2010.7	2011.7	2012.1	2012.7
상담원	100	165	230	521	533	518	500
상담건수	1,184	6,760	13,697	40,211	39,271	37,362	37,602
인당 콜수	11.84	40.96	59.55	77.18	73.68	72.13	75.20

* 평일 1일 기준, 특수 업무를 제외한 콜 업무 종사자 449명(팀장 포함)

* 출처: 심사기준(2012.6). * 콜센터 노동인권보장공동캠페인 정책토론회 자료집「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실태 및 직접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2012.11.21.)에서 재인용

○ 정책적 대응 현황(2013)

- 서울시에서는 다산콜 상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 준비 중
 - 「악성민원적극대응계획」(12.9) - 매뉴얼에 따라 선종료, ARS 경고멘트, 고

소고발조치 시행중

- 악성민원전담대응반 별도 구성운영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속기간별 장기근속수당 지급
-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해소 위한 정기적 심리상담실 및 다양한 후생복지프로그램
- 근무형태가 계속 앉아서 상담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업체별(층별) 휴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안마의자 등을 비치하여 휴식공간 제공
- 임산부 등은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3) 사업개선목표 및 방안

□ 전년도 개선과제 점검 및 향후 개선과제 도출

- 2012년 다산콜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상황 및 처우개선 요구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노동·여성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그 후 시와 위탁업체의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콜센터는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감정노동 분야로서, 성별영향평가의 관점에서 제시된 다산콜 운영의 개선방안 제시는 중요한 방향설정 목표 제공하는데 기여
 - 2013년 성별영향평가 핵심과제로 본 항목의 정책적 목표는 2012년 문제제기 후 추진된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성별영향평가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점검하고 차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추진된 제 방안이 상담원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인지 수요조사 및 상담원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추후 지속적 점검 필요
 - * 2013년 다산콜 예산안에서는 월1인당 7만원의 복지항목 비용 편, 상담원 체육대회, 힐링캠프, 정기간식비, 문화공연비, 심리상담비, 상비약 등의 비용으로 책정.

또한 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도록 과도한 성과 평가 지양, 상설 심리 상담실, 헬스 카페(사내 안마사) 상설 운영,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등 개선안 마련

□ 추가 개선과제 제안

○ 근로여건 및 작업환경 개선

- 성희롱, 언어폭력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방안을 담은 고객응대 지침 마련 및 매뉴얼 작성
- 근무 중 일정한 휴식 시간 및 점심시간 보장
- 환기, 의자 및 책상, 조도, 소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 모성보호 및 육아에 호의적인 작업환경 조성

* 한국여성민우회의 다산콜센터 상담원 인터뷰 자료

「점심의 발견#11 콜센터」 <http://womenlink1987.tistory.com/466>

Q. 그럼 한시간의 점심시간은 제대로 보장되는 편인가요?

점심시간 시작 전에 장콜이 들어오면 점심시간을 까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12시 점심인데 11시 55분 경에 진상콜이나 장콜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장콜 받다보면 12시 40분에 전화를 끊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점심시간은 1시까지 20분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팀장들은 1시까지 못쉬게 해요. 적어도 12시 50분까지는 자리에 착석하고 미리 콜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1시간을 거의 제대로 사용 못하긴 해요.

Q. 점심은 어디에서 드세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교대로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복잡하고 또 대기하는 시간도 꽤 있어요. 구내식당이 밥을 먹는 기능 외에는 뭔가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의 개념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Q.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점심시간 이후 오후시간에 콜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콜 많이 들어오는 시간을 취약시간 때라고 하는데 취약시간 때에는 가능한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해요. 등급에 영향 받지 않는 시간, 월급에 영향 받지 않는 시간이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에요.

○ 안정적 일자리의 보장 등 중장기적 계획 필요

- 또한 중요하게 거론되는 상담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 안정성 확대
-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 등은 근로조건 개선에서 핵심적인 과제지만, 성별 영향평가를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추진.
- 현재 제공된 인력현황 자료에서 상담원이 아닌 스태프의 성별구성은 빠졌음. 120다산콜센터 상담인력 현황에서 직무 및 직급별 성별구성비 제시 필요. 상담원의 대다수가 여성인력(%)임을 감안할 때 관리직인 스텝과 팀장에 여

성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이외에도 상담원 가운데 남성 인력을 일정 비율 확대,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

※ 국내외 사례

□ 해외동향

- 세계적으로도 콜센터는 대표적인 감정노동 분야이며 여성 집중 직종이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여성화 경향이 두드러진 편(세계 평균 70%, 우리나라 약 90%)
 - 우리나라는 여성인력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20, 30대의 비중이 큰 점이 해외 동향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다름.

“고객서비스의 비중이 높고 콜센터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수준이 높은 구미의 경우 콜센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특성이 남성 고용과 관리업무 종사자의 비중을 높이게 되고, 이로 인해 한국에 비해 여성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의 현황도 일반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 편중과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점도 같다. 다만,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아 30대가 주축을 이룬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임신, 출산, 육아, 가사에 대한 부담이 높은 여성 20, 30대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높은 이직율과도 관련성이 높으며, 이를 고려하는 공공사업장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콜센터 노동인권보장공동캠페인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2) 29-30쪽)

- 차별 없는 인권경영은 국제 사회의 대세

- 유엔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2000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권경영을 다루고 있음(이하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 실천을 위한 사업주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2011) 참조).

*인권경영의 4대 원칙이란

-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권리를 보장
- √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배제
- √ 기업은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
- √ 기업은 고용과 업무에서 차별을 폐지
-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 개선은 인권경영의 실현이자 노동력 손실로 인한

비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감정노동의 기를 살리는 경영 대안은

- √ 객관적이고 합리적, 보편적인 고객 응대표준 지침 작성
- √ 객관적인 서비스평가 기준 마련
- √ 패널티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감정노동지지
- √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 √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부여 등 제시

○ 직무스트레스는 노동자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필요

- 영국 보건안전청(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2004년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규정(Management Standards)」 발표
- 스트레스와 관련한 근로자 결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20억 파운드(20조)에 달함. 내용은 ‘중간 관리자에게 직장 내 스트레스 수준의 평가 기준을 제공하여 다른 업무부서의 관리자들과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직원들과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완된 모델’을 채택함.

○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적 증상을 유발.

- “여성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작업의 단순성, 작업통제와 권한의 저하, 동료와 상사로부터의 기술적, 심리적 지원의 부재로 남성보다 긴장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유발된 근육 긴장이 근골격계 증상으로 발전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증상에 대한 인지가 증가하거나 스트레스에 적응할 능력이 감소하여 증상이 지연되거나 강화”될 수 있음(『콜센터 여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상관성』(대한산업의학회지 제19권 제4호, 2007년 12월)
- EU(유럽연합)에서는 「콜센터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제반 조치를 실시 중(*아래 사례 참조)

*해외 개선사례 참고자료

(『여자 노동을 말하다, 감정노동 정책토론회』(서울여성가족재단 2013.5.14) 자료.)

http://inews.seoul.go.kr/hsn/program/article/articleDetail.jsp?boardID=181911&category1=NC1&category2=NC1_5#articleRecommend

■ 해외사례 서비스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 EU(유럽연합) 콜센터 노사공동선언 (Call Centres Charter Agreed)

- 개요: 유럽연합(EU)은 2004년 콜센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 노사가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콜센터 노사공동선언'을 발표
- 주요 내용
 - 조명 밝기와 환기, 공기정화, 난방시스템 등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근무환경수준을 유지하도록 명시
 - 시력장애 및 목소리·청각손상을 피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제안
 - 척추 장애, 반복긴장 장애(RSI) 등을 피하기 위해 바른 자세와 도구 사용 방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
 - 상담원들은 적어도 2시간 작업 후 스크린으로부터 10분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함
 - 의자와 책상, 전화와 컴퓨터 등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을 사용
 -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도구에 대한 EU 지침(Directive)을 준수하고 VDU(visual display units)의 사용이 미칠 위험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함

○ 프랑스의 콜센터

-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직원에 대한 폭언 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라는 안내멘트로 시작하는 경우 있음

○ 일본기업들

- 소니: 사내에 'Wellness Center'를 설치, 정신과 의사가 상근함. 필요한 때에는 외부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컨설팅, 교육 연수 등을 진행
- 캐논: 산업보건부서의 보건담당자(주로 간호사)가 상담과 스트레스관리교육을 연간 80시간씩 받고 일반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이 원하거나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의뢰

* 참고문헌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국가인권위, 2008)
- 『콜센터 노동인권보장공동캠페인 정책토론회 자료집』(2012)
-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및 노동실태 분석보고서』(희망연대노조, 2012)
- 『콜센터 여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상관성』(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9 권 제 4 호, 2007년 12월)
-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 실천을 위한 사업주 안내서』(국가인권위원회, 2011.11)
- 『콜센터 여성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련성』(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2년 제 49차 추계학술대회, 2012.11)
- 『여자 노동을 말하다-감정노동 정책토론회』 자료 (서울여성가족재단 2013.5)
- 블로그 「콜센터이야기」 <http://callcenter.tistory.com>

(4) 젠더 거버넌스 위원 현장활동 결과

□ 조사개요

참여 위원	서문하, 이유경, 이진주
방문기관	3개 위탁업체(효성 ITX, KTC, MPC)
질문내용	1)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의 노동여건 개선문제가 2012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새로 도입한 개선 방안 가운데 실효성이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각기 말씀해 주십시오 3) 향후 추가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조사내용 및 결과

조사 내용	조사 결과
○ 전년도 개선과제 점검내용 -서울시 악성민원 적극대응계획수립(2012.9) ⇒	○ 서울시 악성민원 적극대응계획 수립(2012.9) 악성민원(욕, 성추행적 발언 등)과 강성민원(상담원이 상담내용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했을 경우 항의, 고함 등)으로 나누어 매뉴얼대로 대응하고 있음. 악성민원의 경우 1. 1차대응 2. 욕설의 경우 상담이 불가함을 고지 3. 지속적인 경우 상담원이 먼저 종료 멘트 후 종료 악성고객의 판단은 팀장급 6명(주간4 야간2)으로 구성된 민원

-장기근속수당/후생복지프로그램/휴식공간제공	관리관 회의에서 결정 악성고객 등록 후 블랙리스트 관리 1. ARS로 상담내용이 녹취됨을 고지 2.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함 * 악성민원 후 상담원에 대한 불이익이나 별다른 조치는 없고 팀별(15명당 1팀장)로 상담원이 원하는 조치를 취함(휴식, 대화 등) ○ 직원의 후생복지제도 1) 장기근속수당 신설 여부 2011년~12년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2) 후생복지 프로그램 신설 여부 2012년 위탁업체별로 1주일에 2번 심리상담사 내왕 신청자에 한해 상담 실시 2013년 헬스키퍼(안마사) 신설운영 힐링프로그램 신설(템플스테이 등) 3) 휴식공간의 신규 제공 여부 체력단련실, 힐링룸 설치(사진 별도 첨부) 외국의 경우 상담원들의 욕구불만 표출장소(소리지르고 찢는 공간 등) 필요성 등도 검토, 후생복지 프로그램 점차적으로 확대계획 사용하는 건물 규모의 제한적인 여건으로 설치의 어려움이 있음 건물구조상 남자직원의 휴게실이나 화장실 부족 해결이 어려움
○ 향후 개선과제를 위한 수요 -직원의 처우개선 요구가 강조되는 이유에 대한심층 조사 및 분석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위한 구성원 수요	○ 상담원 채용시 4주 업무지식 관련교육과 2주 실습, 응대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필요(3회사 중 KTMC만 구비함- 첨부) ○ 새롭게 파악된 성별요구 저녁(18시~익일 새벽 1시), 야간(19시~익일 오전 8시) 타임의 상담원의 경우에 귀가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여성 상담원들이 저녁 근무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필요. ○ 서울시가 직원 평가 기준 매뉴얼을 정량화하여 업체 위탁 계약시 제시 : 현재 각 회사별로 품질관리 스텝(팀장급)이 성과관리 지표에 의해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상담원이 원하면 회사의 다른 센터로 보낸다고 하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구조임. 이를 모아 정량적인 평가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평가가시 적용토록 함. ○ 서울시와 회사의 계약체결시 '대시민 친절도' 향상을 이유로 상담자의 불필요한 인내와 과잉 친절을 강요하는 성과관리 결과가 점수화되고 있지는 아닌지 우려스럽고 따라서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작업 중 휴식시설, 연차, 병가, 생리 휴가, 출산 양육휴가 등 제도적인 면은 구비되어 있으나 상담원들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반대하는 매니저들의 태도를 보건데 약간의 강압적인 면이 보여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일방적인 명령체 계인지 익명 의견건의함의 설치도 필요함. 문제발생시 해결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과정 마련토록 함. ○ 저녁, 야간팀은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고 악성민원 전담하는 데스크에도 남자직원이 많이 배치됨 ○ 외국에 비해 20~30대 연령이 많아 이직율이 높은 곳으로 보여짐. 출산, 육아에서 벗어난 40대 이상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있음. ○ 개선되어야할 복리후생 개인사물함이나 1인1석의 공간이 필요함. 전화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원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연히 해결될 수도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임 직업상 여성들이 89%정도 차지하므로 상대적으로 남자직원들이 화장실 이용하기가 불편한 상황임
○ 기타	⇒ ○ 외국어전담팀에서 서비스되는 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이며 수당이 다름 ○ 장애인팀은 화상으로 진행되며 자격증이 있고 장애가 있는 직원 6명으로 구성. ○ 하루 상담건수는 80~100건, 건당 2분내외의 통화시간. 직원교육은 6주교육중 4주는 업무지식, 2주는 실습(CS, 응대방법, 교육)으로 업체별로 진행됨. 그동안 직원들의 정착율이 높지는 않았으나 현재 직원들의 이직률은 줄어드는 추세. ○ 서울시와는 위탁기관이 필요시 협조나 의견을 구하는 정도이며 서울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2년에 한번씩 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됨. ○ 매니저들은 고용불안정의 문제는 없다고 하였으나, 기사 등을 참고할 경우 상담원들은 명절 상여금을 3만원 정도 받는 등, 명목은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정규직과 같은 복지 수준을 보장받는지, 하루평균 80~100건의 상담하는 상담원들의 피로도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5) 개선과제 제안

□ 상담원 채용시 통합교육 매뉴얼 마련

- 현재 위탁업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담원 채용시 사용되는 통합교육매뉴얼이 필요 마련
 - 그 이유는 위탁업체에 따라서는 교육매뉴얼이 마련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교육매뉴얼이 필요

□ 직원평가제도 개선

- 일률적인 양적 수치에 따른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정성평가를 통해 직원의 업무능력과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고려
 - 다산콜센터 운영은 대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기관의 성과목표로 상담원들의 서비스 응대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 이에 따라 직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하지 못하고 억제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긴장감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직원평가가 단지 서비스 만족도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어 정성적 평가기준도 함께 만들어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근로환경 개선

- 휴게공간의 완전한 성별 분리 필요
 - 여성과 남성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나, 커튼분리로 실제 자유롭게 휴게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임. 따라서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콜센터는 여성직원이 85%이상이고 남성이 소수인 관계로 남성이 배려되고 있는 상황이나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의 구비에 있어서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야간상담원의 안전한 귀가대책 마련

- 상담원 근무가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야간 근무 후 여성 상담원의 안전한 귀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2) 청년 창업 1,000프로젝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식·기술기반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실업난 해소
- 창업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기반 조성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지속적인 청년·벤처기업 육성으로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서울 조성

□ 주요 사업 내용

- 청년창업센터 운영
 - 강남청년창업센터 : 692개 팀 지원(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프)
 - 강북청년창업센터 : 600개 팀 지원(舊 마포구청)
- 창업을 희망하는 20~30대 청년층 1,292개 팀 선발 및 지원
 - 창업공간 제공 : 1인당 10㎡ 내외 무상제공, 책장·의자·캐비닛 등
 - 창업활동비 지원 : 평가등급별 차등지급(월 100만원~50만원)
 - 창업교육·코칭·컨설팅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청년창업센터 졸업기업 지원
 - 입주연장 지원(청년창업플러스센터) : 200개 기업 입주연장 지원
 - 꿈꾸는 청년가게 운영('11.4.7) : 36개사 2,200여 제품 판매
 - 인터넷 쇼핑몰 운영('11.10.14) : 110개사 2,270여 제품 판매

표 Ⅲ-4 2012년 사업별 추진내용

사업명	추진내용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강남청년창업센터('12. 7), 강북청년창업센터('13. 1) 청년창업플러스센터('13. 7)
개방형 창업공간 조성	창의적 개념의 개방형 창업공간 조성(3개 센터)
졸업기업 입주연장 공간 확보	舊 질병관리본부 1동, 50개 기업 규모, 졸업 3년차 입주지원
성공나눔 기부금 운영	년 매출액 2억원을 달성한 졸업기업 중 매출액의 1% 기부 '12. 7월부터 운영(제4기)
창업 모니터링	평생멘토제 도입('12년 200명) 샘플랩 반응조사 등 실전형 마케팅 지원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확대 : 4개 분야 → 6개 분야
서울시 매체를 활용한 청년기업 홍보	구두 수선박스, 버스, 지하철 등 서울시 보유매체 활용 발전가능성이 높은 우수 100개 기업 집중 홍보('12. 4월~)
창업경진대회 개최	청중이 평가를 하는 '나가수'식 창업경진대회 개최 청년기업 투자유치 지원 및 판로개척 연계지원('12.11월)
청년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청년기업 및 제품홍보를 위해 청년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12. 7월)
제4기 청년창업가 선발	1,000명 선발('11) → 1,200명 선발('12) 기술창업자 선발비율 확대 : 25%('11년) → 30%('12년)

□ 예산 현황 (2013년) : 19,293백만원

(2) 사업의 성별이슈

□ 청년층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창업 네트워크 부족 등

○ 20대 후반의 여성비경제활동 전환자 증가

- 우리나라의 청년취업 현황을 보면 20대 초반 고졸남성과 20대 중반 이후 대졸남성은 실업자 이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그냥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당수 있음. 고졸여성은 동 비율이 20~21세 때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20대 중반 이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남성에 비해 취업 준비나

구직활동을 하는 고졸 및 전문대 재학 여성의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남. 즉 이들 여성은 취업 아니면 비경제활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주로 그 사유는 육아·가사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청년층 여성취업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학력 구분 없이 20대 초반 취업난이 심각하였고, 20대 후반 여성은 미취업상태가 장기화되면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를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민간위탁)의 신청대상 자격요건

- 만20~ 39세 서울시 주민등록자 중에서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창업의지 강한자
-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혹은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SOHO 창업희망자’로 정하고 있음

○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이 높은 창업시장 환경은 여성 창업활동 진입에 불리

- 특히 고학력 청년층 여성의 경우 높은 대학 진학률을 나타내면서, 학력에 있어서의 성차는 거의 희박해졌으나 여전히 벤처 혹은 기술창업 등 창업시장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고 있으며, 가부장적 의식으로 인한 문화적 차별 등으로 창업진입에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파악됨

※ 사례

「한국경제신문」(2009.10.21.일자)의 여성창업과 관련된 특집기사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배희숙)와 한국경제신문은 여성 창업 육성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기획한 ‘국가대표 여성 기업인’시리즈를 마치고 최근 서울 서초동 협회 사무실에서 남상 토론을 가졌다(중략). 참석자들은 여성창업이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참석자는 ‘창업 10년 후 기업 존속률이 30%도 안되는 현실에서 막 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에게 창업을 권유하는 것은 실패라는 무덤으로 몰아넣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최소한 학교에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정부나 유관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최소 3년간 경험을 쌓도록 해야만 실패가 적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딸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주변에선 왜 그 고생을 시키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일 정도로 여성창업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이다. 여대생들이 졸업 후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창업을 위한 경험을 쌓게 하고 지원제도 등 사전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통적으로 참석자들은 여성 CEO들은 인적 네트워크 부족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한다. 정부인증제도인 벤처 확인과 이노비즈 인증을 따내는 경우가 전체 여성기업의 4%도 안 되는 만큼 정부가 여성창업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창업진입여건은 여성에게 불리

- 창업 친화성, 즉 네트워크 등 창업 진입여건에서 여성은 불리함. 특히 벤처 창업, 고품질의 기술창업의 경우에는 더욱 불리한 현실임
- 이에 대한 대안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가?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의 경우 여성, 장애인 등이 청년창업센터 모집대상에 응모할 경우 3점의 가점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가점이 여성의 창업센터 진입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일단 창업센터 진입 후 창업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만약 실시한다면 성별로 구분하여 의견을 분석하고 있는지를 확인 필요

□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제약

○ 청년층 창업 여성에 대한 창업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 정책결정과정에 양성평등 참여가 필수임

- 현재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청년창업센터(2개소)와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외에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의 경우 정책자문 및 심의·의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 등에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평분석평가서에 이러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창업 모니터링’ 사업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제한된 창업직종을 선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창업진로개발(예비창업자)에서부터 창업 지원까지 보다 세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대졸여성의 경우 졸업 직전과 직후에 창업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훈련 및 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창업 모니터링 사업은 관련 위원회 등에 여성전문가를 포함시켜 여대생 창업진로교육 등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완 필요

□ 해외 사례

※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가 창업기업 지원보다는 예비창업자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정책개발시 서울시 중소기업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창업지원정책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사업체의 94%가 영세기업이어서 제도금융권과의 접근이 제한되고 자금 조달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체로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 지식 없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낮은 수준⁴⁾이기 때문에 창업지원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음

○ 캐나다: 여성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환경조성에 우선순위

- 여성의 창업과 경쟁지원은 정부보다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캐나다 여성재단의 경제개발기금(Economic Development Fund of the Canadian Women's Foundation)은 여성이 비전통 분야에서 고임금직종으로 이동하려는 의사를 가질 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인 창업훈련프로그램을 지원

○ 이탈리아: 여성창업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 제정(법률216호)

- 300억 리라의 여성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상공부 내에 여성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독일은 여성창업도우미인 '여편네 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여성경제협동조합 아이디어는 1980년대 여성운동에서 태동. 1985년 베를린 자유대학 사회학과의 한 여학생은 논문을 쓰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현실은 창업에 나서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고, 여성 자영업자들의 사업 환경이 남성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여성학술회의에 참가해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논의로 출발,
- 이에 따라 유치원 등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도 고려하였고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 1989년 마침내 여편네 조합을 협동조합으로

4) 정희선, "영세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여성기업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활용을 중심으로", 2006)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건물 구입, 자금 대출 등을 통해 현재의 조합을 갖게 된 것

- 현재 조합원 수는 약 1,700명 정도이며 창업자들 이외에 여성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싶은 이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수익 배당이나 조합비 환불은 받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지분에 관계없이 한 표를 행사함. 독일에는 여편네 조합 이외에도 비슷한 구실을 하는 여성 자영업자 지원 단체가 12곳이나 있어 이들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력하기도 하지만 협동조합 방식은 여편네 조합이 유일(한겨레신문, “여편네들 힘모으니.. 접시 깨지긴커녕 사장님들로 우뚝”, 2013.8.22)

○ 일본의 경우는 여성기업의 자금지원제도는 마루케이제도와 설비자금 제원제도로 구분됨

- 마루케이제도에 의하면 자금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의 경영제도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상공회의 심사를 거쳐 국민생활금융공고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음. 대출기간은 설비자금 6년 이내, 운전자금 4년 이내로 담보나 보증인 필요없음. 또한 여성기업이 창업 및 경영기반의 강화에 필요한 설비도입 촉진을 목적으로 설비자금 대출사업 및 설비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해외의 창업지원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먼저, 창업대상자의 수요와 필요에 대한 특성분석과 이를 기초로 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특히 독일의 ‘여편네’ 협동조합은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치를 같이하는 조력자(혹은 후원자)의 지원과 협력이 성공적 협동조합을 가능케 한 것으로 판단됨.

(3) 사업개선목표 및 방안

□ 성별 창업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원 과제 마련

- 여성은 외식업, 패션업, 사회적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희망의지
- 성별 선호 업종의 차이는 뚜렷함. 여성은 외식업, 패션업, 사회적 기업에 대

해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희망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성은 유통서비스, 벤처창업, 경영·컨설팅 업종에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희망 의지를 보임.

- 창업 형태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은 규격화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남성은 기업형 창업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임. 창업 시 느끼는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여성은 창업아이템 선정, 창업정보, 점포 개발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정보 탐색이나 대외적 활동이 취약함을 알 수 있음. 반면, 남성은 창업자금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10년도 여성기업 규모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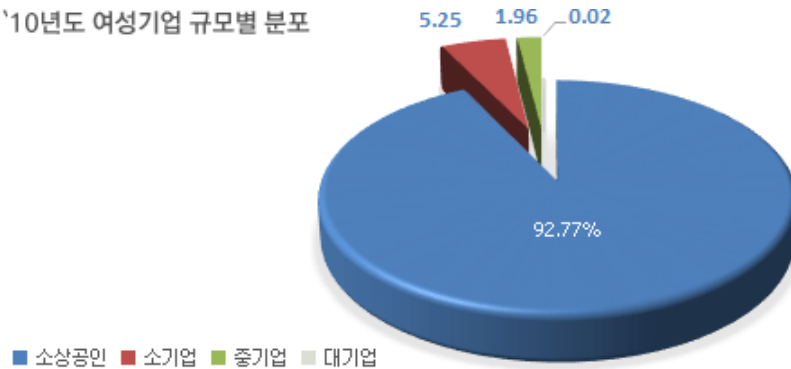


그림 Ⅲ-2 전국사업체조사 (2011 통계청 기준으로 재편·가공)

□ 여성 창업지원 정책지원 방안

- 체계적인 청년층 여성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부설로 ‘여성창업지원센터’ 혹은 여성창업교육아카데미 신설)
- 미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여성기업인센터(Women's Business Centers)는 1929년에 설립되어 여성창업의 시작에서 창업과정, 재정지원, 시장개척, 마케팅과 같은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곳은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1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운영
- 또한 SBA 온라인상으로는 중소기업창업에 관심을 갖는 여성경영인들을 위

한 정보(자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Online Women's Business Centers를 운영. 여기서 지원하는 내용은 창업계획 및 아이템, 입지, 자금, 법률 및 조세상담, 소기업 경영전략 및 자금관리, 마케팅 전략, 재정관리 및 분석, 소기업의 확대 및 성장전략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있음(서근하·황미애, “여성창업과 소액대출 개선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007)

구 분	교 육 내 용
적성상담	○ 여성창업 적성검사 전문상담사 배치 - 각 센터별로 1명을 지정하여 운영 - 다양한 여성의 창업성향을 MBTI 성격유형으로 구분 - 아이템선정의 적절성 부여(업종 및 아이템) - 창업과 취업의 진로 구분 명확화
공동교육(창업) 업종별 심화교육	○ 창업아이템의 기본지식 습득과 체험 - 창업의 기본원리 학습 - 인허가, 아이템 선정, 세무회계, 상권입지분석 ○ 경력단절 및 최초 창업 여성의 배려 - 자신감 교육 - 경력단절 여성위한 창업교실 운영
현장실습	○ 이론교육을 창업현장에서 실습하는 기회부여 -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 위주의 실습교육 ○ 여성배려를 위한 실습프로그램 도입 - 여성특화 기술교육 도입 - 창업실전교육과 여성교육의 시너지효과 부여
WORK SHOP (사업계획서 작성)	○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종합화 - 기존의 교육을 토대로 여성의 창업아이템을 사업계획서로 작성 - 남성에 비하여 다소 개념이 부족한 여성배려 - 사업계획서 작성시 작성도우미 배정 ○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교육의 커리큘럼화 - 여성창업시 애로사항 세분화 - 여성 창업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제시 - 여성 성공사례 업체 리스트 작성하여 제공
자금관리/우대보증	○ 정부정책자금 지원 - 정부정책자금 종류와 지원시기 1:1지도 - 금융기관에 대한 여성의 심리적 진입장벽 해소 - 금융기관의 여성대출자 성공과 실패사례집 제공 ○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자금 안내지원

구 분	교 육 내 용
	- 희망키움뱅크, 희망365, 마이크로 크레딧 등 ○여성 창업자에 대한 평가 시 가점부여 - 자금대출 평가시에 여성창업자 우대점수 부여
사후관리 (동아리 결성)	○ 사후관리 실시 - 독립 후 취소 3년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여성창업업자에 대한 1:1 멘토링 서비스 개발 - 종업원등 여성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제시 ○ 여성 창업자의 네트워킹 구축 및 운영 - 기존 여성창업자와 예비 여성창업자간의 교류 - 1:1 멘토링 제도 도입 ○ 성공 여성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여성창업자들의 이업종 교류회 구성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부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의 성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130쪽

- 출산·육아 등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창업기회 확대방안 마련
- 청년창업플러스 센터를 통한 여성창업기업 능력향상교육(지식창업으로의 전환교육 등) 실시
- 휴폐업 (경험) 여성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마련
- 서울시 창업정책 의사결정과정의 여성참여 비율 확대
- 창업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실무자의 성 인지성 강화
- 서울시 공공구매 5%에 창업센터 수수료 여성기업 배정방안 마련
 -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공공구매 예산의 5%는 반드시 여성 기업 상품으로 충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공영방송 등 독점 사업권을 인정받은 기업의 경우 8%를 의무배정하게 돼 있다.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선적으로 서울시 공공구매 예산의 3%~5%를 창업센터를 수수료 여성기업에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여성창업자에 대한 홍보 강화: 매년 서울소재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생산성, 성과 등의 각종 지표 등을 발표

(4) 젠더거버넌스 위원 현장활동 결과

□ 조사개요

참여 위원	박진옥, 서현정
방문기관	청년창업지원센터(강남센터, 용산센터)
질문내용	○ 전년도 점검사항 - 홍보확대 실적, 가점을 통한 창업지원 효과 - 지식창업분야 확대 증감실적 ○ 금년도 개선과제를 위한 실적 - 창업지원서비스 및 내용(홍보활동, 여성창업자 사무실 제공 등) - 양육지원 서비스 현황 및 지원수요 ○ 창업서비스 및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 조사내용 및 결과

조사 내용	조사 결과
○ 전년도 점검사항 - 홍보 확대 실적, 가점을 통한 창업지원 실적, 기술창업 및 지식창업분야 확대 증감 실적	○ 강남센터 -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스토리가 있는 기획기사와 1년에 2회 발간되는 성공사례집(신문기자가 직접 사례발굴) 인터넷 신문까지 확장 - 홍보처: 신용보증기금 창업스쿨 등에 참가하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대학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6개월정도의 준비과 교육기간을 거친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 전년도 대비 새로 마련된 공간은 없으며, 여행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및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있었음 ○ 용산센터 - 센터 정책지원서비스 외 창업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요가 활동 공간) - 여성행복실 공사 중: 현재 출산은 2-3%, 휴식, 샤워실로 사용되는 공간이지만 공사 중이라 내부는 볼 수 없었음. 하지만 좁은 입구는 답답한 느낌과 간판안내를 비롯한 서비스로부터 사용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해 보임
○ 금년도 개선과제 - 각 센터 사업담당자: 창업지원서비스 및 내용 조사	○ 강남센터 - 7월부터 차등 지급이 아닌 일괄 지급되는 50만원 지원금 - 여성의 경우 소규모, 안정지향적 창업이 많다. 또한 창업분야의 여성 진입은 여전히 어렵다 ○ 용산센터 - 성공사례자의 성별 결과 수치 분석 - 공간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분야의 성별수요

(홍보활동, 여성창업자 사무실 제공 등), 양육지원 서비스 현황 및 수요	- 홍보면의 개선 제안 ■ 언론사에서 발간되는 성공사례집으로 홍보를 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활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스토리와 케이스를 발굴하여 언론을 통한 기획기사 홍보 및 1년 2회 성공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언론사의 연재기획 기사를 통해 홍보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창업자들에게 홍보를 통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 지원자 모집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쇄매체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창업지원센터와 연계된 창업준비스쿨 등 창업예비자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자 모집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는 진행하지 않음.
○ 창업수혜자: 창업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조사	⇒ ○ 강남센터 - 만족도 조사 결과 ■ 주요 만족요소: 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간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자금>코칭>협업지원>창업활동 지원 순 ■ 불만족요소: 창업교육에 대한 수준별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을 전공했거나, 창업경험이 있는 참가자의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족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을 7월부터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창업자에게 1,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사업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공동사진 촬영실: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각자 개인작업실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촬영실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을 하였는데, 예약 스케줄표에는 한 날짜에 많은 지원자가 있어 한 개의 촬영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의문. 스케줄을 센터에서 조정해 줄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약 스케줄을 공개된 예약스케줄로 만들어 한 날짜에 몰려 신청하지 않게 하는 것을 제안 함 - 공동조리실: 조리 공간은 깨끗하지만 좁아서 조리의 특성상 여러 명이 같이 요리하기엔 위험요소가 있어 보임 - 센터에서 지급하는 차등 지원금이 7월부터 일괄 5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정책이 변화되었는데 예비창업자의 경우 50만원을 받으면서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액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가 많은 것 같음 ○ 용산센터 - 공간활용 개선 제안 ■ 획일된 공간제공이 아닌 업무분야에 따른 공간 제공의 필요성 요구 ■ 공동작업장 사용시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창업자의 불안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요구 ■ 공동작업장의 경우 산만하고 지저분하여 공간의 정리도 개선요구 ■ 스튜디오실은 2개로 사업자들의 수와 비교해 적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스튜디오는 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장점인 공간을 분리하여 같은 시간에 필요로 하는 사업자의 사용 활용도를 높이는 개선필요

○ 기타	⇒ ○ 강남센터 - 창업센터 졸업하는 비율이 70%정도 수준이고,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자립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며, 여기에서 성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와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용산센터 - 창업지원은 최대 3년으로 지원되는데 창업의 경우 5년이 되었을 때 창업자들이 노력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창업지원을 할 때 청년창업자들이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는 성장지속시스템화를 제안합니다.
------	---

(5) 개선과제 제안

□ 창업담당자의 성인지 의식 교육을 통한 창업지원의 성별 특성 파악

- 창업자를 위한 교육, 코칭, 멘토링, 후속관리까지 유기적인 연계프로그램 마련되어 있으나, 창업담당자의 성인지의식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반영에 한계
- 창업분야의 성별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가점제’ 외에 다른 대응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여성창업자의 창업서비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여성창업자의 경우 만족도는 공간>자금>마케팅 혹은 협업>코칭(용산), 공간>자금>코칭>협업지원(강남) 순으로 네트워크나 제품홍보 등의 미숙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요소발굴이 필요함.
- 자립도 제고를 위한 여성들의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필요함. 특히 남성 중심의 기업환경에서 여성창업자에게 생소한 창업과정에 대한 컨설팅이나 코칭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진출하기 용이한 일자리가 ‘창업’이라 할 수 있으나 경력단절 기간만큼 적응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창업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매뉴얼 개발과 성공적 창업을 위한 교육과 지원시스템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성별에 기초한 체계적인 실적관리 필요

- 현재 창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성별분리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창업센터’ 실적에 있어서 졸업 후 자립도 및 지속률에 대한 성별통계 마련되어야 할 필요 있음

□ 멘토링 및 체계적인 코칭제도의 개발 및 운영

- 창업자간 협업지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효과 모니터 등 창업코디네이터 배치 필요

3) 부모커뮤니티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부모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보다 나은 지역의 양육환경 조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조례 제9조
- 지원대상: 부모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단체)
- 대상사업: 지역내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들의 모임이나 활동
 - 부모역량교육, 대안교육, 아이들의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 전년도 추진실적

- 집담회 개최를 통한 현황 및 주민 정책수요 파악
 - 집담회 13개구 24회 진행, 160여개 모임(단체) 참여

- 부모커뮤니티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 부모커뮤니티 사업공모, 컨설팅 및 사업평가 추진
- 부모커뮤니티 온라인 플랫폼(<http://seoulparents.kr>)구축
 - 사업홍보 및 지원채널 마련, 커뮤니티 검색, 카페 등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예산 현황 (2013년) : 1,000백만원

(2) 사업의 성별 이슈

□ 부모커뮤니티 사업이지만 참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점

- 어머니 참여자94%, 아버지 참여자37.2%
 - 자발적 커뮤니티가 어머니가 주요 양육주체가 되어 돌봄역할의 지역사회 확장이라는 문제제기
-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가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존재, 모성을 가진 여성이라는 전제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근본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여성의 주류화 등의 관점에서 한계를 내포

□ 자녀 양육문제를 지역사회 관계망 활용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 가족 내에서 집중되는 육아와 교육문제로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 존재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여성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사업속에서 성인지 관점 반영의 한계

- 양육과 돌봄에 있어서 특정성에 편중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여성스스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 사적영역의 공적 영역으로의 확장이다 보니 참여자들의 젠더의식이나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나 활동으로 운영, 성인지관점이나 젠더감수성

은 고려되지 않음

- 부모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개인과 가족관계에서 성별 분리에 따른 여성역할에 대해 갈등
 - 지역사회와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관행개선 필요
- 지역사회의 성평등 의식의 한계
 - 여전히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영향력 발휘하고 여성들은 소극적이고 보조적 역할 수행의 한계

□ 해외 사례

※ 국내 사례

① 마포구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집〉 30대 초중반의 젊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 ‘자신의 아이들을 스스로 양육’한다는 목표아래 제1호 육아협동조합을 설립(1994)하고 이듬해 제2호 육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의 육아를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해결하려던 방식으로부터 부모들의 ‘보육 협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에 기초하여 이를 조합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이 민주적 조합원으로서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체험토록 한 것

〈방과 후 교실: 1998~1999〉 공동육아 어린이집 내부에서 운영되던 방과후 교실을 ‘지역 방과후’로 확대 구상함. 현실적 대안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별도의 방과후 어린이집 협동조합을 만들게 됨

〈방과 후 문화센터 교실 ‘꿈터’: 2001〉 방과후 교실을 다니던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면서 보육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과후 문화센터 ‘꿈터’를 설립. 특히 큰 남자 아이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를 택견과 축구로 해결하면서 직접적인 꿈터 설립의 계기가 됨

〈대안학교 ‘성미산 학교’ 설립(2004)〉 우리어린이집의 조합원 다섯 가구가 아이들의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다른 지역의 대안초등학교를 찾아 대안학교를 만들

(3) 사업의 개선목표와 개선방안

□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 인식 제고

- 부모커뮤니티 사업 내용에서 여성주의, 젠더감수성, 성평등 교육내용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음. 그 이유는 모임 유형이 자생모임 비중이 크고,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이 낮고, 성평등 이슈들은 여성단체들의 몫이라는 인식
- 현재 부모커뮤니티 사업은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들의 모임이나 활동으

로 구성

- 활동가양성(엄마강사 등 지역마을활동가, 재능기부 등)
- 부모교육활동(부모역할배우기, 순수자조모임, 부모역량강화교육 등)
- 자녀교육활동(방과후프로그램, 상담 및 자녀역량강화교육 등)
- 문화활동(독서, 예술, 체육, 역사탐방 등)
- 지역봉사활동(환경, 봉사, 취약계층 연계 활동 등)

○ 부모교육활동(부모의 젠더감수성 향상, 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 자녀교육활동(성평등 교육) 등을 포함하는 방안 모색

□ 지역사회 의 성평등 확산

○ 부모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자녀양육, 돌봄 이슈가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생활일로서 인식 확산,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 확산

- 지역사회는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공간임. 여성운동의 노력에 의해 국가적인 법제도는 많이 바뀌었지만, 정작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는 바뀌는 속도가 더딤.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족모델과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지역사회 내부에는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영향력 발휘함.

○ 또한 부모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동의 계기 마련

- 여성들이 지역사회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해도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보조적이고 소극적 역할, 각종행사에서 전통적 여성역할 수행,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배제
- 부모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 변화와 자치가 활발해 지고, 개인의 역량은 확대

(4) 젠더거버넌스 위원 현장활동 결과

□ 조사개요

참여 위원	위화정, 유은숙
방문기관	동작구: 꿈꾸는 도토리 영등포구: 꿈꾸는 아이
질문내용	○ 공모사업 내용분석 - 다양한 참여주체 및 프로그램 분석 - 사업참여자 만족도 및 수요 여부 등

□ 조사내용 및 결과

조사 내용	조사 결과
○ 공모사업 내용 분석 - 다양한 참여주체 및 프로그램 내용 분석	○ 본 사업 참여자들의 경우 3~4년 간의 커뮤니티활동을 통하여 역할 분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만남을 통하여 본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 해소되어졌고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풀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2013년 부모커뮤니티 사업도 질 높은 측면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
○ 사업참여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 - 사업 참여 자신감, 개인역량 강화 여부, 지역사회 활동참여의 보람, 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수요 등	○ 새로이 파악된 성별수요 - 직장에 다니는 남성(배우자, 아빠, 예비아빠)의 참여는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어 남성의 참여는 극히 소수임(6쌍 참여) - 현 활동에 참여(엄마, 아내)자들의 경우 직장에 다니는 아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참여욕구를 높일수 있으며 참여시간도 가능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높은 바램 있음. - 사업공고 시 직장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영역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 기타	- 지리적인 마을공동체라는 의미로 같은 지역에서의 돌봄사업으로는 참여자의 비율이 높지 않겠지만 정서적인 마을공동체로의 확대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지역을 넘어 같은 문제와 욕구를 공동의 목표로 하여 사업참여 가능하다면 좀 더 다양한 사업도 나올 수 있음이 예상됨 (서울 전 지역, 같은 구, 조부모의 양육으로 조부모가 사는 지역에서 부모의 참여할 수 있으며 손, 자녀가 사는 지역에서의 조부모 참여도 기대할 수 있음)

(5) 개선과제 제안

□ 컨설턴트 선정시 성인지 의식을 갖는 활동가 확보 필요성

○ 사업개선안으로 첫째, 부모커뮤니티 컨설턴트 선정시, 젠더관점을 가진 인적 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 필요성이 있음.

- 한 두 명의 여성세력화 인력이 있다면 공동체 활동 속에서 이들의 관점을 확산해 나가는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
- 현재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인력으로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지원역량을 살펴보면 공동체 사업 관련 지식외에 성인지 역량을 갖추고 사업참여자가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이에 따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성인지 의식, 성평등 지향성에 대한 가치를 필요로 함

□ 부모커뮤니티 사업 선정시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의 다양화

○ 이와 관련하여 부모커뮤니티 사업 선정 시에 여성의제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젠더적 관점을 가진 사업을 전략적으로 채택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성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모커뮤니티 사업이 자칫 전통적인 생각으로 돌봄의 역할이 여성고유의 영역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음.

- 공동체를 통한 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 커뮤니티 사업이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배타적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인식전환을 위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함

4)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재해·범죄 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 1 ~ 2013.12
-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조성
 - 재난, 재해, 범죄, 생활안전 등 각 분야의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기획·추진하는 주민 제안사업임
 - 주민제안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며, 3인 이상의 주민이나 NGO,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생활안전거버넌스 등의 지역단체가 사업주체가 됨
- 지역주민과 함께 재난안전, 생활안전, 범죄예방 등 「서울형 안전마을」 정립
 - 재난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 종합적인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서별 안전마을 관련사업을 통합·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안전 위해요인이 많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자치구, 지역 주민(단체) 콘소시엄 공모방식으로 추진함.
- 지원조직 및 안전마을 TF 구성·운영
 -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의 지원조직과 안전마을 TF를 구성·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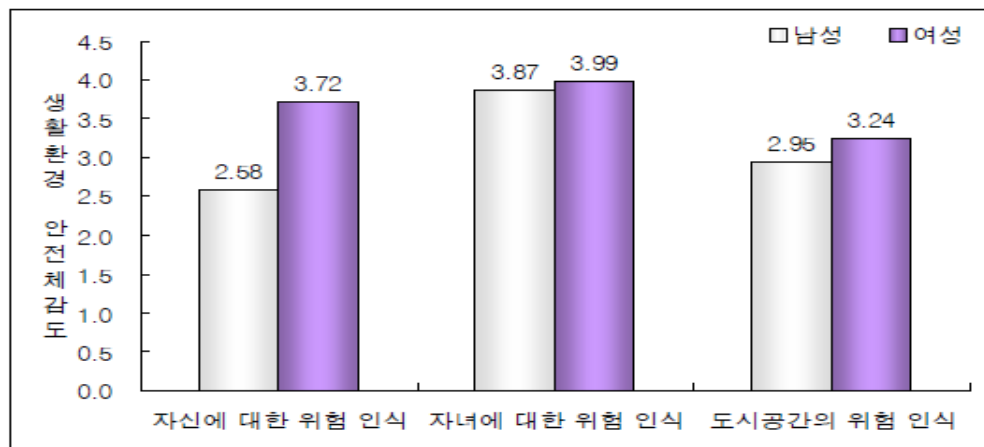
(2) 본 사업의 성별이슈

□ 지역 내 일상생활의 주체로서의 여성

- 여성들은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지역 내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경향이 높음.
- 여성들이 지역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일상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됨.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여성들의 참여는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일임.

□ 위험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

- 안전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체감하는 점이 다름. 특히 생활환경에서 위험에 대한 성별간 인식의 차이는 ‘자신에 대한 위험의 인식’이나 ‘도시공간의 위험 인식’에서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출처: 장미혜 “여성의 안전과 생활공간”. 홍승아, 김혜영, 장미혜.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지역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p.42

■ 그림 Ⅲ-3 ■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에 대한 성별간 인식의 차이

- 남성과 여성 모두 안전하게 느끼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난·재해·범죄 등의 예방과 해결 뿐 아니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에서의 안전성 또한 간과되지 않도록 해야 함. 따라서 생활안전과 관련된 성별 이슈들을 살

퍼 본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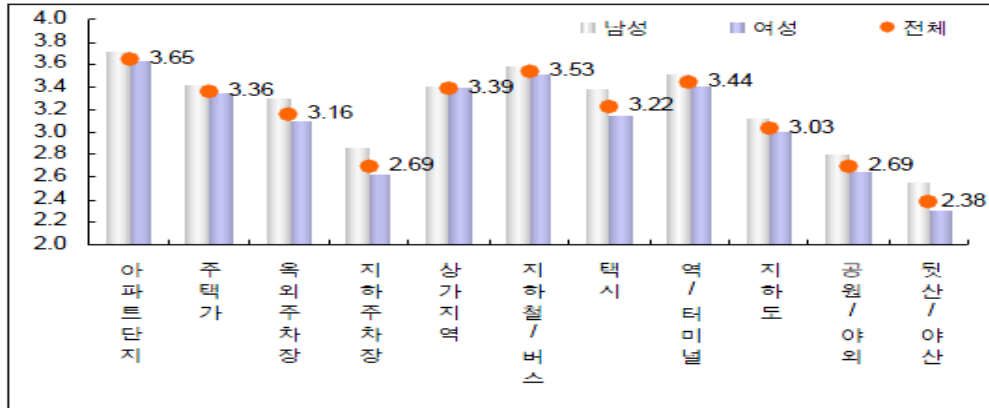
① 자신에 대한 위협의 인식

- 자신에 대한 위협인식('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 '지하주차장이나 으스스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평소 밤늦게 외출할 때 혼자 다니기 무섭다',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가로등의 조명이 어두워서 심야에 다니기가 꺼려 진다' 등의 항목)은 남녀 간의 인식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여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생활 속에서의 위협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⁵⁾

② 생활공간에 대한 안전체감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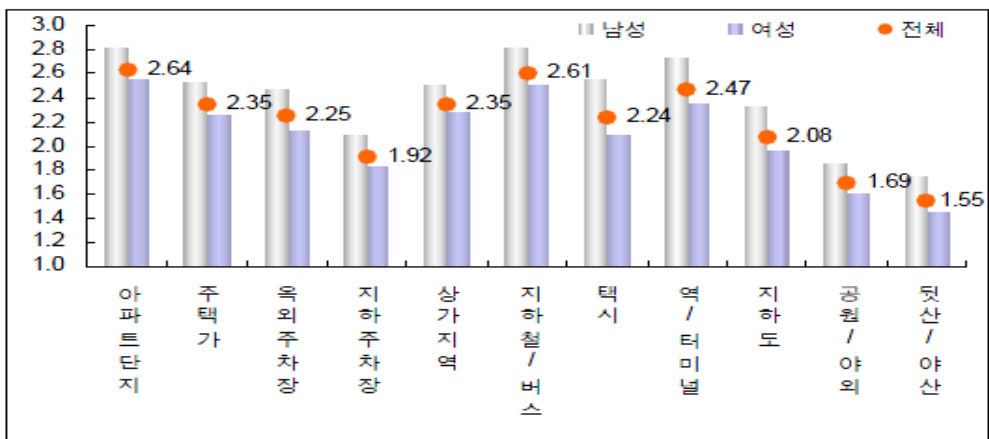
- 생활공간에서의 여성의 안전에 대한 조사들은 여성의 안전체감도가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들이 생활 전반에서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줌. 주간과 야간 모두 여성이 더 낮게 나타나며, 야간이 주간보다 더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느끼고 있음.
- 택시, 지하보도나 지하차도 등의 지하도 그리고 옥외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등은 안전체감도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로, 이러한 생활공간에서 안전도가 여성에게 더욱 민감하게 나타남.

5) 장미혜 “여성의 안전과 생활공간”. 홍승아, 김혜영, 장미혜.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지역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p.42-43



*출처: 장미혜 “여성의 안전과 생활공간”. 홍승아, 김혜영, 장미혜.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지역환경 조성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p.45

■ 그림 Ⅲ-4 ■ 대낮시간대 생활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비교



*출처: 장미혜 “여성의 안전과 생활공간”. 홍승아, 김혜영, 장미혜.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지역환경 조성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p.45

■ 그림 Ⅲ-5 ■ 심야시간대 생활공간별 안전체감도의 성별비교

- 여성들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도시 및 건축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불안감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도 여성들은 ‘무서움’, ‘불안’, ‘위험’, ‘꺼려짐’ 등 직접적 표현을 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위험하다고 느낀 적 없거나, (나는 괜찮지만, 여자들은) 위험할 수 있다거나, 조금 위험

할 수 있다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음.⁶⁾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안전에 대해 주관적인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

③ 야간활동 두려움의 원인 차이

- 여성들은 주간보다 야간에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 그 이유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두려운 곳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데 비하여, 여성들은 ‘인적이 드물어서’, ‘두려운 곳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이 중 두려운 곳이 있다는 응답의 성별 격차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큼. ‘우범지역이어서’ 두렵다는 응답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적게 나타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범지역 외에 일상생활 공간 내에 체감안전도가 낮은 장소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함.

표 Ⅲ-5 | 성별 야간보행 두려움 이유 2010년

(단위: %)

성별	15세 이상 인구	두려운 곳이 있다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 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	두려운 곳이 없다
전체	100.0	40.6	28.8	7.6	62.4	1.2	59.4
여자	100.0	51.7	26.2	6.8	65.7	1.3	48.3
남자	100.0	29.1	33.6	9.0	56.3	1.1	70.9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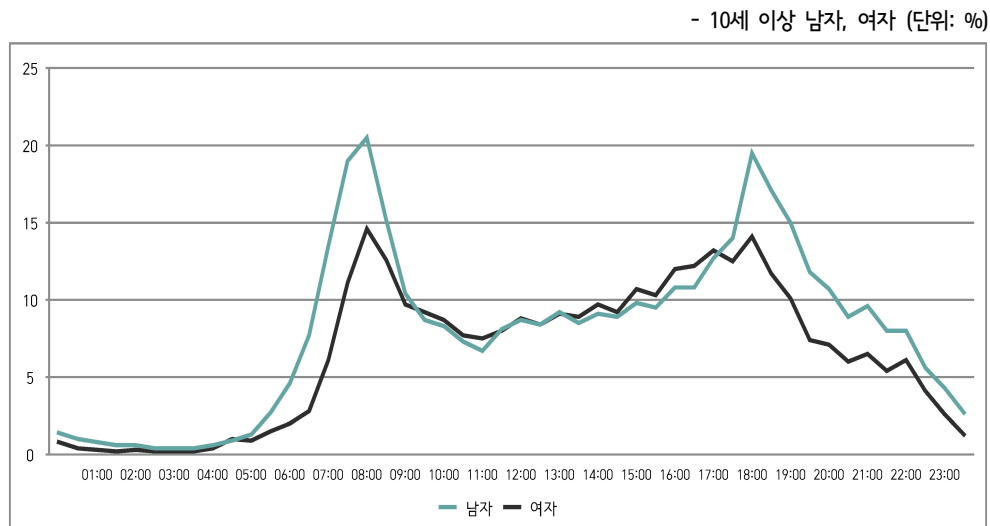
④ 야간의 이동성 제약⁷⁾

- 여성의 야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안전성은 가사, 돌봄과 함께 중요한 요인임.

6) 장미현,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성인지적(Gender-Sensitive) 분석모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gender-sensitive analysis model in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박사학위 논문) p.165

7) 장미현, 위의 글. pp.133, 157-159

- 여성들은 어두운 밤 시간대에는 동네 산책도 혼자서는 가지 않거나, 딸의 귀가에 부모가 마중을 나가는 등 안전성의 문제는 여성의 이동시간대에 있어 중요한 이슈임.
- 실제 여성의 이동시간대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더 늦게 시작해서 일찍 마무리되는 경향을 보임.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30분 단위의 시간간격별 '이동' 행위자비율⁸⁾'을 살펴보면, 오전 8시와 오후 6시에 가장 이동이 많음.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사이에만 여성의 이동 행위자 비율이 조금 높을 뿐 전체적으로 남성의 이동이 더 많이 이루어짐.



■ 그림 III-6 ■ 시간간격별(30분 단위) '이동' 요일 평균 행위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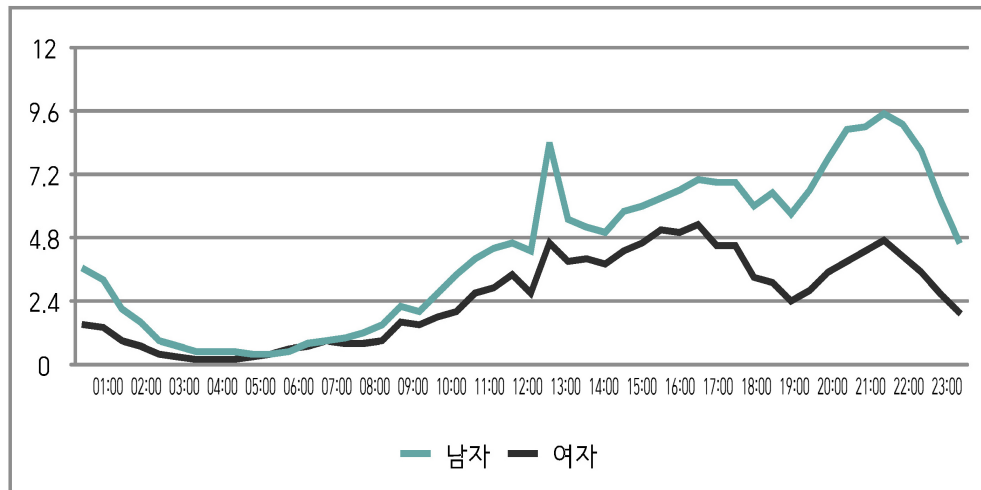
- 또한, '교제 및 여가관련 이동'의 하위 항목 중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관련 이동'⁹⁾의 행위자 비율을 보면, 오전 5시 30분에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에 남성이 높게 나타남. 특히, 야간의 비율은 남성

8) 행위자 비율: 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행위자)의 비율

9) 독서, 컴퓨터 게임(휴대용 게임기 포함), 놀이(바둑, 장기, 화투, 카드, 아이들놀이 등), 그 외 취미활동(서예, 만들기, 모으기, 연주하기 등), 유흥(술, 춤, 노래방), 담배 피우기, 아무것도 안하고 쉬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 「2009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야간에 여가활동을 위한 이동에 더 자유로우며, 여성들의 야간 이동성 제약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남.

- 10세 이상 남자, 여자 (단위: %)



■ 그림 Ⅲ-7 ■ 시간간격별(30분 단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관련 이동' 행위자 비율

□ 간과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안전요구 고려

-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고른 참여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안전요구에 대해 의견이 소통되고 이 과정에서 간과되는 주민 그룹이 없도록 해야 함. 따라서 주민참여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안전취약계층의 요구를 찾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 안전 이슈에서 간과되기 쉬운 안전요구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음.
 -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확보
 -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의 자녀 중 직접 가사활동을 하는 아동의 생활안전(가스, 전기 등 관련 안전 교육 등)
 - 고령자, 특히 독거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안전취약 문제.
 -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안전취약 문제

□ 보행공간의 안전성

- 두려움을 유발하는 장소 및 시간대와 관련된 안전성 외에도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물리적인 형태로 인한 위험성 또한 고려해야 함. 특히, 보행공간의 이동장애 요소들은 보행약자들에게 크고 작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지역사회 의 생활공간 점검을 통해 생활공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보행약자의 통행특성 및 이동장애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III-6 ■ 보행약자의 통행특성과 이동장애 요소

그룹	통행특성	이동장애 요소
휠체어 장애인	■ 평지에서의 이동은 용이하나 단차가 있는 곳을 올라가기 힘들 ■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지 못함 ■ 도랑에 caster(휠체어의 작은 바퀴)가 빠지면, 움직이지 못함 ■ 노명의 요철, 자갈길은 이동이 곤란하고, 진흙길은 통행불능	보도의 턱 건물출입구 단차 계단, 육교 보차비분리 도로 불량한 노면상태 협소한 보도폭 경사면
목발 장애인	■ 계단 및 경사면의 수직이동이 힘들 ■ 넘어지기 쉽고 보행능력이 약함 ■ 보행속도가 느림 ■ 노면이 미끄러운 재질인 경우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위험	계단 경사면 불량한 노면상태 보차비분리 도로 협소한 보도폭
고령자	■ 보폭의 축소와 단위시간당 보행수 저하로 장시간보행이 어려움 ■ 경사면과 계단에서 보행의 불편을 느낌, 뒤에서 오는 차량의 접근 및 경음기에 주의하지 않음	단이 높은 계단, 청결상태 불량 계단, 경사면 보차비분리 도로 불량한 노면상태
임산부, 어린이 및 무거운 짐을 든 보행자	■ 혼잡한 상황에서의 이동이 곤란하고, 무거운 화물을 들지 못함 ■ 어린이는 눈의 위치가 낮고 장시간 보행이 어려움	협소한 보도폭 보차비분리 도로
유모차·보행 보조기 사용자	■ 계단 등의 수직이동이 힘들 ■ 심함 경사면에서 불편함을 느낌 ■ 단차있는 곳은 올라가기 힘들 ■ 노명의 요철, 자갈길은 이동이 곤란하고, 진흙길은 통행불능 ■ 장시간 보행이 어려움	계단 경사면 단차 보도의 턱 협소한 보도폭

*출처: 강현미, 박소현 (2008) 구릉지 아파트단지의 보행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보행약자의 이동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제4회 우수졸업논문전 수상논문 개요집 4(1), 195-198

(3) 사업개선목표와 개선방안

□ 사업개선 목표

○ 본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궁극적인 사업개선 목표는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안전마을 모델설계 및 생활안전 실현”임. 이는 사업의 각 절차마다 남성과 여성의 참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안전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꾀할 수 있음.

○ 이를 위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① 사업설계에 있어서 ‘성인지 관점’반영을 위한 지침 마련

-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 「서울형 안전마을」의 심사기준의 개선
 - 사업의 선정은 1차 현장조사와 2차 서면심사로 이루어짐. 이 과정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할 수 있음.
 -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성참여비율이 30-40% 이상 확보.
 - 심사기준에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대상지역 주민의 특성 반영 여부, 주민 참여에 성별비율 확보 여부 등을 포함.
- 「서울형 안전마을」 마을안전도 평가지표의 개선
 - 마을안전도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및 방법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함
 -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 요구, 만족도 등의 평가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 가구유형별 등의 조건에 따른 안전에 대한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가 구성되어야 함.
 - 사업 시행 전 사전평가와 시행 후 사후평가에 모두 반영되도록 해야 함.

② 사업유형별 성인지관점 반영을 통한 모델 발굴

- 지역의 주민 특성에 맞는 생활안전 사업의 발굴
 - 지역주민의 인구 특성 및 안전 요구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생활안전 사업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 중 정책 참여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안전요구가 간과되지 않도록 해야 함. 주간에 아이들끼리 집안에

머무는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의 아동이 가사 등의 활동을 담당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위험이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위험 등 다양한 안전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상사업 선정 전 성별통계 분석

- 지역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전 관련 현황 및 지역주민의 안전요구 파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의 안전 관련 현황 및 인구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됨.
- 성별, 연령별, 가구유형별, 계층별 인구통계를 통해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요구를 지닐 수 있는 지역 인구 구성을 살펴 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연령별, 가구유형별, 계층별 인구통계는 성별로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가공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재난·재해·범죄 관련 통계 및 자료: 재난이나 재해 발생시 지역에서 피해가 있었던 장소 및 시간, 피해보상 방식 및 수혜자, 예방에 대한 정보전달 방법, 예방교육 참여자 등에 대한 통계 및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며, 인적사항 포함 통계는 성별 구분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함.
- 범죄발생 장소 및 회수, 시간대,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통계 등을 통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을 위한 시설물 현황 통계: 재해·재난 방z시설 및 피해시설 통계, CCTV·가로등·비상벨 등의 위치 및 개수 통계를 통해 안전시설 취약지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대상사업 선정 전 사전조사 필요

- 설문조사: 통계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지역의 상황 및 주민의 안전의식과 만족도 등에 대한 파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설문조사의 기획, 문항의 구성, 결과 데이터의 가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간과되거나 누락되는 그룹이 없도록 해야 함.
- 인터뷰 및 면접조사: 설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룹이나 설문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일상생활공간에서의 두려움, 안전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및 면접조사 등을 수행할 수도 있음. 안전취약층을 대상으로, 혹은 주거지 형태별로 초점그룹면접도 가능함.

③ 성평등한 현장활동가의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 현장활동가 양성
 - 유관단체, 대학생 및 지역주민 등으로 현장 중심의 활동가가 구성되어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현장활동 지원·교육 등의 활동을 하게 됨. 현장활동가는 지역안전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교육 받음.
 - 마을만들기의 참여자로서 뿐 아니라 지역의 리더로서의 활동에도 남성과 여성이 참여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 또한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남녀의 역할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가사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는 근대적 핵가족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 부모 가족, 맞벌이 부부 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상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다양한 안전 이슈를 발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4) 젠더거버넌스 위원 현장활동 결과

□ 조사개요

참여 위원	1조: 김영미, 장승진 2조: 한정희, 김성희
방문기관	1조: 신대방2동 자율방범단 2조: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질문내용	○ 안전마을 공모사업의 성인지성 반영여부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 심층면접 ○ 주민활동 그룹의 구성과 의사결정에서 성인지성 반영여부

□ 조사내용 및 결과

조사 내용	현장활동 결과
○ 공모사업 내용 분석 - 안전마을 공모사업의 성인 지성 반영여부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 분석 ⇒ - 주민활동 그룹의 구성과 의사결정에서의 성인지성 반영여부 분석	○ 신대방2동 자율방범단 - 이 지역은 이미 여성자율방범대와 남성자율방범대가 조직화 되어 있고, 참 좋은 봉사단, 서울시 안심귀가 서비스단 등 같은 사업이 중첩되다 보니, 사업을 시행하며 주민들 갈등 있음. - 새로이 파악된 성별수요나 요구 ■ 여성이 여성을 늦은 시각에 귀가 시키고, 돌아오는데 또 다른 안전사고 있음. ■ 여성과 남성이 소통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필요. ■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함. - ‘공동체’와 ‘주민’, ‘마을융합발전계획’, ‘마을공동체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등이 엄밀하고 세밀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 추진사업의 위원이 23명 전원남성으로 여성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음 ○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 서울시 마을사업 선정 평가 기준에 성인지적 또는 성평등적 평가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평가위원회에는 일정비율의 여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는 성인지적인 또는 성평등적인 전문 단체의 평가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사업담당자도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이 필요함. - 마을안전에 대한 이해를 어린이와 노인들의 교통안전으로부터 다각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여성노인들의 경우 성폭력이나 폭력에 취약한 관계로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지역사회 안전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힘 있는 사람들이거나 남성들임. 그런 의미에서 안전마을 활동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어서는 안되며 남성들도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함. - 보안이나 안전을 담당하는 남성들에게는 폭력예방교육과 안전교육을 필수화하며, 이를 믿을 만한 기관에서 보증할 수 있어야 함. (ex. 안전교육 필증 등을 지참).
○ 공모사업 제안자(선정사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 사업설계과정 ⇒ 에 대한 설명, 사업 설계의 목적, 중점 프로그램 내용,	○ 신대방2동 자율방범단 - 마을만들기를 예산투입과 시설환경개선 중심으로 사고하고, 정치적 관계에 이용하는 방식, 성과주의 등을 지양해야 한다. - 비슷한 사업의 중복된 예산지원에 대한 검증 시스템 필요하다. - ‘마을학교’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고민 할 필요 있다 - 지자체 공무원에게 먼저 솔선하여 이러한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 사업시행전 안전마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교육프로그램 요망 (형식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실제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및 안내가 요망

조사 내용	현장활동 결과
기대효과, 만족도 등	되며, 사업추진에 따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판단됨) ○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 안전마을 만들기에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직장인 상인들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기업체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함.
○ 기타	⇒ ○ 신대방2동 자율방범단 - 마을만들기 조직을 통한 사업수행의 결과 마을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창출된 인적자원, 마을 공공성은 혁신성에 포함될 수 있는 새롭게 창출된 가치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관계망, 사업의 주민 주도성과 자립성 등도 혁신요소로서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 ○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 어르신교육과 학부모교육에서 교통안전 뿐 아니라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함. - 안전활동가들이 교통위반자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및 설치물 등등에 대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있어야 함.

(5) 개선과제 제안

□ 주민주도형 안전마을 사업의 확충

-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 활동의 적극성과 결속력, 실무능력이 높게 나타난 반면, 행정주도형 사업인 경우 안전 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형식적이며, 특히 남성중심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사업도 참여자가 대부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인지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참여자에 대한 별도의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제안

- 사업선정과정에서 안전취약대상에 대한 특성 고려를 위해서 성별요소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성북구의 경우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참여자들 또한

대부분 여성임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여 안전취약계층으로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고려 있으나,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안전취약대상에 대한 세심한 반응을 위해서 선정지표, 선정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선정 심사위원 구성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젠더 전문가 포함

○ 사업제안서 기대효과와 사업평가지 성인지적 고려, 사업참여자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성 있음.

- 이들의 참여가 결국 향후 사업의 지침이 되며 사례를 통한 확산의 계기가 되기 때문임

□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필요

○ 진로지도 상담사, 상담교사, 일반교사 중 진로지도 교사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진로지도 교육과정의 성별 특성을 이해도 제고와 교육시 성평등 가치 확산

5) 청소년 진로정보제공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청·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 직업관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학생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
 -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아울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게 하는데 있음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단체 등의 책무)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청소년 커리어코치사업 시행계획 (2005. 8. 25)

□ 주요사업 내용

○ 청소년 진로정보제공 사업

- 운영 기간 : '13. 3. 2 ~ '13. 12. 13 (방학기간 제외)

- 운영 인원 : 200명

- 참여 학교 : 200개교(초등학교 125, 중학교 75)

- 근무내용

■ 진로교육 관련 상담수업보조

■ 개별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관련 업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3시간, 주 4일 (원칙)

■ 임금기준 : 1일 3시간 근무 시 5만원(서울시 지급)

※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 청소년 커리어코치 교육훈련기관 선정

- 청소년커리어코치 자격요건

■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청소년 커리어코치 전문
훈련기관에서 50시간 이상 교육 수료자

- 교육 내용

■ 청소년진로, 학습코칭, 직업, 심리학 등 이론학습을 포함 50시간 이상

□ 현장 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조사 대상

- 학교 진로담당교사 : 200명

- 수업 및 상담 경험이 있는 학생 : 2,000명이상

- 청소년커리어코치 : 200명

○ 조사 내용

- 활용만족도, 교육필요성, 교육만족도, 강사 이미지 등

○ 활용 방안

- 2013 상반기 진로정보제공 등 사업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평가 분석
- 2014년도 청소년 진로제공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정기포럼 개최

○ 참여 대상

- 2013년 사업 참여 중인 청소년커리어코치 200명

○ 개최 시기

- 상·하반기 사업 종료 전 (6월, 12월)

○ 주요 내용

- 사례발표, 학습기법 교류, 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한 진로상담 교육 효과 제고

(2) 사업의 성별이슈

□ 청소년 진로 교육 과정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되지 않음

- 초·중학생의 진로정보를 제공이 향후 올바른 직업의식과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의 주요 요인이 됨.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내용이나 구조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한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임

- 초·중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점차 진로에 대해 인식해 나가는 단계로 진로교육의 가장 기초 단계라 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2000). 나아가 학생들은 진로교육을 통해 세계화, 다양화, 정보화 시대에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능력을 신장시키게 되므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실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일관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흥미는 무시한 채 일류학교로 진학하는데 학습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가치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이와 같이 사회적 가치기준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면 성차별적인 유교사상과 성역할 고정관념 등 전통적 가치관에 얽매어 자신의 잠재능력과 관심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김지윤, 2002).
- 또한 학생들이 정형화된 성역할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에게 자아실현 기회를 제한하게 하고 사회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적자원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
- 초·중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녀 학생 모두 직업 자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직업을 통해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로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있음(이제창, 1998)
- 양성 평등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성 평등한 진로지도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해야 할 것임

□ 청소년진로코치의 성별 특성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 성역할 고정관념의 형성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되므로 이 시기에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이 중요함
-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은 이후 학생들의 잠재능력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그 시기는 학령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며 인지능력이 발달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 지속적으로 강화(김재춘, 왕석순, 1999)된다는 것임.

-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고정관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학생들이 학습함으로써 형성되고 강화(김태련·조혜자, 1986)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 또한 한국능률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사회적 가치를 학습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인물은 부모님이고 다음으로 커리어 코치라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성인지적 역량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절한 진로를 탐색하는 양성평등 진로교육이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에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청소년 커리어 코치의 자격요건은 이러한 성인지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2013 청소년 진로정보제공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청소년 커리어 코치의 자격 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지도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
 - 이들은 상담이나 교육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청소년커리어 코치가 교육훈련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50시간의 전문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진로, 학습코칭, 직업세계의 이해, 심리학 등 진로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진로교육에 성인지적 관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부재한 것이 사실임
- 청소년커리어 코치가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는 교사의 성역할고정관념에 의해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차별적인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여학생의 경우는 자신의 적성보다는 여성적 직업에 한정하여 진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이른바 남성적 직업군에 적성이 있는 여학생은 좌절감을 심어 줄 수 있음. 김봉환 외(2001)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 성차별로 인해 자신의 활동이나 성취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자기 효능감 개발에 방해가 받게 되어 진로 결정을 포기하거나 지연 혹은 회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 한국능률협회(2012)의 진로교육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 많이 느끼고 있으나(남학생 64%, 여학생 71%) 진로교육의 유익성에 대한 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것(남학생 52%, 여학생 42%)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진로교육이 성인지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진로교육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청소년커리어코치 교육 내용에 성역할고정관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성인지적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만족도 등 사업평가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로지도의 교육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능과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2003)에 따르면,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이란 남녀 학생 모두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능력과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기능과 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남녀불평등적인 요소를 밝혀내어 이에 대한 의식, 가치관, 극복 의지와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함
- 그런데 일반적인 진로교육의 성과 측정은 진로지식과 기술, 진로행동, 진로 관련 정서와 신념, 진로성숙도이라는 4가지 지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진로교육 평가 지표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남성 중심적 직업세계관에 대한 탈피 여부와 관련된 평가지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생애 발달단계에서 발생하는 남성과 여성의 경험의 차이나 인식의 차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성 중립적인 관점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성과가 측정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역시 교육내용의 성인지적 고려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임

□ 청·장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으로써 근로여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본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청·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으나 현재의 커리어코치의 근무 기간이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일자리라고 할 수 없음.
- 커리어코치는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는데 근무 기간은 3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방학기간을 제외하면 8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1일 3시간 일주일에 4일 근무하는데 1일 3시간 근무할 경우 5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이러한 근무형태는 매년 재계약해야 하는 고용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월 80만원의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4년제 신입 대졸사원의 급여수준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급여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본사업의 목적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급여 수준이 매우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한다는 본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연장, 근무 시간의 연장 등 일자리의 질 향상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사업개선 목표 및 방안제시

□ 초등학교 진로지도 종합계획 수립

- 교육인적자원부(2003)는 생애단계에서 발생하는 남성과 여성의 경험의 차이나 인식의 차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성 중립적으로 구안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남녀의 내면의 차이가 교육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하면서 지도하는 양성 평등한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녀 학세 모

두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능력과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부록 2 참조)을 개발하였음.

- 김종운(2007)의 연구에 의하면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일반 진로교육프로그램보다 초등학교 학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을 극복하는데 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진로성숙 영역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로교육은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하위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① 양성평등 진로교육과정 개발

- 교육인적자원부(2003)가 개발한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직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급 학교(초등학교)나 교육청에 배포하고 모든 커리어코치가 이를 활용하여 양성평등 진로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양성평등 진로교육 자료 개발

- 양성평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이 필요함.
 - 교육 자료는 학생과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워크북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 진로교육 자료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제시된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실제 직업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제작되어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진로교육을 연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③ 양성 평등 진로교육 체계 구축

-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양성 평등한 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함. 또한 진로교육이 교과과정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학과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커리어코치와 학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 그리고 담임교사가 커리어 코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양성평등 진로교육에 대한 연수를 확대해야 할 것임. 이들이 커리어 코치의 역할과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연수나 교육이 확대하여 커리어코치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④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 진로 교육 실시

- 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진로 교육 체계도 필요함.
-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진로교육은 주로 진로정보제공, 진학교육, 인성 및 진로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정주영(2010)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관심과 대화가 아동의 진로 결정과 진로 선택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등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 등도 부모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직업에 대한 신념이나 성인지적 관점이 초등학생의 진로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나 가족의 지지가 여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⑤ 여성친화 기업과의 산학협력 체계의 구축

- 진로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 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현장 활동 학습을 위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조성심·주석진(2010)의 연구에 의하면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을 실시할 경우 체험활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교육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학생의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기업과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여성기업인이나 이른바 남성적 직업군에서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을 활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⑥ 성인지적 관점에서 만족도 조사 및 포럼 실시

- 매년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와 포럼의 내용에 남녀 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 파악
 - 본 사업 계획에 의하면 1년에 1회 학교 진로 담당 교사, 진로교육 참여 학생, 청소년 커리어 코치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측정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만족도 조사는 성 중립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커리어 코치 양성

- 커리어코치로 선발된 사람의 경우 반드시 성인지 교육을 실시
 - 집단적인 진로교육 뿐 아니라 개별적 상담의 경우도 커리어코치의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진로상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커리어코치는 반드시 성인지 교육을 수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성인지 교육의 수행방식
 - 첫째는 양성과정에 여성학 혹은 양성평등교육 과목에 포함하도록 커리어코치 훈련 기관에 지침을 시달할 수 있음
 - 둘째는 커리어코치로 선발된 경우 서울여성가족 재단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청소년 커리어 코치의 직무 기준 확립 및 진로지도 전용교실의 설치
 -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커리어코치의 역할 및 직무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있음. 이러한 직무기준에 일반 진로교육 뿐 아니라 양성평등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진로교육을 위한 전용교실을 설치하여 커리어 코치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김나라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93.9%가 진로교육을 위한 전용교실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 이는 진로에 대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 청소년 커리어 코치의 채용기회 확대
 - 초등학교 학생에게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커리어 코치의 채용기회를 확대하여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에 커리어코치를 파견.
 - 2013년 현재 서울시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는 594개교인데 본 사업의 대상학교는 198개교에만 시행되고 있음. 초등학교는 진로탐색의 기초 단계이고 성역할고정관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시기에 모든 초등학생이 반드시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III

□ 커리어 코치 근무 조건 개선

- 커리어 코치의 계약기간은 최소 2년, 1일 4시간 5일 근무제 혹은 1일 8시간 3일 근무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통해서 안정적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커리어코치의 1주당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진로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상담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성 있음. 한국능력협회(2012)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진로교육시간이나 상담시간의 충분성과 적절성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실시

-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커리어 코치의 전문성을 개발 필요성
 - 커리어 코치들은 대부분 경력단절여성이므로 비록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진로지도나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불안감이나 자신감의 부족을 느끼거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커리어 코치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임. 또한 커리어 코치가 필요로 하는 관련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커리어 코치들이 진로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포럼 등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4) 젠더거버넌스 위원 현장활동 결과

□ 조사개요

참여 위원	1조: 김용희, 옥선희 2조: 김희정, 변경미
방문기관	신길동 우신초교(1조), 대도초교(2조)
질문내용	- 교사대상: 성평등 진로지도 및 수요 - 학생대상: 진로지도 수업효과, 만족도, 교육의 도움정도

□ 조사내용 및 활동결과

조사 내용	현장활동 결과
○ 진로교육 교사 대상 - 성평등 진로지도 교육의 필요성 및 수요	○ 우신초등학교 - 진로지도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진로 지도는 청소년들에게 양성 평등적 가치관을 형성하게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교육 구성이나 교사 양성 과정 중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청소년 진로 지도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성인지적(양성평등)

	관점의 교육에 관한 것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 진로 교육에 대한 단일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현재 청소년 진로정보 제공 사업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일정한 교육 매뉴얼이 없어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로지도 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는 양성평등적 관점 역시 코치의 개인 역량 및 가치관에 따라 교육에 반영될 수도 있음을 의미함(인터뷰를 실시하였던 교사의 경우처럼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지녔을 경우 ‘직업군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깨기’ 등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 양성평등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함) - 현재 커리어 코치의 근로 형태는 1일 3시간, 주4일 강의로 가사와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다수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시간 활용의 측면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이 될수 있음. 반면 학교 배정이 새로운 대상자에게 우선하기 때문에(재계약이 불투명)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경력 쌓기에는 불안정하다는 한계 역시 지적될 수 있음. 이는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효과 역시 사업 참여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암시함 - 진로지도 교사 양성과정에 있어서 관련 교육을 추가 시키는 것 뿐 아니라 양성평등적 관점의 교육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대도초등학교 - 성인지 관점에 대한 현장 커리어 코치들의 인식 제고의 필요 - 진로코칭 교사들이 현장으로 파견되기 전에 성인지교육을 받거나, 근무 중에 성인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부모들의 진로교육이 병행필요
○ 사업참여자 만족도 및 수요조사 - 진로지도 수업의 효과, 교육내용·시간·교육 방법 등에서의 만족도, 양성평등 진로지도의 필요성 및 요구 사항 등	⇒ ○ 우신초등학교 - 현재 학생들에게 수업 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2차시에 ‘직업군 성별 고정관념 깨기’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진로지도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양성평등 관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 - 각 직업에 대한 교육 자료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남성위주로 되어 있어(eg. 홀랜드 RIASEC 유형 교육 자료 중 비서형을 제외하고 대표적 종사자로 모두 남성이 등장함) 양성평등적 관점을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남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개별적인 상담을 더 선호함. - 양성평등 과목 개설은 물론, 코치들이 수업을 계획할 때와 수업을 평가할 때 성인지 관점도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함 ○ 대도초등학교 - 학교마다 1인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이를 고려하여 배치되어야함.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인원수에 맞는 배치가 필요. - 성별차이 인지필요 여자아이들의 경우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높고 글쓰기가 남자아이들보

		다 섬세하고 디테일한 경향이 있어 남자아이들이 학습이나 평가에서 불리하게 될거라고 생각됨.
○ 기타	⇒	○ 우신초등학교 - 진로 지도 교사가 학교 교원이 된다면 진로 지도가 아닌 진학 상담이 될 수 있음. 현재 정규 교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진로 지도 교사’의 역할은 외부 교사들이 할수 있는 영역인 것으로 보임 -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경력 단절여성들이 일자리 재진입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이들이 사업의 주된 수혜 대상이 된 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절한 기회제공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청장년층 역시 수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수혜 대상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진로교사의 처우 ■ 진로교사에 대한 관리 주체가 없어 모이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양성과정 이수 후 각 학교에 배치되는데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주의사항이 다름에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방법이 없음. - 1년(실제 활동기간 10개월) 활동 후 재계약이 불투명함. 교육훈련기관의 다음 기수 교육생들이 학교 배치에 우선권을 갖기 때문인데, 이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경험과 경력을 쌓기에는 불안정한 체계임. - 본인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수업 시간 배정 및 휴게실 사용 등에 있어서 배려가 많았으나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 배려가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대도초등학교 - 면접대상자인 코치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높았지만, 일 3시간 근로지만, 수업 준비에 드는 시간,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상담 등에 비하면 급여는 낮은 편임.

(5) 개선과제 제안

□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의 안정적 설계

- 일정기간동안 진로지도 코칭의 경험을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경력개발 경로 마련과 일정기간 동안 경험이 향후의 직업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경력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함

□ 커리어 코치 및 일반교사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성인지 교육

- 본 사업이 여성일자리 제공사업임과 동시에 초등학교 대상 진로지도를 내용

으로 하는 교육사업임. 따라서 진로지도 교사 자신의 성인지 역량을 갖추기 필요성이 있음.

- 연구논문은 진로지도시 양성평등관점을 반영한 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먼저, 진로지도 교사(커리어코치) 양성과정시 성인지 관련 교육 이수토록 요청함

○ 커리어코치 뿐 아니라 일반교사의 성인지 교육 확대

- 중고등학교의 경우 95%에 진로지도 교사 배치되어 있는데, 타교과 담당교사가 300시간 이수 후 진로지도 담당하고 있음. 이때에도 정규교과 과정에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수교과과정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 협업(교육전문가, 젠더전문가 등)을 통한 성인지 교육 매뉴얼 개발

○ 성인지적 관점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임.

- 진로교육 및 상담과정의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콘텐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진로지도 교육은 교육대상자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장래 효과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진로지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교육매뉴얼 제작시 젠더전문가, 교육전문가 등과의 협업이 필요함

○ 이러한 일련의 사업에 대해 (서울여성가족)재단은 각종 진로지도 교육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화할 필요성 있음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함

□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시설설치) 및 제81조(비용보조)

□ 사업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시설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명, '13.5.31 현재)

구 분	계	근로사업장	보호직업장
시 설 수	113	12	101
종 사 자 수	583	171 (29%)	412 (71%)
근 로 장 애 인 수	3,615	685 (19%)	2,930 (81%)
자 치 구 분 포		11개 자치구	24개 자치구

※ 근로사업장 : 종로·광진·강북·도봉·노원·서대문·강서·관악·서초·송파(1개소), 관악(2개소)

- 근로장애인 장애유형별 현황('12.12.31 기준)

구분	계	지체	노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질
장애인	3,492	295	93	294	68	10	2,248	215	254	3	2	1	9
%	100	8.45	2.66	8.42	1.95	0.29	64.38	6.16	7.27	0.09	0.06	0.03	0.26

※ 발달장애인(지적·자폐) : 2,463명(70.5%) / 지체장애인 : 295명(8.4%)

- 시설별 매출현황('12.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시 설 유 형	합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비 고
매 출 액	64,047	31,979	32,068	
평균매출액	3,234	2,907	327	근로사업장 : 11개소 보호작업장 : 98개소
최고매출액	17,384	11,361	6,023	근로사업장 : 정립전자 보호작업장 : 리드릭
최저매출액	350	341	9	근로사업장 : 다니엘직업재활원 보호작업장 : 비둘기보호작업장

■ 2012년도 근로사업장 11개소 매출이 전체 시설 매출의 49.9%를 차지, 최고 매출 사업장(정립전자)이 근로사업장의 35.5%, 전체 시설의 17.7%를 견인

■ 일부 보호작업장(리드릭)은 최저매출 근로사업장의 17배 이상의 매출과 전체 보호작업장 매출의 18.8%를 견인, 최저 매출시설과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최저임금 이상 537명(15.4%), 월 30만원 미만 2,361명(67.6%)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지원

-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본급 인상
- 시설운영비: 시설관리, 상담사업, 판촉사업, 조달사업, 쇼핑물 운영 비용
- 경영지원센터 운영비: 매니저 인건비 및 사업비
- 기능보강사업비: 행복플러스가게 강남점 설치비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인건비: 종사자, 센터장 및 직원 급여
- 시설운영비
- 사업비: 일자리 연계사업, 일자리 개발 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 홍보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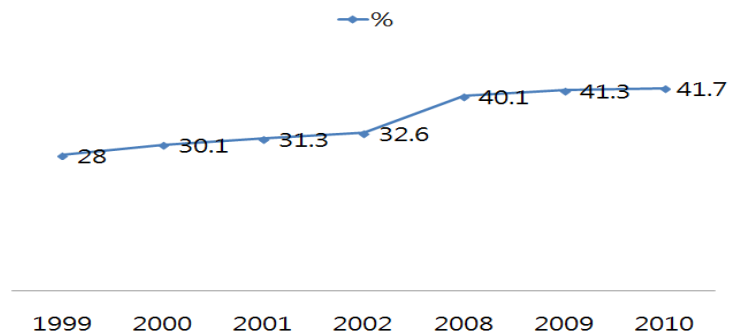
III

(2) 사업의 성별이슈

□ 단기적 성별이슈

○ 취업혜택의 성별 차이

- 장애인구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은 1999년 28.0%에서 2010년 4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물론 이것은 등록된 장애인 비율로써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등록률이 낮음



출처: 고용노동부, 「2011 장애인 통계」, 26쪽.

■ 그림 Ⅲ-8 ■ 장애인구 대비 여성장애인 비율

- 그러나 장애인구 취업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0년 26.1%에 불과하여, 단지 등록된 장애인의 성별비율과만 비교해도 취업기회의 성별 격차가 과도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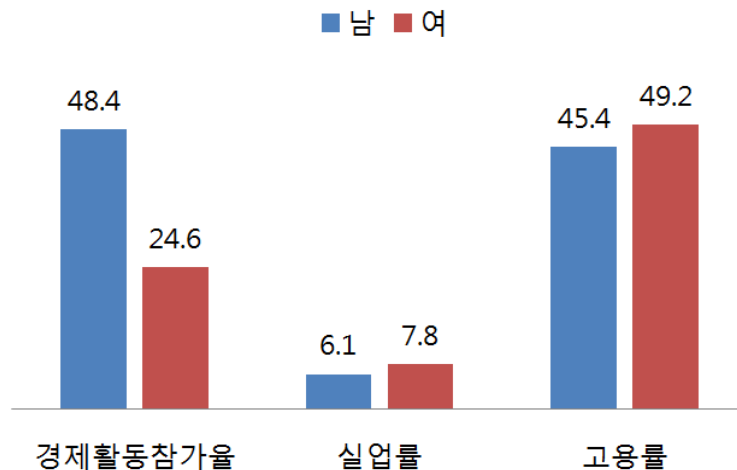
■ 표 Ⅲ-7 ■ 장애인 취업자 인적구성

(단위: 명, %)

	전체	비율	인구분포
남성	631,960	73.9	58.6
여성	223,197	26.1	41.4
전체	855,158	10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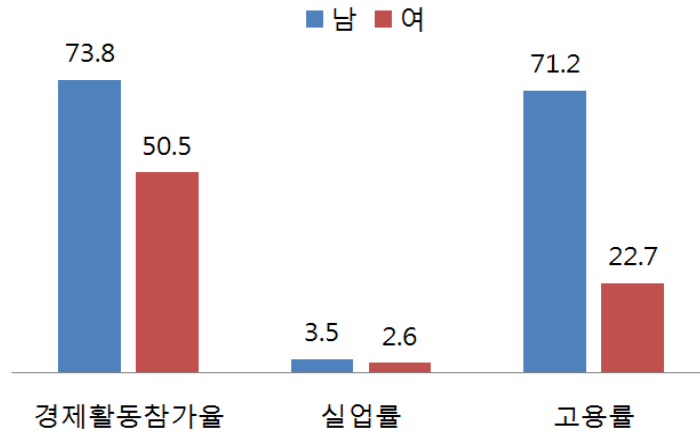
* 출처: 고용노동부, 「2011 장애인 통계」, 83쪽.

- 경제활동인구의 측면에서도 2010년 장애인구 중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4%인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6%로,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성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2010년 전체인구 중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3.8%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5%임을 볼 때,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가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보다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용율의 성별 격차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구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전체인구 남성의 고용율이 71.2%이고 여성고용율은 49.2%인데 비해, 장애인구 남성 고용율은 45.4%이고 여성고용율은 22.7%로 성별 차이가 22.7%p의 차이가 있음
- 실업률의 경우에는 전체인구 성별 격차와 장애인구 성별 격차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인구 중 남성의 실업율은 3.5%, 여성의 실업율은 2.6%인데 비해, 장애인구 중 남성의 실업율은 6.1%, 여성의 실업율은 7.8%로 여성 장애인의 실업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즉 장애 여성들의 근로욕구가 비장애 여성들의 근로욕구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11 장애인 통계」, 75쪽.

Ⅲ-9 장애인구 경제활동상태 - 성별 (%)



출처: 고용노동부, 「2011 장애인 통계」, 75쪽.

■ 그림 Ⅲ-10 ■ 전체인구 경제활동상태 - 성별 (%)

○ 소득확보 또는 소득인상의 혜택에 있어서 성별 차이

- 취업한 여성 장애인의 고용현실을 보면 이들의 일자리가 주로 하층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음
- 2008년 전체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수입은 226만5천원이며,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수입은 141.3만원으로 남성의 62%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해 남성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수입은 전체 남성 근로자의 60%정도이며 여성 취업 장애인은 26%정도에 불과하여, 여성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수입은 남성 장애인의 44%도 안 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표 Ⅲ-8 ■ 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과 근로일수

(단위: 만원)

전체인구			장애인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226.5	141.3	194.5	135.6	59.3	115.6

출처: 여성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2009, 43쪽.

○ 일자리 연계 교육 및 행사 수혜의 성별차이

- 여성 장애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남성 장애인의 1/3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여성 장애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III-9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예	5.3	1.8	3.9
훈련중	0.4	0.1	0.3
아니오	94.2	98.0	95.8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09,706	861,890	2,071,596

출처: 여성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2009, 43쪽.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별 여성 장애인의 참여 비중을 보아도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더욱 낮아지고 있음

표 III-10 훈련기관별 여성 장애인 훈련 비중

훈련기관 구분		2005년		2006년	
		전체	여성	전체	여성
공단센터		1,586	522 (32.9)	1,952	478 (24.5)
공공직업훈련기관		243	12 (4.9)	251	11 (4.4)
민간직업훈련기관		376	113 (30.1)	373	93 (24.9)
특수학교 전공과		342	138 (40.4)	457	122 (26.7)
직업	장애인복지관	196	64 (32.7)	134	25 (18.7)

훈련기관 구분		2005년		2006년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적응 훈련 기관	안마수련기관	77	15 (19.5)	102	22 (21.6)
	직업재활시설	64	17 (26.6)	63	12 (19.0)
독자적 직업훈련		171	33 (19.3)	220	34 (15.5)

출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진입 확대 방안」, 2007, 18쪽.

- 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장애인 중 여성의 비율(31.9%)이 전국 장애인구 중 여성의 비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장애인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은 2, 3급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시설 경영에 여성 장애인의 욕구 반영 미흡: 기능보강사업, 전문인력(시설장·매니저·직원), 프로그램 운영의 성인지성

- 시설장과 직원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관련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있으나 성인 지적 관점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여성실무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작업배치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여 사업수행이나 프로그램개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해 친화적인 운영을 할 경우 여성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 성별 이슈

- 여성장애인의 등록률과 경제활동참여율, 즉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 여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장애인 자율성 및 소득 지원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성별 이슈이므로,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할 필요 있음

【 표 Ⅲ-11 】 전라북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현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소계	310	59	143	80	14	7	7	
남자	211	28	105	61	11	3	3	
여자	99	31	38	19	3	4	4	

출처: 전북발전연구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성별영향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2009, 35쪽.

○ 육아 및 가사부담의 완화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육아 및 가사부담이라는 가족 내 성역할을 지적하는 선행연구가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시설 내외에 여성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보하거나 장보기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서, 여성이 집밖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남성장애인 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출퇴근 등 외출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아존중감 제고

- 여성장애인들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자원이 부족하며, 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여성장애인의 장애인 등록률이 낮은 것도 이와 같은 전반적 자신감의 결여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시행이 필요함

※참고문헌

- 전북발전연구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성별영향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2009, 37쪽.
- 여성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2009, 50-53쪽.

(3)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사업 개선 목표

- 대상 시설의 운영비 지원 기준 결정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물의 매출을 늘리며,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려는 본 사업의 목적이 양성에게 고루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점들이 요구되고 있음

□ 단기적 개선목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성별 실태 파악 및 운영지원 사업 수혜자의 성별 구조 파악

① 근로자의 기초적 성별 실태 파악

- 장애인 종사자의 성별 분포
- 생산품 업종에서 나타나는 성별 분업 구조
- 성별 임금 수준
-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성별 분포

② 경영지원의 성별 수혜 실태 파악

- 디자인개발 지원 수혜자의 성별 분포
- 판로확대 지원 수혜자의 성별 분포
- 종사자 역량교육 수혜자의 성별 분포
- 매출 증대 및 평균임금 상승 수혜자의 성별 분포
- 기능보강사업 수혜자의 성별 분포
- 확충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성별 비율

③ 시설장의 성별 분포 파악

- 시설장 급여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 만큼, 시설장의 성별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④ 프로그램, 기타 운영, 기능보강사업의 성인지성 파악

- 프로그램비, 기타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계획이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내용, 기타 운영사항의 내용,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이 양성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성격의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성별 실태 파악 및 운영지원 사업 수혜자의 성별 구조 파악

① 종사자 및 판매사업 수혜자의 성별 실태 파악

- 종사자의 성별 분포
- 판매품목 생산자의 성별 분포 및 판매액 상승 수혜자의 성별 분포
- 온라인 판매 품목 생산자 및 판매 종사자의 성별 분포
- 온라인 쇼핑몰 품목 디자인 개편 수혜자의 성별 분포
- 품질 경영 컨설팅 및 인증, 배상책임보험 도입 수혜자의 성별 분포
- 장애인 생산품 인식 개선 수혜자의 성별 분포
- 공공기관 납품 품목 생산자의 성별 분포

② 추진 계획의 성인지성 파악

- 생산품 개발, 마케팅 및 경영지원, 품질관리 지원 수혜자의 성인지성 파악
- 행복플러스가게 매장별 전략상품 개발 및 상품진열 변화 사업 수혜자의 성인지성 파악
- 행복플러스가게 강남점에서 일하게 될 직원 및 판매상품 생산자의 성별 구성

③ 운영비 지원계획의 성인지성 파악

- 기본급 인상 수혜자의 성별 분포
- 시설운영비 지원 수혜자의 성별 분포

- 경영지원센터 종사자의 성별 분포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성별 실태 파악 및 운영지원 사업 수혜자의 성별 구조 파악

① 종사자 및 이용자의 성별 분포 파악

- 종사자의 성별 분포
- 시설 이용 장애인 및 취업 장애인의 성별 분포, 직종별 성별 분포
- 고용유지 현황의 성별 통계

② 일자리 발굴 및 연계의 성인지성 파악

- 장애인 여성친화적 일자리의 비중
- 인턴십, 취업전 현장훈련, 장애바리스타 양성 사업 수혜자의 성별 분포

③ 운영비 지원 사업의 성인지성 파악

- 센터장 및 직원의 성별 분포 또는 성인지성
- 일자리 연계사업, 개발사업, 지원사업, 홍보비 사용 계획의 성인지성

□ 장기적 개선목표

- 육아시설 지원, 장보기 시설과의 편리한 연계성 제공
-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
- 여성장애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젠더거버넌스 위원회의 현장활동 결과

□ 조사개요

참여 위원	김향숙, 이영희
방문기관	굿월스토어(도봉구), 톨레랑스(은평구)
질문내용	- 관리자 및 구성원의 성별 구성비율 - 업종 및 직종의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가 있는지 여부 등 파악

□ 조사내용 및 활동결과

조사 내용	조사 결과
○ 성인지적 관점 반영 여부	○ 굿윌스토어(도봉구) - 총 직원은 16명인데 성비 비율은 동등했지만 관리자 4명은 모두가 남자였고 사회복지사는 2명뿐이었음. 특히 장애인들의 특성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수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고 여성 근로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음. ⇒ ○ 톨레랑스(은평구) - 톨레랑스는 쿠키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원래 정원이 24명이지만 6명이 더 추가되어 현재 30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성별 수요와 요구는 본 기관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곳이었음. - 성차별 없이 누구나 원하면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관리자의 생각이 반영되는 곳이기도 했음.
○ 성별 수요 나 요구	○ 굿윌스토어(도봉구) - 관리자 4명은 남성들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 관리자도 필요하다고 봄. - 성희롱 문제 등 일이 발생했을때 사회복지사가 상담하는데 이들의 업무 또한 많아 근로자 개개인을 살펴보는 상담자 역할의 힘은 부족해 보였음. ⇒ ○ 톨레랑스(은평구) - 2층에 올라가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개인의 사물함(거실에 해당되는 곳)이 보였고 (개인별) 정리는 되어 있었으나 남녀 구별 없이 함께 옷을 갈아 입는 오픈환경이었음. - 관리자는 휴식공간상 남녀 구별이 필요할 것 같아 방 두개(현재 프로그램실, 사무실사용)를 활용할 계획이라고함.
○ 기타	○ 굿윌스토어(도봉구) - 구성된 직원 중에 사회복지사수가 많이 포함되어야 만이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될 수 있을 것임 - 휴식공간이 짜임새 있게 배치 및 운영의 필요 - 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엄밀히 검토해 만약 이들에게 근무 기간을 폐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정책 입안에서 한번 고려해봤으면 함. - 건전한 프로그램(취미생활)등이 주기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함. ⇒ ○ 톨레랑스(은평구) -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바깥 철재계단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였음. - 작업시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여름철 열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5) 개선과제 제안

□ 장애인인권에 대한 강조

- 장애인의 경우,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 이전에 인권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을 재확인하게 됨.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적인 허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사회복프로그램 보강이 필요함
- 직업재활시설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강조가 필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배치 및 구조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유형별, 성별로 직무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작업공간, 휴게환경 등 성별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음
- 직무특성에 따른 성별 배치에 대한 고려는 있으나, 공간이나 편의시설, 계단 등 이용시설에 있어서는 성별고려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였음. 따라서 시설 개보수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이 필요함. 특히 이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심층면접을 통한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여성의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실질적인 휴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고 이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급경사로 오르내리기에 불편하게 보였음

□ 운영자 및 관리자의 성인지 의식 교육 필요

- 현장 방문한 방문처의 경우 관리자 비율이 남성이 높았지만 이들의 성인지의식이 부족하여 성인지 의식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됨.
- 자기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매 상황에서 약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성인지적으로 훈련된 관리자가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훈련 필요
- 특히 관리자나 운영자의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강조 필요성

- 수익성 보다는 ‘진정한’ 재활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사업장이긴 하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는 점에서 ‘수익성’보다는 ‘인권보장’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면담 중에 매출실적이 높은 것이 기관의 성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이윤추구하는 사업장과 차별화된 가치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

7) 외국인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주요 사업 내용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입원·수술비를 사업수행기관(11개소) 통하여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여성은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등 자녀(18세미만) 외래진료비 지원
- ※ 사업수행기관(11개소)
 - 서울적십자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동부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마리아도티기념병원, 성애병원, 상계백병원, 양지병원, 한그루치과의원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통역 등 간병서비스 지원
 -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2일~10일 간병서비스 차등 지원

□ 예산 현황 (2013년) : 1,893백만원

□ 사업 대상자 현황

○ 서울시 거주 외국인 : 247,108명 (여성 52%)

분포도	출신국별		체류자격별	
	서울	전국	서울	전국
1위	한국계중국인 (57.0%)	조선족 (34.6%)	방문취업(38.7%)	방문취업(25.2%)
2위	중국 (15.8%)	중국 (16.3%)	영주 (13.6%)	비전문취업(24.1%)
3위	일본 (3.6%)	베트남 (12.2%)	유학 (8.6%)	영주(13.6%)
4위	타이완 (3.6%)	필리핀 (3.6%)	결혼 (8.0%)	결혼 (9.2%)

※출처 :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2년 12월호

○ 서울시 외국인 여성 인구의 특징

- 서울시 거주 외국인여성은 가사노동, 음식점 등에서의 서비스업까지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제도를 통해 들어온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여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또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 중 40대 이상이 전체의 70.8%를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은 서울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

(2) 사업의 성별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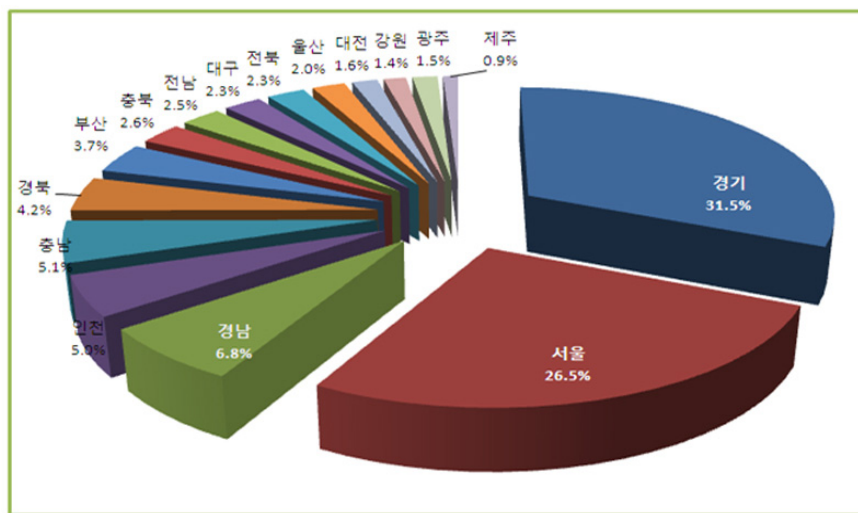
○ 2013년 서울시 외국인 의료 서비스 지원 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업안이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인구학적, 성별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

□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인구학적 특징¹⁰⁾

○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지역 특성

- 서울시는 수도라는 특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 본사, 대학교 등 교육 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 서울의 특징에 따라 한국 체류 전체 외국의 26.5%인 247,10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932,983	247,108	35,049	288,251	12,901	24,830	48,501	22,030	23,602
	경북	경남	제주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40,067	64,371	8,736	19,247	21,922	47,305	14,492	14,571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2년 12월호

○ 서울시 이주민 구성의 분포 특성

- 첫째, 서울의 출신국별 외국인인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인 57.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중국(한족) 15.8%, 일본 3.6%, 타

10) 이 글에서 사용하는 서울시 외국인 인구 통계 출처는 서울시 행정국. 「2012년말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이완 3.6%, 미국 3.3%순임.

- 이에 반해 전국적으로는 조선족이 34.6%, 중국 16.3%, 베트남 12.2%, 필리핀 3.6%, 인도네시아 3.2%, 우즈베키스탄 3.2% 순으로 서울과는 다른 양상임
- 둘째,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체류 자격을 살펴보면, 역시 한국계 중국인들이 주로 차지하는 비자인 방문취업(H2)비자 소유자가 38.7%, 영주(F5) 13.6%, 유학(D3) 8.6%, 결혼(F6) 8.0%, 방문동거(F1) 6.2%, 거주(F2) 6.0%순임.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들어오는 E9 비자는 5,190명 2.1%에 불과한 반면, 체류자격별 전국 통계는 취업비자인 방문취업(H2)비자 235,147명 25.2%, 비전문취업(E9) 225,001명 2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어 결혼(F6) 86,037명 9.2%, 영주(F5) 84,140명 13.6%, 유학(D3) 63,815명 8.6%, 거주(F2) 63,299명 6.8%, 방문동거(F1) 49,578명 5.3%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2년 12월호」).
- 전국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중심의 정책은 관행적인 정책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 외국인 여성 인구의 특징

○ 거주외국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약 4%p 높음

- 서울시 거주 전체 외국인은 247,108명이고 이 중, 여성 128,779명, 남성 118,329명으로 여성이 52%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 서울시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은 방문취업(H-2)이 95,726명으로 38.7%를 차지하며 영주(F-5), 유학(D-2), 결혼이민(F-6), 방문동거(F-1)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 남성은 방문취업(H-2), 영주(F-5), 유학(D-2), 방문동거(F-1), 특정활동(E-7) 순으로 많고, 여성은 방문취업(H-2), 영주(F-5), 결혼이민(F-6), 유학(D-2), 거주(F-2) 순임.

- 체류자격별 외국인 여성의 규모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방문취업(H2)이 46,336명, 36.0%로 가장 많고, 결혼이주와 거주비자(F6+F2) 24,317명으로 18.9%, 영주권(F5) 17,345명 13.5%, 유학생(D2) 12,568명 9.8%, 회화지도(E2) 2,292명 1.8%, 비전문취업(E9) 1,862명 1.4%를 차지하여 다양한 외국인 여성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Ⅲ-12 】 주요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구성비 (%)	2011년 말 대비		
	계	남	여		인구수	증감	증감율(%)
방문취업(H-2)	95,726	49,390	46,336	38.7	130,084	△34,358	△26.4
영 주(F-5)	33,651	16,306	17,345	13.6	25,813	7,838	30.4
유 학(D-2)	21,185	8,617	12,568	8.6	21,078	107	0.5
결혼이민(F-6)	19,889	5,344	14,545	8.0	988	18,901	1,913.1
방문동거(F-1)	15,367	6,728	8,641	6.2	15,361	8	0.1
거 주(F-2)	14,929	5,157	9,772	6.0	32,758	△17,829	△54.4
일반연수(D-4)	8,570	3,727	4,843	3.5	16,100	△7,530	△46.8
동 반(F-3)	7,766	2,601	5,165	3.1	7,818	△52	△0.7
특정활동(E-7)	7,294	5,426	1,868	3.0	6,023	1,271	21.1
비전문취업(E-9)	5,190	3,328	1,862	2.1	5,932	△742	△12.5
회화지도(E-2)	4,932	2,640	2,292	2.0	5,525	△593	△10.7
기업투자(D-8)	3,825	3,410	415	1.5	4,049	△224	△5.5
기 타	8,782	5,655	3,127	3.6	7,566	1,216	16.1

출처: 서울시 행정국, 2012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Ⅲ-13 주요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적별 등록외국인				구성비 (%)	2011년 말 대비		
	인구수	남	여	성비		인구수	증감	증감율(%)
전 체	247,108	118,329	128,779	91.9	100.0	279,095	△31,987	△11.5
한국계중국인	140,893	70,189	70,704	99.3	57.0	178,386	37,493	△21.0
중 국	39,151	15,602	23,549	66.3	15.8	33,434	5,717	17.1
일 본	8,961	3,260	5,701	57.2	3.6	8,111	850	10.5
타 이 완	8,813	4,478	4,335	103.3	3.6	8,824	△11	△0.1
미 국	8,061	4,950	3,111	159.1	3.3	9,919	△1,858	△18.7
베 트 남	6,912	1,607	5,305	30.3	2.8	6,407	505	7.9
몽 골	4,530	1,801	2,729	66.0	1.8	4,725	△95	△4.1
필 리 핀	3,906	1,349	2,557	52.8	1.6	3,843	63	1.6
캐 나 다	2,104	1,333	771	172.9	0.9	2,211	△107	△4.8
기 타	23,777	13,760	10,017	-	9.6	23,235	542	2.3

출처: 서울시 행정국, 2012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 요약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체 이주민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140,893명으로 57.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중국, 일본, 타이완, 미국 국적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 여성 역시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 여성이 70,70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한족) 23,549명, 일본 5,701명, 타이완 4,335명, 미국 3,111명, 베트남 5,305명, 몽골 2,729명, 필리핀 2,557명, 캐나다 771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남녀 성비를 보면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중국 국적 순으로 여성 비율이 높으며 특히 베트남 출신은 여성이 남성보다 3.3배 많음. 이러한 성별 격차는 여성들은 주로 국제결혼으로, 남성들은 고용허가제의 노동자로 들어오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별화된 한국으로의 이주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사업개선 목표 및 방안 제시

□ 서울시 거주 외국인 여성의 특성에 근거한 사업 접근의 필요성

○ 방문취업(H2)의 한국계 중국 여성을 고려한 사업 접근

- 전국적으로 체류자격별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자로 분류되는 방문취업(H2) 비자 소유자 235,147명 25.2%와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유자 225,001명 24.1%이 비슷한 비율로 전체 외국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 서울시의 경우에는 방문취업(H2) 비자 소유자가 95,756명 38.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유자는 5,190명으로 전체 서울시 외국인의 2.1%에 불과함. 그럼에도 서울시의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 계획은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보다 외국인근로자로 통칭되는 비전문취업(E9)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서울시의 외국인 구성의 인구학적, 성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서울시 거주 이주민 중 여성은 가사노동, 음식점 등에서의 서비스업까지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제도의 H2비자를 통해 들어온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여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특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연령별 특징 역시 서울시 외국인 의료 서비스 사업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인구 중 40대 이상이 전체의 69%를 차지하며, 여성의 경우는 40대 이상이 비율이 70.8%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별도 연령별 통계가 공개되고 있지 않으나, H2 비자의 특성상 서울시의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연령 비율 또한 비슷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 계획에서 40대 이상의 여성들의 특성을 감안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특화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외국인 여성 구조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

- 서울시 거주 외국인 여성은 이른바 ‘조선족’이 대다수인 방문취업 (H2) 비자를 제외하고는 결혼이주와 거주비자(F6+F2) 18.9%, 영주권(F5) 13.5%, 유학생(D2) 9.8%, 회화지도 (E2) 1.8%의 순임
- 전국적인 특성과 다르게 수도 서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외국인 여성이 분포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고려한 사업이 필요하고, 특히, 해마다 늘어나는 유학생이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대상별 특화된 형태의 사업 접근 필요

○ 건강보험 적용 관련

- 40대 이상 조선족 여성 비율이 높은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노동 형태가 입주 가사노동자, 음식점, 숙박업 등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다수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¹¹⁾¹²⁾ 결혼이주여성은 가족관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남편의 국민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남편의 건강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보험 수급권이 결정되는 상황이고 유학생의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피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출산 이주여성의 모성 지원 관련

- 11)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과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건강보험 제도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큰 맹점이 있는데, 하나는 미등록 이주자가 배제된 것, 다른 하나는 직장가입이 어려운 직종 (개인 간병인, 가사 도무이, 건설업, 농장)에 취직한 사람들이 배제된 것이다. 2003년까지 출근 이주노동자의 30~6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집단의 조선족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이 두 가지 맹점에 포함되었다(이해웅, 2003:99. 「중장년 조선족 이주여성의 노동경험과 탈구적 삶에 관한 연구」) 이해웅은 중장년 조선족 이주여성들이 상당부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이들이 아플 때 이용 가능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의료 서비스로,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현 한국이주민건강협회)로 보고 있다(윌글, 2013:77).
- 12) 가입증가 유도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격과 필요성, 보험료 납부의 당위성을 입국 초기부터 홍보에 힘써야 한다. 또한 보험료 체불로 자격 상실된 중국동포 대상자들에게는 체납의 결정요인인 사회경제적 상태를 파악하며 납세율을 조정하거나 체납금액 일시불납부가 아닌 분할 납부방식으로 수정하거나, 납부방법 홍보 및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윤혜숙, 2010, 「국내 중국동포의 의료이용실태: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중심으로」).

- 이주여성의 임신·출산은 그 자체로 힘든 경험임. 언어의 문제로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신국과는 다른 여러 제도적, 문화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으로 가족에 편재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임·출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 반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나 여성 유학생 등 한국인과의 결혼 관계없이 임·출산 할 경우에 대한 모성 지원책이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함

○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별도의 처리 과정 필요

- 이주여성은 체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여성이 주노동자들이 가사노동자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사업장에서 사업주, 한국인 및 동료 외국인 남성으로부터의 성폭력 사건도 발생하고 있음. 유학생 역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언어문제와 개인정보보호의 등으로 병원 접근성에 제한이 많은 것이 현실임. 현재 서울시 외국인 진료 지정 병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에 따른 전문상담과 진찰을 지원받을 곳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등록 체류 여성의 건강권 지원

- 이른바 ‘불법체류’하는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의 경우 단속·추방에 따른 위험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 출산 지원에의 어려움이 있음. 미등록 체류 여성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에 노출되어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정책 방향의 제언

○ 의료취약계층 여성이주노동자 지원 대상 포함 검토

-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내용으로 미등록 이주여성 산전진찰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고위험 임신과 분만

시 적절한 산전관리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서울시 거주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 유형을 보면 가사도우미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체류자격은 가지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주로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이 대거 차지하는 방문동거(F-2) 비자 소유자의 경우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고용하는 한국인은 대부분 사업주가 아니라 개인들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국내 사회보험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들 대다수가 취약한 의료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주노동자들로서, 이들은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이들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로 인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본 사업에 합법 여성이주노동자도 산전 진찰 및 분만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¹³⁾.

○ 산부인과 진료 병원 확대

- 서울시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지정병원은 11개소임. 이 지정 병원에는 산부인과 진료가 불가능한 병원이 많아 이주여성들의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기관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주여성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전문병원 등을 추가 지정하거나 산부인과 관련 병원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 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전담창구 운영

- 성폭력 피해는 여러 사회문화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 특수한 상황임.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고,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그로 인한 산부인과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어문제와 개인정보보호의 등으로 병원 접근성에 제한이 많음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13) 이를 위해서는 사업 입안 단계에서 서울시 거주 외국인 실태와 노동유형, 비자유형별 건강보험가입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 현재는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과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지정 병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지정병원을 선정,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 여성 건강정보 제공 강화

- 서울시에서 이주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건강콜센터와 다국어 의료통역 지원으로 언어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언어가 없는 경우 여전히 건강정보 습득에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지정병원과 보건소 등에 다국어 산모수첩이나 여성건강 리플렛을 제작 비치하여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이 필요함.

○ 이주여성의 모성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한 「예방접종정보」는 제한된 4개국 언어(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로만 제작되어 있음.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이주여성 산모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함¹⁴⁾. 또한 보건소 내 임·출산, 출산 후 산모의 건강, 양육에 관계된 다국어 홍보물 비치하는 방안, 미등록 이주여성의 임·출산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임신율 준비중인 이주여성이 출신국에서 예방접종 기회가 없었던 경우 간염, 결핵 등 전염성이 높은 관리대상 전염병 예방접종을 임신 전에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함

○ 미등록 체류자의 건강권

- 미등록 체류의 경우 신분불안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범위 및 진료기관 수 확대,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 미등록이주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2011.11.10)한 바 있음.

14) 이주여성을 위한 핫라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경우 13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 관련 정보의 제공 언어도 이와 준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권위 권고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 조치가 필요함.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신분 불안으로 질병이 발생하여도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어서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보건소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홍보 필요

- 보건소는 일선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함. 이주민 역시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보건소를 통한 의료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임·출산, 양육 과정에서 보건소 이용이 필요한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보건소 이용이 쉽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필요.

(4) 젠더 거버넌스 위원회 현장활동 결과

□ 조사개요

참여 위원	임공주, 송춘애, 강미연
방문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 병원
질문내용	○ 의료서비스 대상의 서비스 만족도 - 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개선과제 등 ○ 의료진 및 의료센터 담당자 - 서비스 제공절차와 과정의 문제점 - 서비스 개선 방안 등

□ 조사내용 및 현장활동 결과

조사 내용	조사 결과
○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자(여성) - 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개선되어야 할 과제 등	○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이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들의 질환을 제한해서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입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비롯된 여성과 남성의 주 질환의 차이에서 오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 통역의 경우 여성환자나 남성환자에게 통역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성별고려는 되고 있지 않음. 통역서비스의 성별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적십자병원의 경우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분만이 이루어지는 타 병원으로 환자를 이관하고 있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에게 진료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점임 - 남성 환자의 경우 일하다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여성이 경우는 산부인과 질환, 신경외과 질환 등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음. ○ <외국인의료지원 서비스>는 “근로”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음식점 등에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남성에 비해 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의료진 및 의료센터 담당자 -서비스 제공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 (성별관점을 반영한 질문구성 필요) ⇒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과 한계 (성별관점을 반영한 질문구성 필요)		○ 사회복지사 모두 외국인 의료 지원사업이 가질 수 있는 성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 않음. ○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본 사업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오히려 건강보험 적용자에 비해 큰 혜택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사후지원(현재 퇴원 후 3회까지)과 중복수혜에 대한 정책설정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음.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별도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도 특별한 성별의식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오히려 지원담당자인 사회복지사가 환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성희롱 등으로 인권 침해 및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음이 파악. ○ 업무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충분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 담당 인원의 확충으로 업무와 상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젠더감수성(성인지 의식)을 갖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유학생, 초청배우자, 자녀 등은 진료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산전.후 진료가 매우 중요한데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진료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태어난 아가의 예방접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함.
○ 기타	⇒	○ 타 지역에 비해 서울소재의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다로 이어지기도 함. 지역별 병원과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를 적절히 배분하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봄.

	○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외국인의료지원사업과 관련한 통계는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무과에서 작성해 서울시 담당부서로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됨. ○ [홍보] 본 사업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인 홍보(팸플렛, 포스터 등)의 영향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로 “입소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지방에 소재한 병원과 진료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5) 사업개선의견 제언

□ 서비스 대상자 및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

- 본 사업이 기본적으로 ‘근로자’ 대상이어서 실제 음식점이나 가사노동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 사업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큰 입원이나 장기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사업범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층이 많아서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지원절차 및 성별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범위의 확대 필요(통원서비스 포함, 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 등 사업개선이 필요함)
- 또한 지원내용에 있어서 ‘입원’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대상 의료서비스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이는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의료상담 사회복지사의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 해당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대상 의료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서비스 수요에 대한 성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8) 생활협동조합 활성화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목적

- 협동조합기본법('12. 12. 1) 및 시행령, 시행규칙
-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관련 종합계획 수립(시장지시사항-218)
- 목적
 -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시민요구에 부응하고 '협동조합 도시, 서울'의 기반마련

□ 사업내용

- 협동의 가치를 확산하는 홍보체계 마련
 - 포스터, 영상 등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
 - 조합원 및 임직원, 창업, 전문인력양성 등 대상, 목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상담, 교육, 컨설팅으로 체계적인 종합지원
 - 협동조합종합지원센터 운영
 - '12년 11월 운영개시한 협동조합 4개 권역별 상담센터 기능강화
 - 정보제공 및 설립 상담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 협동조합 성장기반 생태계 조성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 연합회 지원으로 민간부문 역량 강화
 - 공공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및 서비스 위탁 추진
- 전략분야 비즈니스 개발을 통한 성공모델 조기정착 지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영역이나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큰 7대 전략분야 선정하여 지원
 - ※ 7대 전략분야: 공동육아, 돌봄, 보건의료, 임대주택, 정통상인, 소상공인,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등

(2) 사업의 성별이슈

□ 협동조합은 출자와 이용은 물론 활동면에서 여성 다수, 여성친화적

-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여성들은 살림과 보살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시키고 공과 사, 생산과 재생산의 가부장적 이분법을 넘나들며 해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활동과정에서 여성들은 생활과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연결시키고,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됨.
- 상호작용과 소통을 중시하는 협동조합에서는 여성의 문제해결과 소통방식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
- 경력단절 여성, 주부들이 사회참여와 활동을 배우면서 일하며, 위커즈컬렉티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함(이현희, 2004; 박주희, 2007; 우춘희, 2010; 백은미, 2012; 장수정, 2012; 하승우, 2012; 김정희, 2013).

□ 반면, 협동조합은 운영과 조직구성, 활동의 내용 등 몰성적, 성차별적

- 의사결정, 운영, 조직의 성차별성
- ××생협의 경우, 초기 창립당시 남성들이 주축이 되고 생명가치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주부 입장에 있는 여성다수의 정체성과 주체화 고민에 둔감한 경향이 있음(이현희, 2004).
- 생협의 최고 리더십인 이사장을 중심으로 보면 생협전국연합회 소속 회원생협의 경우 초기에 비해서는 여성 이사장 수가 꽤 증가하였고 지역생협의 경우는 거의 50%에 근접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생협, 의료생협, 대학생협, 생협연합을 통틀어 보면 31.7%에 머물고 있음(김정희, 2013)

표 Ⅲ-14 생협전국연합회 회원 생협 이사장의 성비(2010)

생협유형	생협총수	여성 이사장수(%)
지역생협	39	18(46.2)
의료생협	5	1(20)
대학생협	18	0(0)
생협연합	1	1(100)
합계	63	20(31.7)

자료출처 : 생협전국연합회

○ 임금 및 근로조건의 성별 차이

- 생협의 남성중심 정규직 직원과 매장의 주부 비정규직 활동가의 임금격차는 매우 커서 불공정한 계급구도와 성별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김정희, 2013).
- 단위생협과 생협 연합체의 구성원 성별을 보면 단위생협 여성, 연합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생협조직의 성별분리 구조를 보여주며, 의사결정과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 남성중심의 위계적인 관계가 관찰됨(박주희, 2007).
- 단위생협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대부분 여성이지만 생협운동을 대표하거나 정책이나 비전을 짜거나 협동조합의 지향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임(하승우, 2012).

□ 성별분업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여성의 활동

- 남편은 생계책임자이고 여성은 집안살림을 맡는 성별구도 하에서 남편의 눈에 아내의 생협활동은 주부가 여가활동으로 선택한 하나의 자원활동 켄으로 비춰지고, 결국 남편과의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가 좋아서’ 라는 일로 치부됨(이현희, 2004).
- 생협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대다수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전업주부로서의 역할과 생협운동의 활동가로서의 역할 등 이중적 역할부담을 가지고 있음. 여성들이 생협운동을 할때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경우는 남편의 반대이며, 아이를 잘 돌봐주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함. 그런데 생협활동을 하면서 겪는 이러한 여성들의 어려움이 여성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여성문제로 인식되지 못함(백은미, 2012).

□ 여성의 활동과 노동에 대한 보상 문제와 성차별성

- 여성들은 생협 활동의 봉사에서 만족감을 찾으면서 동시에 활동해 가는데, 봉사가 남성들의 우월한 지위를 메워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함을 자각하면서 모욕감과 회의를 느껴서 조합 활동을 떠나게 됨(진휘향, 2001).
- 여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생협운동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큰 보수가 없기 때문에 화폐적인 가치로만 본다면 효과적이지 않지만 자신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음. 그러나 주위사람들의 시선은 돈도 받지 않고 하는 일로만 치부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갈등을 경험하게 됨(백은미, 2012).
- 경제적 측면에서 정규직원과 활동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활동가의 이원 구조 속에서 활동가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음. 그 직위가 이사장이라도 마찬가지임. 주부가 한품이라도 벌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현실속에서 더욱 그러함(김정희, 2013)
- 돌봄분야 등에서 일하는 협동조합 직원의 경우 저임금으로써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고 있지 있음. 가사, 육아, 돌봄 등 여성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분야의 일과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 협동조합 수의 증가가 여성일자리 규모의 증가와 직접 연계되기 어려움
-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고용의 증가라기보다 현재 비공식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고 해고나 비정기적 일자리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관련이 큰 것으로 확인됨. 주인이면서 동시에 고용인의 성격인 협동조합의 경우 해고와 고용의

문제가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나 이 모형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익모형을 창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고용규모가 단시간 내에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오은진외, 2012).

(3) 사업의 개선목표와 방향

□ 협동조합의 성별 통계 구축

- 기초자료에서부터 세분화된 협동조합 업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별통계를 구축하여 성별 현황과 성별격차 발생 원인 분석
 - 필요한 성별분리 통계 항목 지속적으로 추가

□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성이 제고 되도록 함

- 법령과 조례, 제도의 입안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 확보, 집행과정에서 성별 불균형 해소
- 개정 법안, 제정 조례 등에서 여성의 요구가 반영, 성차별이 해소
 - 운영지침, 전달체계 등의 성인지성 고려

□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 등에 있어 성별 격차를 없애고, 성 평등성 확보

- 이사회, 연합회, 정규직대 비정규직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도록 하며, 이를 해소하도록 권고
 - 여성 참여 최소 50% 권장
- 성평등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
 - 협동조합 활동의 성차별성과 성별분업 등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져 함.
 - 협동조합 교육의 성주류화
- 취약계층·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경제적 보상체계 마련

□ 여성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 성인지예산이 확보 되도록 함
 - 예산의 성별 현황 분석
 - 예산 편성 개선안 마련

9)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 구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주요 사업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및 분과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심의, 참여예산한마당 개최, 평가보고회 개최 등

(2) 사업의 성별 이슈

□ 기 수행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의 젠더분석 검토

- 서울시는 2012년 시행 첫 해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세부사업 내용 중 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을 중심으로 검토

【표 Ⅲ-15】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요약

예산*	성별요구	분석근거	성별형평성	근거규정	조치사항
114,400천원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 있음.	위원구성 비율	사업수혜에의 성별특성반영 _시민공모 추천 여성50% 안배	조례 제15조 ③항 (위원회 구성)	여성참여율 40% 이상 확보 목표 (여성 44%)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의 다면적 젠더이슈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과 같은 주류화 도구가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평등한 여성참여는 물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심사지표 및 사업선정 우선순위에 성별·계층별·인종별·성적 지향 등의 차이가 고려됨으로써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여성단체가 시행 첫 해인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에서 여성참여와 성평등 관점에서의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일반시민공모 추천 외에 타 추천영역에서의 성별비율과 위원장 등의 여성 참여 보장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설계의 중요한 거버넌스 구조인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에 여성할당
 - 의무교육인 주민참여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관점과 성인지예산 관련 강좌의 추가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및 주

- 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중 필요사업에 대한 성별이해여부 분석 및 자료제공
- 2013년 서울시에 예산에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25건, 총471억원에 해당되나 이 사업들이 가지는 성별이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한 검토나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성별수혜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과 절차는 없음. 단지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중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으로 중구 ‘공원 우범화 방지 CCTV 설치’가 포함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의 젠더분석이 요구됨
- 특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위원회 구성규모가 크고, 예산 실령 규모가 500억원에 달하는 경우 보다 세심한 성인지 관점의 고려가 필요함.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의 성별이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분과위원회 등 여성위원비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분과위원회 등 위원장·부위원장 여성참여 보장
 -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등 제도 시행 인지경로의 성별차이를 고려한 홍보 실시
 -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여성참여 제고
-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성평등교육
 -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참여예산학교 기본(의무)교육으로 성평등감수성교육 실시
 -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심화교육 제공
 - 여성참여를 위한 교육일정 구성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 성인지적 예산학교 운영
- 여성의 이해와 성평등 관점을 담은 주민제안사업·의제의 발굴 및 선정
 -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에서 여성관련사업이 발굴·제안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 외에 여성 분야·의제별 위원회 구성·운영

- 주민참여 제안사업 심사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공
- 주민참여 제안사업 선정기준에 성인지 지표 포함

(3) 사업의 개선목표와 개선방안

□ '13년 시행경과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위원회 참여와 권한의 평등한 배분
 - '13년 전체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추천위원의 비중을 낮추고 일반시민공모를 통한 추천인원을 200명으로 상향조정, 여성위원비율도 44%에서 49%로 증가
 - 신규 일반시민공모 추천에 있어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자치구별로 배정된 4명의 T/O를 성별에 따라 각 2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연임 위원 역시 성비를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역시나 여성보육분과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이 가장 높고 건설분과위원회 및 건설분과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별에 따른 관심 사업영역에 편차가 있음

표 III-16 2013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분과	계	경제 산업	환경	공원	문화 체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건설	교통 주택
계	246	31	30	32	31	31	31	30	30
여성위원	121	14	10	17	17	25	15	10	13
남성위원	125	17	20	15	14	6	16	20	17
공모위원	200	25	25	25	25	25	25	25	25
추천위원	46	6	5	7	6	6	6	5	5

- 분과위원장 선정에서 남녀동수구성이 반영됨
 -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다음 <표 III-17>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조례에서 총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간사 선출인원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

고, 조례가 아닌 운영계획을 통해 총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를 남녀동수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함

표 Ⅲ-17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3/5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4.~5. (생략)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4/5이상으로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4.~5.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⑥ (생략)	제17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둔다. ②~⑥ (생략)
제20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2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공무원 간사 1명은 분과별 선임 부서의 주무과장이 된다. ⑤~⑧ (생략)	제20조(분과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별 소관부서의 주무과장은 공무원 간사가 된다. ⑤~⑧ (현행과 같음)

(2013. 4. 30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윤리위원회 구조의 필요성과 성희롱예방교육 필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시 차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조로는 그 규모가 커서 참여한 위원이 250명에 이르고, 빈번한 회의개최 빈도와 저녁시간대에 집중되는 분과위원회 개최시간, 공식회의 외에 비공식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워크숍, 현장실사 등 소위원회 활동 등이 진행되면

서 성희롱 등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공식적 문제제기 절차와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한 불편이 여성위원들에게 집중될 수 있고, 대책마련에 대한 여성위원들의 요구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임

□ 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성인지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및 관련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 운영 활동 지원과 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기타 지원협의회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추진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
-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에 비해 2012년의 경우 지원협의회의 회원 중 여성참여가 거의 없었고, 결과적으로 지원협의회가 마련한 예산학교 프로그램에도 성평등 관점과 성인지교육이 포함되지 못함. 이에 앞서 기술한 여성단체 모니터링 개선방안 제안에서도 지원협의회 여성참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2013년에 구성된 지원협의회는 예산전문가 4명, 시민단체 4명, 서울시의원 1명, 예산담당공무원 2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단체에서 여성이 한 명 회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11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함. 지원협의회가 제도 운영의 핵심적 기제인 만큼 참여예산위원회에 적용하고 있는 정도에 상응하는 구성 및 운영상의 성인지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성평등관점 및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도입

- '13년 기본교육으로 제공된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총 9시간을 6강으로 나누어 구성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촉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기본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관계로 평일 주간반, 평일 야간반, 주말반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3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일정상의 선택가능성이 보장되도록 함. 이 교육은 서

울시 참여예산위원회는 물론 기초구 참여예산위원회 및 일반시민까지를 교육대상으로 함

표 Ⅲ-18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프로그램 구성

1일차	2일차	3일차
주민참여예산제도(1시간) 서울시 예산읽기(2시간)	서울시정 운영방향(1시간) 참여예산위원회 직무윤리(1시간) 서울시 읽기(1시간)	참여예산운영 실습(3시간)

- 이후 예산학교 프로그램 내에 성희롱예방교육을 포함한 성평등관점 교육 및 성인지정책교육이 실효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원협의회 차원에서 기획·운영되고 있는 예산학교 기본교육 과정을 향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된 바 있는데, 성평등관점 및 성인지정책교육의 경우 인재개발원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뿐만 아니라 자치구 지역회의, 기초구 참여예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매년 맞춤형 성평등 관점 및 성인지 정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사회전반의 성평등 의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

□ 주민제안사업의 선정 및 모니터링에의 성인지적 관점 개입

- 2013 참여예산한마당을 통해 상정된 410개 사업 중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총 223개사업 503억원 규모임.
- 223개 사업의 평균사업비는 2억2천3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낮아지고 사업개수는 늘어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위원들이 선호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분야별로 보면 공원분과사업이 가장 많아서 총 40건 1백8억원 규모

표 Ⅲ-19 | 분과별 참여예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분과	계	경제 산업	환경	공원	문화 체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건설	교통 주택
사업수	223	27	23	40	24	28	28	36	17
사업비	50,348	6,442	5,876	10,846	4,571	5,512	4,609	8,810	3,682

* 참여예산한마당에서의 선정(2013. 7.27)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여성보육분과의 경우 28개사업 55억 1천2백만원규모가 선정되었는데, ‘저소득층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골목길 페인팅’(양천구, 5천만원), ‘학생들의 꿈·희망·진로설계프로젝트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은평구, 9천만원),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강남구, 1억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장난감 대여소 운영’(관악구, 1억7천4백만원), ‘꿈은 이루어진다!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어주세요~’(성동구, 1억원) 등의 사업이 포함됨(서울시 예산담당관 보도 자료 2013. 7.31일자).
- 주로 돌봄사업이나 청소년, 가족 및 다문화 관련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나도 셰프—남성 생활요리 프로그램 운영’(서울시, 3천만원)이 광역단위 사업으로는 유일함. 57위로 선정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운영’(성북구, 5천9백만원) 사업의 경우 동성애혐오를 드러내는 일부 보수시민단체로부터 외부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선정사업에 포함될 수 있었음
- 현재 각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한마당의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사업심사기준 및 부적격 심사기준,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에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소관부서 검토의견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일부 제안사업에 대한 성별의 일부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성인지표표를 포함한 주민제안사업 심사지표 개발을 통해 참여예산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성평등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설계 및 운영을 제안하기 위한 질문들

- 2013년 총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간사 선출에 있어서 남녀동수구성에 관한 의미, 적절성과 동의 정도
-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있어서 남녀 공동 위원장/부위원장/간사의 평등한 역할분담과 권한배분이 이루어졌는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의 위원장/부위원장/간사 활동 수행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문제 사례
- 주민참여예산학교 기본교육과정으로 성인지관점 및 성인지예산교육 강좌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관한 요구도
- 2013년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시한 성인지관점과 성인지예산에 관한 교육 실시 적절성 및 만족도와 개선방안 의견
- 2013년 분과위원회 및 총회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판단기준 중 여성관련 사업에 대한 우선고려 또는 성별차이에 따른 영향이 사업선정기준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사업선정기준(평가지표)에 성별관련성 포함에 관한 방안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견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및 제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이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판단에 도움이 될지 여부

[참고자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2012), [지역살림을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젠더감수성을 담은 여성예산학교] 교육 자료집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2012),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성평등관점으로 훑어보기] 토론회(2002.10.30) 자료집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2012),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성평등 관점 모니터링활동 백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2012),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조사 및 평가], 2012년 한국도시연구소 소액연구지원사업 보고서
김은희(2013), “2012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2년을 말하다] 토론회(2013.3.5) 토론문,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서대문구
김은희(2013), “성인지관점으로 본 주민참여예산제—서울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성인지관점으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포럼(2013.5.22) 토론문, 대전여성단체연합

IV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성과와 과제

1. '13년도 성주류화 추진의 특성과 성과
2.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의 한계와 개선과제
3. 기타 성주류화지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예산 컨설팅 성과와 과제

1. '13년도 성주류화 추진의 특성과 성과

1) 성주류화 추진과정의 시민참여 확대와 상시적 운영

□ 성평등에 관심을 갖는 시민 및 NGO 단체의 자발적 참여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서 작성 등 성주류화 제도추진이 행정(기관 및 사업담당자)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컨설턴트)의 지원을 통해 추진한 한계는 제도추진의 문제점으로 빈번히 제기되어 옴
 - 일정한 분석평가 틀에 맞게 컨설팅과 분석평가서 작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개선의 한계를 보임
- 일반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성주류화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평등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사업)의 최종 고객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과제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문제는 시민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서울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민참여 한 방식은 간담회를 통한 회의초청 방식이고, 회의안건이나 주제에 따라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음
 - 그러나, '13년에는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서울시 성주류화제도 추진과정에 참여할 '시민' 젠더거버넌스 위원을 모집·구성하였고, 구체적인 성별

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교육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의 성인지적 고려가 무엇인지, 성인지적 정책개선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 역량을 강화한 것은 서울시 성주류화 정책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

□ 시민참여를 통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 총7개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방안 제시됨. 제안된 개선과제 중에는 그동안 제안되었던 내용도 있었지만, 시민의 눈으로 새로운 과제도 제안되었음
- 사업별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연번	사업명	개선제안 내용
1	120 다산콜센터 운영	○ 현재 위탁업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담원 채용시 사용되는 통합교육매뉴얼이 필요함. ○ 직원평가 척도가 성과중심의 정량적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지표 마련 필요성 제기 -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강도를 높이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직원평가는 서비스 만족도만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정성적 평가기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휴게공간의 성별 실질적 분리 필요 - 휴게공간이 커튼분리로 실제 자유롭게 휴게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임. 따라서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콜센터는 여성직원이 85%이상이고 남성이 소수인 관계로 남성이 배려되고 있는 상황이나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의 구비에 있어서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상담원 근무가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야간 근무 후 여성 상담원의 안전한 귀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2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 자립도 제고를 위한 여성들의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필요함. - 특히 남성 중심의 기업환경에서 여성창업자에게 생소한 창업과정에 대한 컨설팅이나 코칭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여성창업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매뉴얼 개발과 성공적 창업을 위한 교육과 지원시스템 강화

연번	사업명	개선제안 내용
		○ 현재 창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성별분리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창업센터’ 실적에 있어서 졸업 후 자립도 및 지속률에 대한 성별 통계 마련되어야 할 필요 있음 ○ 창업자간 협업지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효과 모니터 등 창업코디네이터 배치 필요
3	부모커뮤니티 운영	○ 첫째, 부모커뮤니티 컨설턴트 선정시, 젠더관점을 가진 인적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 필요성이 있음. 한 두 명의 여성세력화 인력이 있다면 공동체 활동 속에서 이들의 관점을 확산해 나가는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 ○ 둘째, 이와 관련하여 부모커뮤니티 사업 선정 시에 여성의제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젠더적 관점을 가진 사업을 전략적으로 채택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성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모커뮤니티 사업이 자칫 전통적인 생각으로 돌봄의 역할이 여성 고유의 영역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음. 공동체를 통한 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 커뮤니티 사업이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배타적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인식전환을 위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함
4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제안 - 사업선정과정에서 안전취약대상에 대한 특성 고려를 위해서 성별 요소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고려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선정 심사위원 구성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젠더 전문가 포함 ○ 사업제안서 기대효과와 사업평가시 성인지적 고려, 사업참여자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성 있음. ○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필요
5	청소년 진로 정보제공사업	○ 진로지도 교사 자신의 성인지 역량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 ○ 성인지적 관점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임. - 진로지도 교육은 교육대상자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장래 효과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진로지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교육매뉴얼 제작시 젠더전문가, 교육전문가 등과의 협력이 필요함 ○ 중고등학교의 경우 95%에 진로지도 교사 배치되어 있는데, 타교과 담당교사가 300시간 이수 후 진로지도 담당하고 있음. 이때에도 정규교과 과정에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수교과과정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연번	사업명	개선제안 내용
		○ 이러한 일련의 사업에 대해 (서울여성가족)재단은 각종 진로지도 교육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화할 필요성 있음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직무특성에 따른 성별 배치에 대한 고려는 있으나, 공간이나 편의시설, 계단 등 이용시설에 있어서는 성별고려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였음. - 시설 개보수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이 필요함. - 여성의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실질적인 휴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또한 이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급경사로 오르내리기에 불편하게 보였음 ○ 현장 방문한 방문처의 경우 관리자 비율이 남성이 높았지만 이들의 성인지의식이 부족하여 성인지 의식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됨. 자기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매 상황에서 약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성인지적으로 훈련된 관리자가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훈련 필요 ○ 사업장이긴 하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는 점에서 ‘수익성’보다는 자활, 자립과 ‘인권보장’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면담 중에 매출실적이 높은 것이 기관의 성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이윤추구하는 사업장과 차별화된 가치 강조가 필요함
7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 사업목표와 대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사업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큰 입원이나 장기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사업범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층이 많아서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지원절차 및 성별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범위의 확대 필요(통원서비스 포함, 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 등 사업개선이 필요함) ○ 해당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대상 의료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서비스 수요에 대한 성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2)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의 성과

□ 서면컨설팅의 이점과 한계

- 컨설턴트로서 일일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독촉하는 번거로움 경감.

○ 분석평가서와 독립적인 의견서 양식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의견서를 통해서 컨설팅 내용을 축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대면 컨설팅도 경험했지만, 역시 공무원이 사전준비 하지 않으면 대면 컨설팅도 효과를 거둘 수 없음. 서면 컨설팅이 가능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성인지 정책 교육 및 실습이 수반되지 않으면 서면 컨설팅만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음

○ 공무원의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태도변화

- 사업담당공무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수용 태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음. 거부감보다는 해야 하는 ‘업무’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되고 있는 이유가 크다고 판단됨.
- 초기와 달리 컨설팅에 있어서 공무원과의 관계에서도 부담스럽거나 서먹하지 않은 관계로 개선. 따라서 공무원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보다 원활해진 느낌
-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이 높아지고 있음. 예를 들면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분석평가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낌

3) 대상영역별 컨설팅 추진성과와 개선과제

(1) 계획

□ 계획 컨설팅의 의미와 성과

○ 상위 수준의 정책에 대한 분석 가능

- 일반적으로 계획에 대한 담당자의 분석평가서는 계획이 성중립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계획의 내용이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방향과 지향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획 담당자가 성별 요구 및 특성의 반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성별 특성의 반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경우도 존재함.
- 이에,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과 컨설팅은 상위 수준의 정책에서 성별 고려를 하게 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성인지적 관점 반응을 가

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그럼에도 추진과정과 절차의 형식성은 계획에 대한 성별 분석을 통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계획 컨설팅 과정의 한계와 개선방안

○ 구체적인 개선안 도출의 어려움

- 계획은 사업과 달리 상위 레벨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항목을 다루기보다 이슈나 방향의 제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개선안의 도출 또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는 분석평가의 개선안이 계획에 반영되는데 한계로 작용하며, 반영되더라도 개선안의 적용 효과를 확인하기 쉽지 않음.

○ 다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접근의 필요

- 계획의 내용은 한 분야에 속해있기 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함. 한 분야의 전문가가 컨설팅을 할 경우, 분석이 쉽지 않거나, 분석의 대상에서 간과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여러 컨설턴트의 협업을 통해 보다 촘촘한 분석과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으로의 연계 과정 분석 제한

-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와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획을 토대로 하는 사업의 수립시에 분석평가의 개선안이 제시하는 방향이 사업의 내용에 적용되는지 확인이 어려움. 계획과 그 세부사업의 연계 과정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위탁시 과업지시서 단계에서의 적용 필요

- 계획의 경우, 위탁을 통해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계획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성인지적 인식의 여부나 정도를 보장할 수 없으며, 연구가 완료된 후에 분석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계획의 내용에 개선안을 반영하기가 어려움.

- 이에, 위탁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성인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특히, 현황 분석의 내용에 성별 통계의 활용 및 성별 요구의 파악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계획의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법령

□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 법령 컨설팅의 안정적 운영
 -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전 검토서로써 분석평가서 작성이 제도화됨으로써 법령 담당자가 이견 없이 절차를 따르고 있는 점은 제도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됨
- 위원회의 성별 비율 고려 외에 각종 조사, 통계, 기본계획 수립시 성별 구분을 반영토록 제안한 개선의견 비중이 높아짐
 - 이러한 성별 분리통계에 대한 근거를 사업수립의 기초가 되는 조례·규칙에 명시함으로써 모든 정부사업의 성별 통계 기반 마련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음
- '13년 성별고정 관념을 명시한 것을 컨설팅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등 제도에 있어서 육아, 돌봄의 여성과 남성 공동책임에 대한 강조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 것은 주요한 성과로 볼 수 있음

□ 법령 컨설팅의 한계와 개선과제

- 제·개정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차별화
 - 개정법령의 경우, 주로 기반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점검하고 별도의 컨설팅 절차 생략. 그동안 검토의견서를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검토의견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자체점검 함으로써 검토과정을 간소화하는 대신 제정법령에 대한 검토기간 확보
- 제정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를 통한 성과 제고
 - 제정법령은 충분한 검토기간 및 전문적 인력확보와 의견수렴 절차 마련

- 최소한의 점검 기간 마련: 현재 1주일 이내 컨설팅의견서가 요구되고 있으나 제정조례의 경우 최소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분석평가서 작성과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 인력 확보 및 상시적 운영을 위해, 제정 법령 컨설팅 요청시 관계자(법령 및 해당 분야 전문가) 회의소집 혹은 의견수렴 절차→제안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간 확보→검토의견서 송부 및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증 및 확인 절차 마련

○ 서울시 제정조례는 25개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에도 큰 영향

-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상급기관 조례제정 내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 제정조례 내용의 신뢰성 확보절차 필요
- 적절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 도출된 성별 사항에 대한 제정 법령의 내용은 홍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제정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3) 사업

○ 대상과제 수 확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담당자에게 대한 성인지 교육 효과 확산

- 대상과제 수의 확대는 다양한 사업분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토록 함으로써 컨설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사업개선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담당자의 성인지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업에 대한 성별 특성 파악과 의사결정과정의 여성비율 확대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의 기획·추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사업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사업참여자 및 수혜자에 대한 성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음
- 주요 컨설팅의견은 ‘성별 통계 활용’과 ‘사업개선안’ 제시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분석평가서의 작성이 보다 충실해 지고 있음.

○ 정책개선 과제 제안을 통한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해를 거듭해감에 따라 컨설팅 및 사업개선 과제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컨설팅 의견은 약 30%내외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그동안 시 및 자치구 사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았던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실제 시민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성별 고려를 함으로써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한계와 개선과제

- 사업담당자의 분석평가서 작성의 중요성인식 미약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업무를 부가적 업무로 생각하거나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는 분석평가서의 작성실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성의한 분석평가서 작성은 단순히 보고서 작성 작업에 그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사업의 가시적 개선활동을 공무원의 업적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있음

(4)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한계와 개선과제

- 성인지예산서가 기관의 성평등 목표달성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한 사업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필요
 - 성인지예산서 양식의 기관의 성평등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과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상과제 선정이 이러한 방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성인지예산서가 기관의 성평등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나 절차가 필요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의 한계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29개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평가임. 예산서는 정책의 실

제 집행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분석평가내용의 성인지예산서의 반영여부는 집행여부를 보여주는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29개 중에서 예산에 대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한 사업은 총 12개 사업임. 이 조치사항 중에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와 연결성을 갖는 사업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정도뿐임

□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개선방안

○ 대상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함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중, 성인지예·결산제도 개념) 이므로 아직 초기 단계인 성인지예산제도에서 이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수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차이가 드러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되는 것이 필요함
- 성인지예산서는 비예산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음. 그러나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효과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상과제 선정에서부터 선정 이유와 목적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 성평등 목표와 각 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평등 목표가 설정되고 각 사업 성과목표와 연결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의 한계와 개선과제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조례 제정 필요

- 서울시 독립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조례 제정 필요함
 - 사업담당자 대상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나 참석율이 너무 저조하여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음.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한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대가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성 있음
 - 예를 들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조례 제정을 통해 분석평가에 책임성을 더 부여할 필요를 제시하여 의무적으로 분석평가서 작성하고, 컨설턴트의 검토와 확인을 거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또는 교육 후 바로 분석평가서를 실습하는 방식의 컨설팅은 그나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임
- 동기부여 수단이 없이는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한계
 - 해외연수나 포상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
 - 여전히 과외업무로 인식하여 열심히 하지 않으려는 경향
- 컨설팅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해결점 필요
 - 대상과제 선정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보다는 기존에 대상사업이 계속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한적 조치가 필요함. 2년정도 지속과제인 경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자치구 사업 중 많은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사업담당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분석평가서 작성업무를 배제해 버리려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경우 위탁지침 등에서 ‘해당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명시함으로써 위탁기관에서라도 성별 관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3. 기타 성주류화지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 컨설팅의 전문화를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컨설턴트 통합운영

- 시 및 자치구의 정책은 대부분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고 기초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는 제한되어 있음. 그럼에도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이원적 컨설팅 구조는 전혀 별개의 연관성을 갖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및 자치구 정책의 연계점을 찾아 사업분야별로 한명의 컨설턴트가 서울시와 자치구 동일분야 사업 컨설팅을 하는 통합적인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기관전담 컨설턴트 배치 방식에 대한 상반된 견해

- 동일자치구를 3년이상 컨설팅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컨설팅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컨설팅의 내용이나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교차 배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과 컨설턴트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때, 잦은 교체는 안정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컨설턴트 배치시, 컨설턴트가 살고 있는 거주지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컨설팅의 보상수준 적정성 제고

- 현재 컨설팅 비용은 1과제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중복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그러나 대상과제의 적정성 검토와 같이 본 컨설팅이 시작되기 전의 컨설팅 비용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고 있음
- 컨설팅의 질적 수준은 그에 따른 보상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컨설팅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에 따른 적정 보상 수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그 전문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인정 장치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경희 외(2009), 『성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Ⅱ) : 성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희(2012), “성주류화 추진체계에 관한 쟁점”, 「2012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차 전문가 포럼 : 서울시 성주류화 성과제고 방안」, 여성가족부·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창연 외(2012), 『서울시 보고통계 성별구분생산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창연·조연숙·조영미·장현정(2012), 『서울시 성주류화제도추진 지원 및 성과제고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태홍 외(2012),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성과 진단 및 향후 과제”, 「2012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포럼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와 발전방향」,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유경 외(2007), 『통계법 개정에 따른 성별 통계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
- 손문금 외(2011),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손문금 외(2012), 『2011년 서울시 및 자치구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분석 및 정책개선 제안사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비전과 과제」.
- 송인자(201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이해”, 『성인지예산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2012),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여성가족부.
- 장현정·이은아(2012), 『함께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 공무원 성인지 정책 교육교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연숙 외(2012a), 『2011년 서울지역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조연숙 외(2012b), 『2012년 서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서울시 자료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2012),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추진계획.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2013. 1. 22). 2013년 업무계획

2013 사업자료-12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조연숙·장현정·오나경
발행일 2013년 12월
인쇄처 행복한나무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